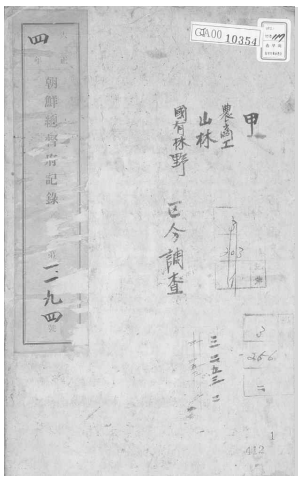
제 2 부

임업정책 관련 기록물의 해제

01

일제문서해제 (임정편)

구분조사 관련 기록물



국유임야구분조사서류
(國有林野區分調査書類)

- 생산연도 1915년
- 생산기관 조선총독부 식산국
- 관리번호 CJA0010354
- M/F 1310091-4551
- 총페이지 565면

1911년 초 조선총독부가 국유임야의 요존, 불요존을 판정, 구분하기 위하여 실시한 구분조사 결과물을 담은 기록물철이다. 여기에는 1915년 5월 22일 기안된 '산3201호' <국유임야구분조사에 관한 건> 등이 편철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조선총독부는 강원도 삼척군 울진군 천의봉 외 18개 국유임야 구분조사의 결과를 각 도장관에게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다. 본문에는 도면을 첨부하여 보낸다고 되어 있으나 산 명칭만 나열되어 있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의 다른 문건에는 도면이 첨부된 경우가 많다.

국가기록원에는 구분조사 결과와 관련된 기록물철이 16권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9>와 같다. 구분조사 관련 기록 중에는 구분조사가 완료된 후에 요존으로 지정된 임야를 해제하는 건과 관련된 것도 있는데, 이러한 성격의 문서도 같이 소개하겠다.

<표 9> 구분조사 결과 관련 기록물 제목과 주요 내용

관리번호	제목	생산연도	주요 내용
CJA0010314	국유임야사용기타관계서류	1914	<국유임야구분조사에 관한 건>, <국유임야처분조사에 관한 건> 등이 편철되어 있다. '황해도 소재 국유림에 대한 구분조사를 끝낸 후 조림대부 실시 여부를 확정하라'는 내용의 훈령이 포함되어 있다. <구분조사에 관한 건> 등의 문서는 '불요존 국유림으로 확정된 곳을 곧바로 조림대부 조치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조림대부 허가 조건에 관한 건> 등이 부속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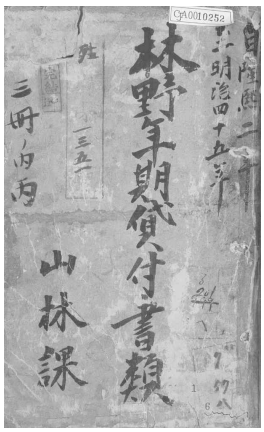
관리번호	제목	생산연도	주요 내용
CJA0010393	국유임야구분조사서류	1916	평안남도 대성산 등지에 대한 구분조사의 결과를 도면으로 작성하여 각 도 장관에게 송부한다는 내용이 있다.
CJA0010433	국유임야매각허가서류	1917	각 도 장관에게 구분조사 결과를 표시한 도면을 송부하는 건과 관련된 문서들이다.
CJA0010480	국유임야구분조사에 관한 철	1918	<구분조사 기일에 관한 건>, <삼수군 요존림 구분조사에 관한 건>, <대정6년 후기 요존예정림 조사 공정표>, <요존예정림 조사반에 관한 건>, <국유임야 구분조사에 관한 건>, <대정7년 요존예정림 구분조사 공정표> 등이다.
CJA0010551	국유임야구분조사서류	1920	각 지역 구분조사 결과를 구분 조사도에 표시하여 송부한다는 내용의 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CJA0010559	국유임야구분조사서류	1921	
CJA0010560	국유임야구분조사서류	1921	<구분조사에 관한 건>, <요존예정임야조사공정표>, <조사개소일람표> 등의 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CJA0010652	임업장려관계서류	1924	<국유임야도 및 면적표 송부에 관한 건>, <국유임야도 송부에 관한 건> 등의 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CJA0010971	국유림조사에관한 서류철	1931	요존 지정을 해제하는 조치와 관련된 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CJA0011035	국유임야조사에관한 서류	1932	
CJA0011134	국유임야 요존해제에 관한 건	1934	
CJA0011135	국유임야요존해제서류	1934	
CJA0011215	국유임야요존해제에 관한서류	1936	
CJA0010860	국유림조사에 관한 서류철	1929	
CJA0010814	국유림조사에관한 서류철	1928	<국유임야 소관환에 관한 건>, <요존예정 임야 해제에 관한 건> 등이 수록되어 있다.
CJA0010757	국유임야조사에관한 서류	1927	<요존국유임야존폐에 관한 건>, <국유임야 대부원의 건>, <요존 국유임야 해제에 관한 건> 등이 수록되어 있다.

02

일제문서해제 (임정편)

대부(貸付) 관련 기록물

1) 관련 기록물



임야연기대부서류
(林野年期貸付書類)

- 생산연도 1908 ~ 1912년
- 생산기관 통감부 산림국, 식산국 농림과
- 관리번호 CJA0010252
- M/F 1310091-4424
- 총페이지 4,333면

1908년 「삼림법」 제2조 규정에 따라 국유림을 민간에게 대부할 당시에 작성된 문서들이 수록된 기록물철이다. 당시에는 국유림을 민간에게 대부하는 제도를 '연기대부'라고 불렀다.

대부제도에 대해서는 총론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는데, 1908년 「삼림법」 제19조에 따라 임야의 소유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지적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국유지로 편입된 임야를 불요존 국유림과 요존 국유림으로 나눈다. 그 중 불요존 국유림을 해당 임야의 연고자나 제 3자에게 조림을 조건으로 대부한 후, 그 조림 조건이 이행되었다고 판단될 시에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이다. 이처럼 불요존림과 요존 국유림을 구분한 후 대부한 제도를 '조림대부'라고 불렀는데, '연기대부'는 '조림대부'가 실시되기 전이었던 1908년과 1911년 사이에 시행되었던 대부제도이다.

조선총독부가 대부 제도를 시행한 것은 국유림을 친일적 인사에게 특혜 차원에서 양여하는 방편으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황폐한 임야를 민간의 자본과 노력을 동원하여 녹화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실현하기 위함이었다.

'연기대부'는 「삼림법」 제19조에 의한 '지적 신고'가 완료되기도 전에 별도로 국유임야를 민간에 대부한 제도로서, 본격적인 조림대부 제도 실시 이전에 시행된 임시적인 조치였다. 그런데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삼림법」 공포 당시에는 아직 임야의 소유권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고, 전국적인 임야 측량 역시 채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이

때문에 국유림의 정확한 분포와 위치를 알 수 없었고, 당연히 대부할 곳을 지정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삼림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연기대부'는 국유림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봉산(封山) 혹은 '오악(五嶽)·오진(五鎭)'이라 하여 정부가 특별히 지정한 곳에 국한되었다.

'오악(五嶽)·오진(五鎭)'은"천자(天子)만이 지내는 천하 명산(名山)과 대천(大川)의 제사를 갖추기 위해"1903년 3월 정부가 특별히 지정한 다섯 개의 큰 산과 진산(鎭山)이다.[13] 당시 지정된 오악, 오진은 삼각산(중악), 금강산(동악), 지리산(남악), 묘향산(서악), 백두산(북악), 백악산(중진), 오대산(동진), 속리산(남진), 구월산(서진), 장백산(북진)이다. 이 기록물철에 수록된 연기대부 관련 문서는 오진(五鎭)의 하나인 황해도 구월산 일대의 대부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부 신청자는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시천교 관계자로 보이는 이○○(李○○) 등이다.

이 기록물철에 담긴 문서들은 대부 신청자 별로 분류되어 제시되어 있는데, 목록에 기재된 대부 신청자의 명단을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李○○)
서상팔(徐相八 ; 황해도 신계군수)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植株式會社)
오○○(吳○○) 외 3명
연안(延安) 지방금융조합 대표자 최용선(崔溶善)
홍○○(洪○○)
오성룡(吳成龍 ; 일진회 평의원) 외 2명
신의학(申義學 ; 시천교 장연교회 예주)
박종식(朴宗植 ; 대한자강회 회원, 은율군 거주)
하야시 가츠조우(林勝藏 ; 수안우편국장)
이○○(李○○) 외 1명
한국중앙농회 평양지회장 이진호(李軫鎬)
김○○(金○○)
신병균(申秉均 ; 대한협회 총무) 외 2명

13) 진산이란 도성(都城)이나 고을을 진호(鎭護)한다고 여겨지는 산을 의미한다.

이○○(李○○) 외 6명
최○○(崔○○) 외 2명
김희작(金熙綽 ; 중추원 참의, 평북 도평의원 역임) 외 74명
조○○(趙○○)
우치다 타다요시(內田忠善)
가지야마 신스케(梶山新介)
이○○(李○○)

위 대부신청자가 작성한 문서 가운데 주목되는 것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1908년 12월 이○○가 제출한 대부신청 관련 문서는 대부청원서, 대부신청 대상지 실측도가 있고, 이를 받아들인 정부와 대부 신청자 사이에 작성된 대부계약서가 있다. 이○○의 대부계약서와 대부청원서를 번역,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부계약서

황해도 신천군 용진면 석사동 국유산야 실측면적 4정(町) 9반(反) 13보(步)
용도 : 식수(植樹) 늑송(枌松)
기한 : 융희4년(1910년) 3월부터 융희53년(1959년) 3월까지
대부료 : 1개년 금 2환(圜)45전(錢)

전기(前記)과 같이 대부계약 체결함에 대하여 삼림법시행세칙을 준수하옵고 그 조건을 승낙하여 피차 서명 날인 후 각 1건씩 영수하여 보관함

융희 4년 3월 14일

대부계약 관리 농상공부 산림국장 최상돈
경성 중부 대사동 시천교당 거주 차지인 이○○

1. 요금은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경성중앙금고에 납부함
1. 1년에 미만의 요금은 월할로 계산하여 납입고지서에 의해 납부함
1. 인도(引渡)를 청구할 관청 농상공부 산림국
1. 인도기한 지령일로부터 6개월
1. 인도장소 황해도 신천군 용진면 석사동

대부청약서

황해도 신천군 용진면 석사동 국유산야 실측면적 4정(町) 9반(反) 13보(步)
용도 : 식수
기한 : 융희3년(1909년)부터 융희100년까지
대부료 : 1개년 금 2환(圜) 45전(錢)

위 임야를 전기(前記)의 요금으로 대부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실측도를 첨부하여 청원합니다.
융희 2년 12월 11일

조림 청원인 경성 포덕문외 시천교당내 거주 이○○

이 건 외에도 1911년 동양척식회사가 황주군 천주면 일대 두암산, 천주산에 대한 대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한 문서가 수록되어 있는데, 일제가 일본인 이민을 장려하기 위하여 토지를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이 문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동양척식회사의 연기대부건 문서는 <국유임야대부원 허가의 건>(명치45년 4월 15일 기안, 식산국 제301호 문서), 황해도 황주군 천주면 고행동 국유산야 실측도, 대부원, 황주군 천주면 두암산 사업계획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에서 이들 문서 가운데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번역,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부계약서

국유임야 대부원을 허가한다 - 동양척식주식회사

기(記) - 회사 창립 이래의 상황에 비추어보면 그 사업에 쇄신을 가하여 이민사업의 발전, 금융부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할 바, 그 농업 및 임업 경영과 같은 특종의 경우에는 인가하는 방침이다. 즉 이민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혹은 정부가 보조하는 특종 기관이 활동이 아니면 그 사업의 발달을 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히 이를 인가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보는 바, 이에 더하여 회사 당국자가 성실히 실행하는 이민 금융 이외에 조림과 같은 사업에 관계할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 빈번히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에 본 사업과 같은 것은 개정법 실시의 때까지 기다려 장해가 없다고 판단될 때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지만 회사는 이미 본 사업을 위해 제반 준비를 하고 있어 이를 허가하지 않으면 적지 않은 손실을 입을 뿐 아니라 장래 개정할 법안이 아직 내시(內示)되고 있지 않은 만큼 대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탁지부(인)

1. 대부산야 소재 구역 면적 및 요금은 다음과 같다

1) 황해도 황주군 천주면 두암산
면적 : 99정(町) 9반(反) 6무(畝) 4보(步)
요금 : 1개년 19원(圓) 99전(錢)

2) 황해도 황주군 천주면 고행동
면적 : 843정 3반 9무 7보
요금 : 1개년 168원 65전

3) 황해도 서흥군 내이면 소목동 토산(土山)
면적 : 221정 2반 8무
요금 : 1개년 33원 19전

4) 황해도 봉산군 감당면 고대산, 오두산
면적 : 93정 9반 21보
요금 : 1개년 14원 8전

2. 용도 : 조림

3. 대부기간 : 명치45년(1912년) 4월부터 명치 65년(1932년) 3월까지

4. 요금은 납입고지서에 따라 수납한다.

5. 1개년에 미치지 못하는 연도의 요금은 월할로 계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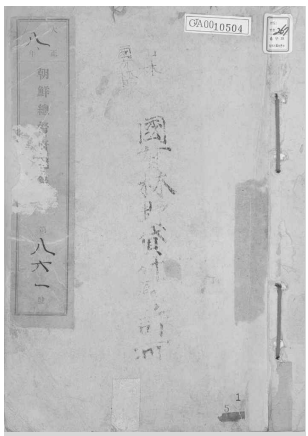
위 문서에 이어 황해도 황주군 천주면 고행동 천주산 실측도 등이 첨부되어 있으며, 이 건 대부를 위해 동양척식회사가 제출한 대부원, 조림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 있다. 대부 관련 문서의 경우 이와 같이 대부원(貸付願), 총독부에서 발한 허가 서류, 조림사업계획서, 실측도가 첨부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 기록물철에는 이외에도 위에 나열된 각 신청자가 작성한 대부원, 실측도, 이에 대한 조선총독부 혹은 대한제국 정부의 허가 서류, 조림계획서가 각 건마다 부속되어 있다.

한편 조선총독부 임정 관련 기록물에는 이 외에도 연기대부 관련 기록물철이 몇 권 더 있다. 《임야연기대부허가》(CJA0010249), 《임야연기대부서류》(CJA0010250), 《임야연기대부서류》(CJA0010251) 등이다. 이 가운데 《임야연기대부허가》(CJA0010249)에는 연기대부 건과 함께 연기대부 제도가 「삼림령」 공포에 따라 '조림대부' 제도로 바뀐 다음인 1912년에 임○○이라는 사람이 신청한 평안남도 안주군 대이면 문남리 소재 오도산 국유림 조림대부 신청서 및 그 허가서, 그리고 같은 해에 경성일본인거류민단이 신청한 경성부 남산 국유림 내 한양공원 부지에 대한 연기대부 신청 허가서가 수록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임야연기대부서류》(CJA0010251)에도 1911년에 경상남도 거제군 차부면 율포리 거주민 최○○이 신청한 연기대부 신청서 등 여러 가지 문서와 함께 1911년 이후 「삼림령」에 의하여 시행된 조림대부 허가와 관련된 문서가 그 이전에 시행된 연기대부 문서와 섞여 있다.

2) 관련 기록물



국유임야대부허가서류 (國有林野貸付許可書類)

- 생산연도 1915 ~ 1919년
- 생산기관 조선총독부 식산국
- 관리번호 CJA0010504
- M/F 1310091-4538
- 총페이지 712면

1911년에 공포된 「삼림령」에 따라 기존의 '연기대부'는 '조림대부'로 그 명칭이 바뀌

었다. '연기대부' 제도가 시행될 당시에는 국유림의 정확한 곳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1911년에 「삼림법」 제19조 조항에 따라 지적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곳이 국유림으로 편입됨에 따라 대부의 대상지가 이전에 비해 명확히 드러나게 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911년부터 이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구분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 불요존림으로 분류된 임야를 '조림대부'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대부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이 기록물철은 조림대부 제도가 시행된 이후인 1915년부터 1919년까지 수납된 모두 32건의 대부 신청 관련 문서들이 수록되어 있다. 각 문서는 대부신청자들이 제출한 조림대부 신청서, 그에 대한 허가서, 계약서, 임야조서, 신원보증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에 수록된 대부 신청 허가건을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국유임야대부원 허가서류》의 대부신청 허가 건

문서 제목	문서번호	신청자	문서수납 및 처리일자	신청 대상지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대정7년 산(山)1435	외사면장 정○○	대정7년(1918년) 1월 25일 접수 대정8년(1919년) 10월 처리	경기도 용인군 외사면 대덕산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대정3년 산1780	나베시마 고사부로(鍋島五三郎)	대정4년(1915년) 6월 15일 접수 7월 처리	평안북도 선천군 수청면 검산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대정8년 산2110	나츠메 쥬로우베(夏目十郎兵衛)	대정6년(1917년) 11월 접수 대정8년(1919년) 7월 처리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노인산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대정8년 산2170	송○○	대정7년(1918년) 12월28일 접수 대정8년(1919년) 6월 처리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내망리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대정8년 산2193	채○○ 외 35명	대정4년(1915년) 4월 1일 접수 대정8년(1919년) 9월 처리	충북 진천군 문백면 양천산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대정8년 산2661	허○○	대정8년(1919년) 5월 접수	함북 회령군 벽성면 오봉리

문서 제목	문서번호	신청자	문서수납 및 처리일자	신청 대상지
			9월 처리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대정8년 산2734	함안군 죽남면	대정8년(1919년) 9월 처리	경남 함안군 죽남면 방어산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대정8년 산2851-2853	장○○	대정8년(1919년) 8월	경북 영주군 평은면 금광리 금광산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대정8년 산2875	영일군 장기면	대정8년(1919년) 9월 처리	경북 영일군 장기면 시영산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대정8년 산2923	무안군 석진면	대정8년(1919년) 9월 처리	전남 무안군 석진면 연등산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대정8년 2944-산2946	최○○	대정8년(1919년) 9월 처리	함북 부령군 부거면 부거동 송현산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대정8년 산2981-2982	양상군 웅상면	대정8년(1919년) 9월 처리	경남 양산군 웅상면 시명산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대정8년 산3030	진천군 이월면	대정8년(1919년) 9월 처리	충북 진천군 이월면 이진봉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대정8년 산3069-3070	남궁○ 외 2명	대정8년(1919년) 9월 처리	황해도 평산군 적암면 녹동동 황해산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대정8년 산3071	사립 창선학교	대정8년(1919년) 9월 처리	경남 남해군 창선면 대방산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대정8년 산3086	하동면	대정8년(1919년) 9월 처리	경남 밀양군 하동면 작원관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대정8년 산3105-3108	신○○ 외 2명	대정8년(1919년) 9월 처리	함남 안변군 위익면 풍류산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대정8년 산3131	야마모토 쇼우조 (山本正三)	대정8년(1919년) 9월 처리	경남 밀양군 단장면 구천리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대정8년 산3138	정○○ 외 3명	대정8년(1919년) 9월 처리	경남 고성군 하이면 오방산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대정8년 산3143-3145	강○○ 외 35인	대정8년(1919년) 9월 처리	황해 금천군 산외면 두하산

문서 제목	문서번호	신청자	문서수납 및 처리일자	신청 대상지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대정8년 산3155	미토 마사히토 (水戶正人)	대정8년(1919년) 9월 처리	경남 통영군 도산면 관덕리 흑암산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대정8년 산3175	곽○○	대정8년(1919년) 9월 처리	경남 양산군 웅상면 시명산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대정8년 산3195	석○○ 외 6명	대정8년(1919년) 9월 처리	평남 성천군 삼덕면 두미산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대정8년 산3198-3199	경남 함안군 여항면	대정8년(1919년) 10월 처리	경남 함안군 여항면 여항산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대정8년 산3204	석○○ 외 2명	대정8년(1919년) 10월 처리	경북 영주군 평은면 영지산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대정8년 산3216	장○○	대정8년(1919년) 10월 처리	경북 영주군 평은면 금광리 금광산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대정8년 산3217	곽○○ 외 73명	대정8년(1919년) 10월 처리	경남 고성군 삼산면 병산리 조금장산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대정8년 산3225	스즈키 아이시게 (鈴木愛重)	대정8년(1919년) 10월 처리	전남 강진군 군동면 금사리 군동산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대정8년 3258~3261	경남 하동군 금양면	대정8년(1919년) 10월 처리	경남 하동군 금양면 금오산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대정8년 산3262	경남 하동군 남면	대정8년(1919년) 10월 처리	경남 하동군 남면 금오산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대정8년 산3351-3360	마사키 이타루 (正木暢) 외 1명	대정8년(1919년) 10월 처리	평북 정주군 해산면 대달양도

<표 10>에서 살필 수 있는 바와 같이 조림대부를 받은 자 가운데에는 조선인뿐만 아니라 일본인도 적지 않았다. 원래 연고자가 존재하지 않아 구분조사 당시 제1종 불요존 국유림으로 편입된 임야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어느 누구에게나 대부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임야는 대개 “부락에서 먼 장소에 있는 것으로 그 구역은 부락민의 생활과 상관이 없다고 인정되는 곳”이었다.

이러한 임야에 대해서도 조선인이 조림대부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임상(林相)

이 좋아 향후 벌채사업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조림대부를 신청하기도 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유명 일본기업이 조림대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제2종 불요존림으로 구분되어야 할 연고림을 제1종 불요존림으로 구분하여 일본인도 대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림대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연고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두고 벌어지는 분쟁이 많은 편이었다. 어떤 경우에는 당국자가 「삼림법」 제19조에 의한 소유권 신고를 이행하거나 임야조사사업 당시 신고를 이행하여 사유지로 인정받은 곳도 그 소유권을 취소하고 일본인에게 대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우의 임야는 대개 원래부터 수목이 울창하여 식림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많았다고 한다. 이런 곳을 대부받은 일본인들은 크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장래에 수익원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보여지는 자산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본인 자본이 제1종 불요존림을 조림대부하는 것에 대하여 일제는“지식이 없고 자본도 없고 나태한 농민에게는 조림을 맡기기 어려우니 자본력이 있는 자에게 대부하는 것이 옳다”라는 이유로 원래 연고자가 제출한 조림대부 신청서를 반려하고 이를 일본인에게 대부하기도 했다. 이 때문인지 일본인 대자본이 차지하고 있던 임야는 임상(林相)이 뛰어난 강원도, 함경도, 황해도 지역의 불요존림인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하여 대면적의 삼림을 보유하게 된 일본인 자본으로는 스미토모(住友), 동양척식회사, 야마시타(山下), 미츠이(三井), 나카무라구미(中村組), 노무라(野村) 등이 있다.

일본인 자본 가운데에서도 동양척식회사가 1939년 말 기준으로 115,000여 정보를 대부 혹은 양여받아 가장 많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스미토모가 85,000여 정보에 이르는 임야를 대부, 양여받았다. 이들을 포함하여 상위 30위에 해당하는 일본인 자본이 관리한 임야의 합계가 60만여 정보에 이르렀다.

조선총독부는 일본인 자본을 유치하여 식림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비교적 강했다. 하지만 일본인 자본이 불요존 국유림의 대부를 위하여 조선에 진출하는 데에는 약간의 걸림돌이 있었다. 바로 대부료를 납부하고 조림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이었다.

일제는 연고자가 존재하지 않는 제1종 불요존 국유림을 그대로 국유림으로 존치시

켜 소유하면서 식림을 위한 제 비용을 지출하려 하지는 않았다. 조림대부 제도를 통하여 일제는 식림비용을 대부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대부료 일부를 조선총독부 세입으로 처리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일본인 자본이 조림대부를 신청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부료를 징수한다는 방침이었던 것이다. 다만 일본인 자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대부료를 대폭 낮추어주거나"기업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목탄(木炭)의 생산을 장려하고, 목탄규칙을 제정하여 목탄생산의 편리를 도모하며 금융지원의 길을 모색"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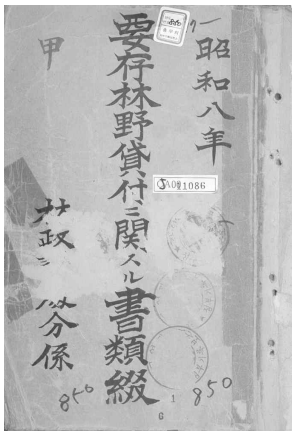
일제는 당시 조선에 일본 자본이 투자를 행할 경우에 평균 15년의 조림기간을 거치면 목재 및 목탄의 공급에 적당한 임상을 구성할 수 있으며 매년 2할 내지 3할의 이윤이 발생할 것으로 선전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 기록물철에 수록된 문건 중 가장 첫 번째로 수록되어 있는 <국유임야대부원 허가의 건>에는 위에서 간단히 설명한 것과 같이 조림대부 신청서, 그에 대한 허가서, 계약서, 임야조서, 신원보증서가 있다. 이 중 국유림대부조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제1종 불요존임야조서>

1. 임야의 명칭 : 대덕산의 1 국유림
2. 봉산(封山), 공산(公山) 등의 구별 : 공산(公山)
3. 소재지 : 경기도 용인군 외사면
4. 면적 : 188정보 83
5. 대부료 연액 : 34원 30전
6. 지황(地況) : 경사도 평균 23도, 화강암을 기반암으로 한 사질토양
7. 임황(林況) : 6~7년생 적송(赤松)의 치수가 드문드문 자라고 있으며 그 사이에 6~7년생 졸참나무 치수가 섞여 있음
8. 삼림령 제1조의 관계 : 없음 (보안림 편입여부-필자)
9. 입회 관행의 여부 : 없음
10. 처분의 경우 그 조건 : 1919년 10월부터 20년간 대부한다. 허가 후 18개월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및 사업성공이 예상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지를 환수한다. 해당 임야 내에 관리자가 있는 분묘는 종전과 같이 이용하고 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경무관헌에게 신고한 후 정리하도록 한다.



요존임야대부에 관한 서류철 (要存林野貸付＝關スル書類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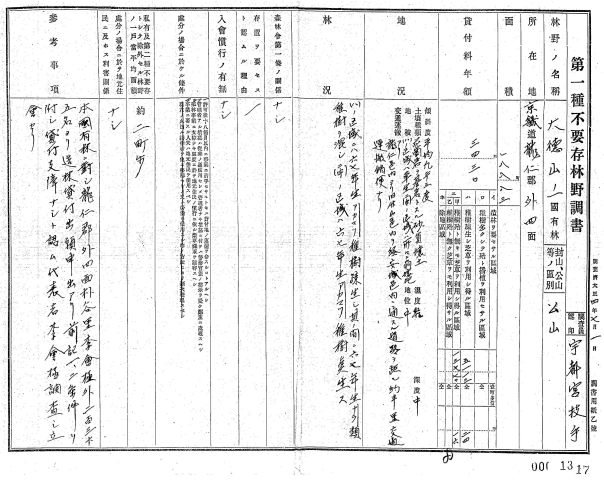
- 생산연도 1933년
- 생산기관 총독부 농림국
- 관리번호 CJA0011086
- M/F 1310091-5395
- 총페이지 752면

조림대부는 불요존 국유림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요존 국유림의 경우에는 「삼림령」 제6조에 의하여"공용·공익사업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교환·양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를 대부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공용·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부 혹은 양여, 매각이 가능하다는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제한적이나마 요존 국유림을 대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기록물철은 바로 그러한 경우의 대부, 요존 국유림 대부 사례를 모아 놓은 것이다.

요존 국유림을 이른바 '공용·공익사업'을 위해 대부한 건수는 1944년 말까지 대학 및 고등농림학교의 연습림으로 8건, 도 지방모범림으로 9건, 공원·신사 부지로 121건 등에 이르렀다. 이 외에도 조선총독부는 광업 사업으로 사용하는 임야의 경우에도 대부를 허가했는데, 이러한 경우의 처리 절차는 1917년에 만들어진 '관 통첩 제 92호' <광업용에 쓰일 국유임야의 처리에 관한 건>에 의해 규정되었다. 이에 의하면 채굴 목적으로 대부를 할 때에는 소정의 대부료를 부과하고, 폐광석을 버리는 부지 만큼은 가능한 한 대부 신청자가 매수하도록 되어 있었다. 광업 이외에도 단체가 사용하는 임야 등도 대부를 할 수 있었다.

광업용 임야로서 영림서 관내에 존재하는 요존 임야의 대부는 1927년 12월에 영림

서장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었고, 그 외 요존 임야의 경우는 1932년에 도지사가 직권으로 결정하도록 위임되었다.


第一種不要存林野調書

<그림 16>≪국유임야대부서류≫(CJA0010504)에 수록된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에 부속된 제1종 불요존 임야 조서

이 기록물철에는 모두 42건의 요존 국유림 대부 허가 및 불허가 관련 서류가 편철되어 있다. 각 건은 해당 국유림의 관할 영림서에서 대부 가능 여부를 조사·확인하라는 내용의 지령서, 이에 대한 영림서의 답변서('국유임야 대부원에 관한 실지조사서'라는 제목으로 작성되어 있음), 임야도, 대부 신청자에게 보내는 허가 통지서(여기에 대부 조건이 기재되어 있음), 대부 신청자가 제출한 자산증명원 등이 첨부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에는 말미에 <광업용에 쓰일 국유임야의 처리에 관한 건>의 전문과 이에 대한 해설이 수록되어 있어 요존 국유림 대부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 참고가 된다. 이 기록물철에 수록된 문서 가운데 주요한 것들을 간단히 나열하면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 ≪요존임야대부원에 관한 서류철≫의 주요 기록물건명 및 내용

문서제목	주요내용
국유임야 대부원에 관한 건	1932년 10월에 농림국장이 신갈파진영림서장에게 보낸 문서. 장진강 발전소 공사를 위해 영림서 관내 요존임야 대부를 신청한 조선질소회사가 대부 허가가 내려지기 전에 공사하였기 때문에 이를 조사하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영흥만 해군용지 전대의 건	함경남도 덕원군 현면 연두도리 일대의 임야를 해군 용지로 대부한 건에 관련된 문서이다.
국유임야 대부연기원의 건	강원도 고성군 신북면 창대리 금강산 국유림 내에 찻집 운영을 위해 일본인 오야부 소타로(大藪庄太郎)가 이미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던 부지의 사용권을 연장하는 건에 관한 서류들이다.

문서제목	주요내용
국유임야 대부원의 건	경기도 경성부 서사헌정 소재 조계사가 제출한 대부 신청 건으로서 남산 요존 국유림 일대에 석불을 안치하고자 대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총독부가 이를 불허한 것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다.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함남 삼수군 보성리 일대 지주들이 수전 용수로로 이용하기 위해 제출한 대부 신청의 처리와 관련된 문서이다.
만철 출원에 관계되는 국유림 대부의 건	남만주철도회사가 1933년 6월에 철도부설용 작업장 건설 부지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령 영림서장에게 제출한 대부 신청 건과 관련된 문서이다.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함북 경흥군 웅기읍 관곡동 일대 임야에 대해 남만주철도주식회사가 철도부설용으로 제출한 임야 대부 신청 처리 건과 관련된 문서이다.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함북 무산군 삼사면 연암동 일대에 합자회자 마에다구미(前田組)가 화약류 저장창고부지 마련을 위해 제출한 대부 신청 관련 문서들이다.
국유임야 대부원에 관한 건	강원도 양구군 수입면 오천리 소재 국유림에 대해 김○○이라는 조선인이 관개 수로용으로 대부 신청한 건과 관련된 문서들이다.
국유삼림 대부원 불허가의 건	강원도 고성군 간성면 광산리 일대 국유림에 대해 간성청년단장인 일본인 야스다 이오리(安田伊織)가 청년단 연습림으로 간성군 향로봉 국유림을 대부 신청한 건으로, 당국에 의해 불허된 정황이 나타나 있는 문서이다.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함남 장진군 동하면 서어수리 일대에 대해 조선질소비료주식회사가 신청한 대부 관련 문서들이다.
웅기전기주식회사에 대하여 국유림 대부에 관한 건	웅기전기주식회사가 회령영림서장에게 제출한 전기 부설용 부지 대부 관련 문서들이다.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함북 경흥군 경흥면 오봉동 일대를 대상으로 웅기전기주식회사가 전선 설치를 위해 제출한 임야 대부 신청 관련 문서들이다.
웅기전기주식회사에 대하여 국유림 대부에 관한 건	함북 경흥군 경흥면 청학동 일대를 대상으로 웅기전기주식회사가 전선 설치를 위해 제출한 임야 대부 신청 관련 문서들이다.
을종 요존임야 대부처분 승인에 관한 건	전라북도 부안군 부령면이 기본재산 조성 목적으로 제출한 대부 신청을 승인한 건과 관련된 문서들이다.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함남 신흥군 서고천면 중흥리 일대를 대상으로 장진강수전주식회사가 제출한 대부 신청 관련 문서들이다.

문서제목	주요내용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함남 함주군 하기천면 진흥리 일대를 대상으로 장진강수전주식회사가 제출한 대부 신청 관련 문서들이다.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함남 갑산군 운흥면 설령리 일대에 철도 공사 관련 약재 저장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주식회사 아라이구미(荒井組)가 제출한 대부원을 허가한 문서들이다.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함남 함주군 하기천면 진흥리 일대를 대상으로 장진강수전주식회사가 제출한 대부 신청 관련 문서들이다.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함북 무산군 삼사면 연암동 일대에 철도 공사용 창고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합자회자 마에다구미(前田組)가 제출한 대부 신청 관련 문서들이다.
웅라추도(雄羅墜道) 용지 사용에 관한 건	웅진 나진간 도로 터널 공사 부지를 대부한다는 내용의 회령영림서장이 만든 결정서 등이 담긴 서류이다. '추도'는 터널을 의미한다.
국유임야 대부원에 관한 건	전남 영광군 영광면 무령리 일대 임야에 대해 영광면이 모범림 조성을 위해 신청한 대부 관련 문서들이다.
국유임야 지하 대부원 허가의 건	평북 후창군 칠평면 대흥동 일대에 김봉일이라는 조선인이 가옥건축용 부지를 대부받기 위해 제출한 문서에 대한 처리 관련 건이다.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함남 장진군 신남면 고흥리, 함남 함주군 하기천면 동흥리 일대를 대상으로 장진강수전주식회사가 제출한 대부 신청 관련 문서들이다.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함남 함주군 하기천면 진흥리 일대를 대상으로 장진강수전주식회사가 제출한 대부 신청 관련 문서들이다.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함남 풍산군 웅이면 서창리, 함남 장진군 동하면 서어수리 일대를 대상으로 조선질소비료주식회사가 제출한 대부 신청 관련 문서들이다.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강원도 삼척군 북삼면 신흥리 일대를 대상으로 기사키 치요라는 일본인이 금은 광맥을 탐색하기 위해 제출한 대부 관련 문서들이다.
국유임야 대부원에 관한 건	평북 운산군 북진면 초리도 일대에 조선송전주식회사가 제출한 대부 관련 문서들이다.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함남 삼수군 별동면 선소리 일대를 대상으로 노○○ 외 13명이 제출한 임야 대부 신청을 허가한 문서들이다.

문서제목	주요내용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함남 풍산군 웅이면 서창리 일대를 대상으로 조선질소비료주식회사가 제출한 대부 관련 문서들이다.
국유임야 대부원의 건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북한리 일대를 대상으로 조선인 김○○이 제출한 임야 대부 관련 문서들이다.

조선총독부 임정 관련 기록물에는 이 기록물철 외에도 다수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 및 불허가 관련 기록물이 있는데, 대개는 특정 연도별로 하나의 철을 이루고 있다. <표12>에 국유임야 대부와 관련된 기록물철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해 놓았다.

<표 12> 임야대부 관련 기록과 주요 내용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특기 사항
CJA0010239	명치44년도 대지에 관한 서류	1911	1911년도 조림대부 제도가 처음 실시된 시기의 대부 관련 '허가' 문서로, 경남의 부산부와 양산군 지역 관련이 대부분임
CJA0010240	명치44년도 대지에 관한 서류	1911	1911년도 조림대부 제도가 처음 실시된 시기의 대부 관련 '불허가' 문서로, 황해도, 경기도, 함남, 함북 지역이 대부분임
CJA0010241	명치44년도 대지에 관한 서류	1911	1911년도 조림대부 제도가 처음 실시된 시기의 대부 관련 '불허가' 문서로, 경기도, 황해도, 함남, 평북, 평남 지역이 대부분임
CJA0010247	대부허가	1912	전국 각 지역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254		1913	
CJA0010255		1913	
CJA0010256		1913	
CJA0010257		1913	
CJA0010258		1913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특기 사항
CJA0010259		1913	
CJA0010260		1913	
CJA0010261	대부허가	1913	경남 거제군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262		1913	충북 청풍군과 제천군 일대의 국유임야와 산야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263		1913	전국 각 지역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264		1913	황해도 평산군, 봉산군, 황주군 일대의 동양척식주식회사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가 대부분임
CJA0010274	임야대부 허가 충북	1914	충북 청주군, 보은군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276	임야대부 허가 평남	1913	평남 강서군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관련 문서
CJA0010278		1913	
CJA0010279	임야대부 허가 경기	1914	경기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1월`2월)
CJA0010280		1914	경기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3월~4월)
CJA0010281		1914	경기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5월~9월)
CJA0010282		1914	경기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283	임야대부 허가 경기	1914	경기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12월)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특기 사항
CJA0010285	임야대부 허가 충북	1914	충청북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5월~12월)
CJA0010286	임야대부 허가 충남	1914	충청남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287	임야대부 허가 전북	1914	전라북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288	임야대부 허가 전남	1914	전라남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289	임야대부 허가 경북	1914	경상북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1월~5월)
CJA0010290		1914	경상북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5월~12월)
CJA0010291	임야대부 허가 경남	1914	경상남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1월~4월)
CJA0010292		1914	경상남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4월~6월)
CJA0010293		1914	경상남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7월~10월)
CJA0010294		1914	경상남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11월)
CJA0010295		1914	
CJA0010296		1914	
CJA0010297		1914	
CJA0010298		1914	경상남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11월~12월)
CJA0010299		1914	경상남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11월)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특기 사항
CJA0010300	임야대부 허가 황해	1914	황해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301			
CJA0010302	임야대부 허가 평남	1914	평안남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303		1914	
CJA0010304	임야대부 허가 평북	1914	평안북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305	임야대부 허가 강원	1914	강원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306	임야대부 허가 함남	1914	함경남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307	임야대부 허가 함북	1914	함경북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317	대부허가 경기도	1915	경기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318			
CJA0010319			
CJA0010320			
CJA0010321	대부허가 경남북, 전북, 강원	1922	경상도, 강원, 황해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322	대부허가 충북	1915	충북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323			
CJA0010324			
CJA0010325	대부허가 충남	1915	충남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특기 사항
CJA0010326			문서
CJA0010327	대부허가 전북	1915	전북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328	대부허가 전남	1915	전남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329	대부허가 경북	1915	경북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330	대부허가 경남	1915	경남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331			
CJA0010332			
CJA0010333			경남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과 부산부 일대의 국유산림 대부원 불허가 처리 문서
CJA0010334			
CJA0010335	대부허가 황해도	1915	황해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336			
CJA0010337	대부허가 평남	1915	평남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338			
CJA0010339			
CJA0010340	대부허가 평북	1915	평북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341			
CJA0010342	대부허가 강원도	1915	강원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특기 사항
CJA0010343	대부허가 함남	1915	함경남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344	대부허가 전라남도	1915	전라남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348	대부허가 함북	1915	함북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358	대부허가 경기도1	1916	경기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359	대부허가 경기도2	1916	
CJA0010360	대부허가 경기도	1916	
CJA0010361	대부허가 충청북도1	1916	충청북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362	대부허가 충청북도2	1916	
CJA0010363	대부허가 충청남도	1916	충청남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364	대부허가 전라북도	1916	전라북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365	대부허가 전라남도	1916	전라남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366	대부허가 경상북도	1916	경상북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367	대부허가 경북	1916	
CJA0010368	대부허가 경상남도1	1916	경상남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369	대부허가 경상남도2	1916	
CJA0010370	대부허가 경남	1916	
CJA0010371	대부허가 황해도	1916	황해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특기 사항
CJA0010372	대부허가 평안남도	1916	평안남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373			
CJA0010374	대부허가 평안북도1	1916	평안북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375	대부허가 평안북도2		
CJA0010376	대부허가 평안북도3		
CJA0010377	대부허가 평안북도		
CJA0010378	대부허가 강원도	1916	강원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379			
CJA0010380	대부허가 함경남도	1916	함경남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381	대부허가 함경북도	1916	함경북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382	대부허가	1916	함경북도, 충청도, 전라북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383	대부허가 각도	1916	각도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389	대부허가 평안남도2	1916	평안남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399	대부허가 충북	1917	충청북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400	대부허가 충청남도	1917	충청남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401	대부허가 충남		
CJA0010402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특기 사항
CJA0010403	대부허가 전북	1917	전라북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404	대부허가 전남	1917	전라남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405			
CJA0010406			
CJA0010407	대부허가 경북	1917	경상북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408			
CJA0010409			
CJA0010410			
CJA0010411	대부허가 경남	1917	경상남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412			
CJA0010413			
CJA0010414	대부허가 황해도	1917	황해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415	대부허가 평남	1917	평안남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416	대부허가 평북	1917	평안북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417			
CJA0010418			
CJA0010419	대부허가 강원도	1917	강원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특기 사항
CJA0010420			문서
CJA0010421	대부허가 함남	1917	함경남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422	대부허가	1917	원래 제목이 없지만, 함경남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들이 편철되어 있으므로 제목을 부여함
CJA0010423	대부허가 함북	1917	함경북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424			
CJA0010425			
CJA0010426			
CJA0010427			
CJA0010439	대부허가 경기도	1918	경기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440			
CJA0010441	대부허가 충북	1918	충청북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442	대부허가 충청북도		
CJA0010443	대부허가 충남	1918	충청남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444			
CJA0010445			
CJA0010446			
CJA0010447	대부허가 전라북도	1918	전라북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448	대부허가 전라남도	1918	전라남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특기 사항
CJA0010449			리 문서
CJA0010450	대부허가 경상북도	1918	경상북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451			
CJA0010452			
CJA0010453	대부허가 경북	1918	
CJA0010454			
CJA0010455	대부허가 경상남도	1918	경상남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456	대부허가 황해도	1918	황해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457			
CJA0010458	대부허가 평안남도	1918	평안남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459	대부허가 평안북도	1918	평안북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460			
CJA0010461	대부허가 평안남북도	1918	평안남북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462	대부허가 강원도	1918	강원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463			
CJA0010464	대부허가 함남	1918	함경남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465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특기 사항
CJA0010466	대부허가 함경남도		함경남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467			
CJA0010468	대부허가 함북	1918	함경북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469			
CJA0010470	대부허가 함경북도		
CJA0010481	대부허가 경기도	1919	경기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487	대부허가 충청남도	1919	충청남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488	대부허가 전라남도	1919	전라남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489	대부허가 경상북도	1919	경상북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490	대부허가 경상남도	1919	경상남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491	대부허가 강원도	1919	강원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492	대부허가 함경남도	1919	함경남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493	대부허가 함경북도	1919	함경북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494	대부허가 각도 합철	1919	전국 각 지역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495	대부허가 각도	1919	
CJA0010496	대부허가원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특기 사항
CJA0010497			
CJA0010498			
CJA0010499	국유임야대부원허가	1919	
CJA0010500			
CJA0010502			
CJA0010503			
CJA0010505			
CJA0010506			
CJA0010507			
CJA0010508			
CJA0010509			
CJA0010510			
CJA0010521			
CJA0010522			
CJA0010523	국유임야 대부원허가	1920	경상남북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524	국유임야 대부원허가	1920	국유임야 대부원허가
CJA0010525			
CJA0010526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특기 사항
CJA0010527			
CJA0010528	대부원허가 경상남도	1920	경상남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529	대부원허가 및 불허가 경상북도	1920	경상북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530	대부원허가 강원	1920	강원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531	대부원허가 전남북	1920	전라남북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532	대부원허가 경기, 경북	1920	경기도와 경상북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533	대부원 허가 강원, 황해	1920	강원도와 황해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534	대부원 허가 평남, 평북	1920	평안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535	대부원 허가 충남북, 함남북	1920	충청도와 함경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536	국유임야 대부 및 불허가	1920	전국 각 지역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537	대부원 허가		
CJA0010538			
CJA0010539	대부원 허가 및 불허가 충북, 전남, 경남	1920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540	대부원 허가 및 불허가 황해	1920	황해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541	대부원 허가 및 불허가 경남북	1920	경상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특기 사항
CJA0010542	대부허가 및 불허가 산물매각철	1920	전국 각 지역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임산물매각원 허가 관련 문서도 일부 편철
CJA0010565	대부허가	1921	각 지역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566			
CJA0010567			
CJA0010568			
CJA0010569	대부원 허가	1921	
CJA0010570	대부허가 전남북	1921	전라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571	대부원 허가 경남, 경북	1921	경상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572	대부원 허가 평남, 평북	1921	평안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573	대부원 허가 경기, 강원, 함남	1921	경기도, 강원도, 함경남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574	대부원 허가 황해도	1921	황해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575	임야대부	1922	각 지역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576	대부허가	1922	대부분 경상북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577	대부허가	1922	각 지역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578			
CJA0010579	대부허가 경기, 충북, 평남북	1922	경기도, 충청북도, 평안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특기 사항
CJA0010580	대부원 허가	1922	각 지역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581			함북, 황해, 충북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582	대부원 허가	1922	황해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583	대부원 허가	1922	각 지역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관련 문서. 일부 임산물매각원 허가 문서가 함께 편철
CJA0010584	대부원 산물매각 허가 함남	1922	함경남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및 임산물 매각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585	임야대부 산물매각 허가 및 불허가	1922	각 지역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관련 문서. 일부 임산물매각원 허가 문서가 함께 편철
CJA0010586	대부원 허가 및 불허가	1922	황해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587		1922	충청북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588		1922	황해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589		1922	여러 지역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590		1922	황해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591		1922	
CJA0010592		1922	황해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등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593	대부의 건	1922	황해도 함경북도 등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600	대부원 허가	1923	여러 지역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특기 사항
CJA0010601		1923	강원도 일대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관련 문서. 평북과 경기지역의 보안림편임 문서도 일부 편철
CJA0010606		1923	함경북도와 경상남도 등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607		1923	여러 지역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608		1923	황해도와 함경북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609		1923	여러 지역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610		1923	대부분이 함경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613		1923	대부분이 황해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618		1924	경상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경상북도 일대의 이완용에게 국유임야를 양여허가한 문서도 함께 편철
CJA0010653	국유임야 대부 기타서류	1925	
CJA0010655		1925	
CJA0010656		1925	
CJA0010658	국유임야 대부서류	1925	여러 지역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659		1925	
CJA0010661		1925	
CJA0010679		1926	경상도와 강원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특기 사항
CJA0010680		1926	여러 지역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683		1926	함경남도 북청군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691		1926	함경북도 길주군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704		1927	전남, 평남, 충남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705		1927	함북, 강원, 황해도 등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706		1927	경북, 강원, 전북 등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707		1927	함경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708		1927	함북, 전남, 평남 등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709		1927	전라도, 황해도, 충남 등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710		1927	함경, 강원, 경북 등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711		1927	함북, 경북 등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712		1927	전남, 평안도, 충청 등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713		1927	경남, 함북, 황해 등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758		1928	평북, 충남, 함남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759		1928	함북, 전남 등지의 국유임야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특기 사항
			문서
CJA0010760		1928	대부분 함경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761		1928	강원도, 함경북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762		1928~1929	평안도, 함경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763		1928	강원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764		1928	대부분이 전라남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765		1928	대부분이 충북과 강원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766		1928	대부분이 함경북도 경흥군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관련 문서이며, 함경남도 신흥군 일대의 조선수전주식회사 문서도 함께 편철
CJA0010767	국유임야대부 기타서류	1928	강원도 김화군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768	국유임야대부서류	1928	함경북도와 평안남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770	국유임야대부 기타서류	1928	함경남도 북청군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771		1928	강원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816	국유임야대부서류	1929	평남, 함북, 강원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817			함경북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특기 사항
CJA0010820			여러 지역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821	국유임야대부 및 임산물매각원 허가서류	1928~1929	여러 지역의 국유임야 대부원 및 임산물매각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824	국유임야대부 기타서류	1929	여러 지역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문서
CJA0010861		1930	대부분이 경기도, 전라남북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862	국유임야대부서류	1930	강원도, 함북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863	국유임야대부 기타서류	1930	함경도, 경기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865		1930	전라남북도, 경기도, 평안북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913	국유임야 대부서류	1931	여러 지역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914	국유임야 대부 기타서류		
CJA0010917			여러 지역의 국유임야 대부기간 연기 허가 문서
CJA0010973	국유임야 대부 기타서류	1932	함북, 평북, 경기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974		1932	함경도, 강원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975	국유임야 대부서류	1932	전라북도 진안군과 평안북도 태천군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976	국유임야 대부 기타서류	1932	강원도 이천군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977		1932	강원도, 함경북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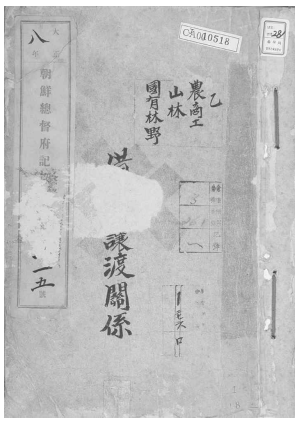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특기 사항
			건 처리 문서
CJA0010978	국유임야 대부서류	1932	함경남도, 평안북도, 충청북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관련 문서
CJA0010979		1932	함경북도, 강원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980	국유임야 대부 기타서류	1932	함경북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981		1932	함경도와 강원도 등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0982		1932	여러 지역의 국유임야 대부기간 연기원 허가 관련 문서
CJA0011040	국유임야 대부서류	1933	평안도, 함경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1041		1933	함경북도, 강원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1042		1933	여러 지역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1043	국유임야 대부 기타서류	1933	평북 초산군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문서
CJA0011045	국유임야 대부 기타서류	1933	평남 순천군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1046		1933	함경도, 경상북도 등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1047		1933	평안도, 함경도, 강원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1048		1933	여러 지역의 국유임야 대부기간 연기원 허가 문서
CJA0011086	요존임야 대부원에 관한 서류철	1933	1933년 장진강 발전소 공사를 위해 영림서 관내의 요존임야를 대부받고 싶다고 조선질소회사가 총독부에 대부원을 제출하였으나, 당국이 이를 채 허가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특기 사항
			하기도 전에 동(同) 회사가 대부 신청지 내에서 무단으로 공사에 착수한 사건이 발생한 전말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사를 벌여 보고하라는 내용의 기록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CJA0011092	국유임야 대부서류	1934	강원, 함남, 평북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1093		1934	강원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1094	국유임야 대부 기타서류	1934	여러 지역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1095	국유임야 대부서류	1934	
CJA0011096		1934	함경도, 강원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1097	국유임야 대부 기타서류	1934	강원도 원주군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1141	국유임야 대부원허가	1935	평북과 강원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1176	국유임야 대부 기타서류	1934	함경, 평안, 강원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1186	국유임야 대부서류	1936	평남, 함남, 강원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1211	국유임야 대부에 관한 서류	1936	여러 지역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1213			
CJA0011214	국유임야 대부서류	1936	함경도, 전남, 경남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1235	국유임야 대부에 관한	1936	함남과 평북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특기 사항
	서류		처리 문서
CJA0011297	국유임야 대부서류	1937	함경도, 평북, 강원도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관련 문서. 장진강수전주식회사 문서도 편철
CJA0011357	국유임야 대부 기타서류	1937~1938	여러 지역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처리 문서
CJA0011381	국유임야 대부서류	1939	부산 증태산 일원은 부산부에서 공원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조림대부를 받은 곳으로, 소화14년(1939년) 9월에 조림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임야를 당국에 반환을 해야 하지만, 부산부에서 그 일부 임야를 계속 공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보임에 따라 일부는 반환하고 그 나머지는 계속 공원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다는 내용의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음
JA0011392	국유임야 대부기타서류	1939	강원도 삼척군 소재 덕항산 국유림에서 갱목용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 삼척개발주식회사가 제출한 대부서류들이 수록되어 있음
CJA0011405	소화15년 대부	1940	함북 무산군 무산면 일대에서 철도 공사를 하고자 조선철도회사가 제출한 서류들이 수록되어 있음
CJA0011407	국유임야 대부서류	1942	함경남도 일대의 장진강수전주식회사의 국유임야 및 기타 대부원 허가 건 문서가 편철되어 있음
CJA0011497		1942	함경북도 일대의 북선수력전기회사, 조선수력전기회사의 국유임야 대부원 문서가 편철되어 있음
CJA0011498		1942	평안북도 일대의 서선합동전기주식회사와 함경남도 일대의 조선질소비료주식회사의 국유임야 대부 및 차지권 허가 문서가 편철되어 있음
CJA0011499		1942	강원도 일대의 경성전기주식회사 등의 국유임야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특기 사항
			대부원 허가 문서가 편철되어 있음
CJA0011512		1943	함경남도 일대의 장진강수전주식회사 등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 문서가 편철되어 있음
CJA0011517	국유임야 대부 기타서류	1943	강원도 일대의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신흥척식주식회사 등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 관련 문서가 편철되어 있음
CJA0011518	국유임야 대부서류		평남 일대의 동양척식주식회사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 문서가 편철되어 있음
CJA0011563	국유임야 대부 기타서류	1941	함남 장진군 일대의 강계수력전기주식회사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 문서가 편철되어 있음

3) 연기 및 차지권 양도 관련 기록물



국유임야차지권양도관계
(國有林野借地權譲渡關係)

- 생산연도 1918 ~ 1919년
- 생산기관 총독부 식산국
- 관리번호 CJA0010518
- M/F 1310091-4546
- 총페이지 714면

조선총독부로부터 조림대부를 받은 자가 애초 계약서에 명기한 기한 내에 소정의 조림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그 차지권(조림 대부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임상(林相)이 뛰어난 임야의 경우 적극 그 산물을 벌채하거나 일본인 기업에게 매각한다는 원칙을 세워두었던 반면 임상이 좋지 않은 민유림의 조림은 될 수 있는대로 민간인에게 맡긴다는 방침을 고수하였다. 이 때문에 조림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 계약서상의 조림 조항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때, 그 차지권(대부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하도록 하거나 대부권을 회수하여 또 다른 신청자에게 다시 대부하였다. 이 기록물철은 대부를 받은 자가 자발적으로 그 차지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하겠다는 신청서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는 내용의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만일 대부받은 자('受貸付者')가 소정의 계약사항을 미처 이행하지 못하였지만, 그 차지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임야의 대부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었다. 국가기록원에는 이러한 내용의 문서가 '국유임야대부기간연기서류' 등의 제목으로 편철, 소장되어 있다.

한편 대부를 받은 자가 차지권 양도 혹은 대부기간 연장의 의사 표시없이 계약한 바의 조림을 소홀히 하거나 조림에 필요한 재정적 여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조선총

독부가 해당 임야의 대부권을 회수할 수 있었다.

이 기록물철에는 실제로는 국유임야 차지권 양도 관련 문서뿐만 아니라 대부기간 연장 관계, 대부권 반환 등의 여러 가지 문서가 섞여 있다. 이를 나열하자면 다음의 <표 13>과 같다.

<표 13> 《국유임야차지권양도관계》의 주요 기록물건 및 주요 내용

순번	문서명	신청자	비고
1	국유임야 차지권 양도 허가의 건	평남 강서군 강서면 광향리 일대의 국유림 차지권을 양도 홍○○	
2	국유임야 차지권 양도 허가의 건	경기 수원군 반월면 사사리 일대의 국유림 차지권을 양도 이○○	
3	국유임야 차지권 양도 허가의 건	남안주군 동면 명학리 일대의 국유림 차지권을 양도 이○○	
4	국유임야 차지권 양도 허가의 건	평안북도 정주군 고현면의 국유임야 하시모토 다카요시(橋本高吉) 외 1명	차지권자가 일본으로 귀환하는 까닭에 우에마쓰 요시마루(植松義丸)라는 일본인에게 차지권을 양도함
5	국유임야 차지권 양도 허가의 건	경기도 개성군 영남면의 국유림을 양도함 산업계장 고한원	
6	국유임야 차지권 양도 허가의 건	경기도 부천군 용유면 타케시다(竹下康之)	원 대부권자가 파산하여 경기도 부천군 용유면 일대의 국유림야 차지권을 양도함
7	국유임야 차지권 양도 허가의 건	평남 강서군 동진면 용정리 일대의 국유림 양도 허가 박○○	
8	국유임야 차지권 양도 허가의 건	평남 강서군 수산면 고학리 일대의 국유림 양도 허가 김○○	
9	조림성공에 의한 국유임야양여 허가의 건	전라남도 완도군 오화면 일대의 국유림 양여 요청 주식회사 나카무라구미(中村組)	

순번	문서명	신청자	비고
10	국유임야 차지권 일부 반환원 허가의 건	조선귀족단 보식원	1918 6월, 충남 홍성군 오서산 국유림을 대부받은 조선귀족단 보식원의 대부지 안에 사유임을 주장하는 임야가 있고 그 땅의 연고자가 해당 면적을 반환받고자 함에 응하여 대부 임야의 일부를 조선총독부에 반환한다는 내용임
11	국유임야 대부지 반환원 허가의 건	경기 수원군 태장면 병점리의 국유임야 대부지를 반환 김○○	
12	국유임야 사용자 승인의 건	전북 전주군 동상소양면 위봉산성 일대의 국유림을 학교 연습림으로 요청함 수원농림전문 학교장	
13	국유임야 차지권 양도 허가의 건	경남 남해군 창선면 일대의 국유임야 차치권을 양도함 창선면삼림조합장 양○○	
14	국유임야 대부지 일부 반환원 허가의 건	충남 홍성군 광천면 일대의 국유림 대부지 중 일부를 반환 요청함 보식원장 이○○	
15	차지권의 지분 양도 허가의 건	경기 용인군 수여면 일대의 국유림의 차치권 지분을 양도함 유방리 윤○○	
16	국유임야 대부지 반환 명령의 건	경상남도 통영군 거제면 서상리 일대의 귝유임야 대부지 반환을 명함 니시오 기치타로(西尾吉太郎)	
17	국유임야대부기간 연기원 허가의 건	경기 연천군 백학면 일대의 국유임야의 대부기간을 연기 요청함	

순번	문서명	신청자	비고
		통구리 류○	
18	국유임야 차지권 양도원 허가의 건	함남 고원군 상산면 교초리 일대의 국유임야의 차지권을 양도함 오○○외 1명	
19	국유임야 대부기간 연기원 허가의 건	경북 문경 동로면 인곡리 정○○	
20	국유임야를 도로부지로 조체(組替)하는 건	황해도 황주군 구성면 일대의 국유임야를 도로부지로 재편성함 황해도 장관	
21	국유임야 차지권 양도원 허가의 건	충남 아산군 배방면 일대의 국유임야를 차지권을 양도함 윤○○	
22	국유임야대부지 반환 명령의 건	함경남도 안변군 학성면 비운리 국유임야 대부지 반환 명함 모리우헤이지(毛利卯平次)	
23	국유임야 차지권 양도 허가의 건	평남 순천군 순천면 일대의 국유임야 차지권을 양도함 성암리 김○○	
24	국유임야 차지권 양도 허가의 건	황해 신천군 문무면 동곡리 사립대정학교	1919 황해도 신천군 문무면 동곡리 국유림을 사립 대정학교에 대부했으나 해당 학교가 폐교됨에 따라 차지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한 경우임
25	국유임야대부기간연기 및 대표자 명의 변경원의 건	전라남도 제주도 제주면 삼양리 일대의 국유임야 대분기간 연기를 요청하는 동시에 대표자 명의 변경도 요청함 전○○	
26	국유임야 차지권 양도원 허가의 건	경기도 수원군 양감면 사창리 일대의 국유임야 차지권을 양도함	

순번	문서명	신청자	비고
		양감면산업계장 이○○	
27	국유임야 차지권 양도원 허가의 건	함북 부령군 석막면 일대 국유임야 차지권을 양도함 장○○	
28	국유임야 차지권 양도 허가의 건	평남 강서군 초리면 일대 국유임야 차지권을 양도함 사리 김○○	
29	국유임야 차지권 양도원 허가의 건	동탄면 산업계장	수원군 동탄면 산업계장이 대부받고 있던 동탄면 중리 소재 천곡산 국유림을 면에 양도한다는 내용임
30	국유임야 대부기간 연기원 허가의 건	경북 경산군 하양면 대곡동 일대 국유임야의 대부기간을 연기 요청함 김○○	
31	국유임야 차지권 양도원 허가의 건	경남 통영군 동부면 다대리 일대 국유임야 차지권을 양도함 만선기업주식회사	
32	국유임야 차지권 양도원 허가의 건	경기도 수원군 의왕면 청계리 일대 국유임야 차지권을 양도함 청계리산업계장 이○○	
33	국유임야 대부기간 연기 허가의 건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휴곡리 일대 국유임야의 대부기간을 연기 요청함 조선실업주식회사	
34	국유임야 차지권 양도원 허가의 건	경기도 수원군 매송면 호매실리 일대 국유임야 차지권을 양도함 매송면산업계장 이○○	
35	국유임야 차지권 양도원 허가의 건	전북 김제군 수류면 금성리 일대 국유임야 차지권을 양도함 이○○ 외 9명	
36	국유임야 대부기간 연기원 허가의 건	경북 경산군 하영면 사기동 일대 국유임야 대부기간을 연기 요청함 오○○	
37	국유임야 차지권 양도원 허가의 건	경남 동래군 서면 가야리 일대의	

순번	문서명	신청자	비고
		국유임야 차지권을 양도함 양○○ 외 2명	

위 문서 중에는 그 내용상 상당히 주목되는 것들이 있다. 9번의 <조림성공에 의한 국유임야양여 허가의 건>은 대부 계약을 순조로이 이행하여 소정의 조림을 성공리에 마친 자가 대부받은 임야를 계약에 따라 양여받은 건과 관련된 문서이다. 보통 이렇게 양여받은 경우를 '성공양여'라고 하는데, 조선총독부 임정 관련 기록물 가운데에는 '성공양여'의 경우만 별도의 기록물철로 묶어 놓았다. 9번의 문서가 이 기록물철에 혼입된 경위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문서 생산 당시의 분류 오류로 편철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0번에 '신청자'로 표기된 '조선귀족단 보식원'은 1910년대 당시 미츠이(三井), 동척(東拓)과 함께 3대 '조림대부를 받은 자'로 꼽힐 정도로 대부지를 많이 보유하던 단체로서 박영효가 귀족단 명의로 창설한 재단이다.

한편 29번에는 '산업계'라는 단체가 수원군 동탄면에 대부림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문서가 소개되어 있는데, '산업계'란 촌락 공유림을 관리하기 위해 일제가 만든 일종의 조합 조직이다. 조선총독부는 촌락 공유림을 면(面)유림으로 흡수하기 위해 1912년에 「부면재산정리규정(府面財産整理規程)」을 공포하여, ①촌락 공유재산은 일단 동리유재산으로 정리하도록 한 다음, ②이 재산을 면장의 지휘하에 동리장이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③군수 혹은 부윤의 허가를 받아 그 동리유재산을 동리장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때 동리는 자연 촌락이 아니라 모두 1914년 행정통폐합으로 만들어진 행정 동리였다. 특정 공유재산이 여러 촌락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등의 이유로 일개 행정 동리가 관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계 등의 조직이 이를 관리할 수 있었는데, 그 산업계의 계장은 모두 해당 지역 면장이었다. 산업계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면(面)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 자의적으로 기부할 수 있었는데, <표 13>의 29번 문서는 그러한 정황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향후 이와 관련된 연구에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포함하여 차지권 양도, 대부기간 연기, 대부권 반환과 관련된 내용의 기록물철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4>와 같다.

<표 14> 차지권 양도, 대부기간 연기, 대부권 반환 관련 기록물철 및 주요 내용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특기 사항
CJA0010275	금곡사건(金谷事件)	1913	경기도 양주군 금촌면 금곡리 일대의 홍릉 이장 예정지로 지정된 구역 내에 존재하는 대부림을 반환하도록 명령하는 내용의 문서.
CJA0010345	대부지 반환관계	1915	평남 강서군과 충북 청주군 등지의 국유임야 대부지 반환 관련 문서. 대부받을 당시 작성한 조림계획서의 연차 조림계획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대부지 반환 명령을 내리고 있음
CJA0010346	차지권양도 허가	1915	전국 각지의 대부받은 임야를 제3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
CJA0010347	산림잡(山林雜)	1915	임야 대부허가 조건 추가, 임야 양여원 허가, 임야 매각원 허가 등에 관한 문서가 섞여 있다. 황해도 봉산군과 평산군 일대의 동양척식주식회사가 대부받은 임야 내의 화전 사용료 징수에 관한 문서도 있다.
CJA0010395	반환허가관계	1916	1915년 11월 17일에 경북 선산군 옥성면 봉곡동 석정산 소재 국유림을 반환하겠다는 옥성면 봉곡동 외 4개 동 주민들의 허가원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문서가 주로 수록되어 있음. 해당 임야는 옥성면 공동묘지로 동주민들이 대표자 덕촌동장을 내세워 양여허가를 받은 곳으로서 공동묘지설정계획 변경 등의 이유로 다시 반환하도록 한 것임. 이 문서 외에 본 기록물철의 31번 문서인 '웅천농림조합장 주○○의 청원-경남 창원군 웅읍면 서중리 소재 국유임야대부지 반환의 건'의 경우 1914년 웅천농림조합이라는 단체가 대부받은 임야가 면모범림용지로 설정된 까닭에 반환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림조합은 사실상 촌락공유지를 면 소유 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해 일제가 만든 편법단체로 이해됨
CJA0010477	차지권양도 허가	1918	전국 각지의 대부받은 임야를 제3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
CJA0010478	차지권양도 허가 및 기타관계	1918	전국 각지의 대부받은 임야를 제3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특기 사항
CJA0010479	대부지 반환 명령 관계	1918	대부지 반환 명령, 대부지 반환원 허가 등관련 내용
CJA0010518	차지권 양도 관계	1918~ 1919	국유임야 차지권 양도 관련 외에도 대부기간 연장, 대부권 반환 등 관련 문서도 섞여 있음
CJA0010546	국유임야 차지권 양여	1920	국유임야 대부권(차지권)의 양도 관련 문서
CJA0010557	임야 차지권 양도 허가	1921	
CJA0010595	대부지 반환·양도양여	1922	경북 경주군과 영일군 일대의 조선귀족임업조합 보식원(普植園) 이○○의 양도 허가 관련 문서가 포함되어 있음
CJA0010612		1923	국유임야 차지권 양도원 허가, 대부지 반환원 허가 관련 문서들이 섞여 있음
CJA0010625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서류	1924	함경, 경상, 강원도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및 대부원 허가 관련 문서
CJA0010627	차지권 양도 허가	1924	국유임야 차지권 양도원 및 대부원 허가 관련 문서
CJA0010635	국유임야 양여 허가	1924	국유임야 대부원 및 대부기간 연기원 허가 등 문서도 함께 편철되어 있음
CJA0010637	국유임야 보관환 기타서류	1924	보관환 관련 문서 외에도 임야대부원, 대부기간 연기원 허가 등 문서도 섞여 있음
CJA0010693	국유임야 대부기간 연기	1926	경상, 함경도 일대의 임야 대부기간 연기 허가 관련 등의 문서
CJA0010694	국유임야 차지권 양도	1926	대부분 경상도 일대의 임야 차지권 양도원 허가 관련 문서
CJA0010695	국유임야 대부 관계 서류	1926	각 지역의 국유임야 대부지 면적 및 대부료 경정, 대부기간 연장 등 관련 문서
CJA0010714	국유임야 대부지 반환	1927	대부기간 연기 허가 등 관련 문서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특기 사항
CJA0010729	국유임야 대부 기타서류	1927	대부기간 연기 및 매각, 차지권 양도 허가 등 관련 문서
CJA0010730	국유임야 차지권 양도서류	1927	차지권 양도원 및 대부원 허가 관련 문서
CJA0010731		1927	
CJA0010772	국유임야 대부기간 연장	1928	대부기간 연기 및 차지권 양도 허가 관련 문서
CJA0010773		1928	
CJA0010774	국유임야 대부 기타서류	1928	각 지역의 국유임야 대부지 면적 및 대부료 경정, 대부기간 연장 등 관련 문서
CJA0010823	국유임야 대부기간 연기 기타서류	1929	대부기간 연기 및 차지권 양도 허가 관련 등 문서
CJA0010825	국유임야 대부 기타서류	1929	대부분이 대부기간 연기 허가 관련 문서이며 차지권 양도 허가 관련 문서도 섞여 있음
CJA0010834	국유임야 매각 기타잡건	1929	대부분이 대부기간 연기, 국유임야 반환, 도 지방비 모범림 경영 등의 관련 문서
CJA0010866	국유임야 대부 기타서류	1930	차지권 양도 및 대부기간 연기 허가 등 관련 문서
CJA0010867	국유임야 대부기간 연기 기타서류	1930	
CJA0010868	국유임야 대부 허가 관계	1930	평안도 일대의 대부원 허가 및 임산물 매각 허가 관련 문서
CJA0010915	국유임야 대부기간 연기 기타서류	1931	대부분이 대부기간 연기 허가 관련 문서
CJA0010935	국유임야 차지권 기타서류	1931	차지권 양도 및 대부기간 연기 허가 관련 문서
CJA0010995		1932	
CJA0010996		1932	차지권 양도 및 양여, 매각 등 허가 관련 문서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특기 사항
CJA0010998		1932	차지권 양도 및 대부기간 연기 허가 관련 문서
CJA0011000		1932	차지권 양도 및 매각 등 허가 관련 문서
CJA0011101	국유임야 차지권 양도 기타서류	1934	대부기간 연기 및 차지권 양도 등의 허가 관련 문서
CJA0011195	잡건서류	1934~1935	국유임야 조림대부지 반환 명령의 건, 고지봉삼림대부 취소에 관한 건 등으로서 대부 반환과 관련된 것이다.
CJA0011283	국유임야 대부 기타서류	1937	장진강수전주식회사의 대부기간 연기원 및 재단법인 금강산협회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 관련 문서가 편철되어 있음
CJA0011284		1937	장진강수전주식회사이 대부지 반환 명령 및 남선합동전기주식회사의 대부 허가 관련 문서가 들어 있음
CJA0011302		1937~1938	대부원 허가 및 공매처분 등에 관한 문서
CJA0011502	차지권 양도 금강산 관계	1940~1943	대부기간 연기 허가 관련 문서 외에도, 금강산 보승시설 구역 내 과업출원, 조선마그네샤공업주식회사의 차지권 양도 관련 문서 등
CJA0011510	국유임야 차지권 양도 서류	1933	대부기간 연기 및 차지권 양도 관련 문서
CJA0010514	국유임야 대부 기타서류	1938~1941	대부원 허가 및 차지권 양도 허가 관련 문서
CJA0011522	국유임야 대부 서류	1939~1941	국유임야 대부원, 매각원, 차지권 양도원 허가 관련 문서
CJA0011523		1943	대부기간 연장, 대부원 허가 관련과 함께 삼척개발주식회사의 태백산 내 대부지 반환 관련 문서도 편철
CJA0010555	국유임야 대부 기타서류	1939	대부원, 임산물 처분 관련 문서 외에도 장진강수전주식회사 대부지의 대부기간 연장, 조선임업개발주식회사 국유림 관련 문서
CJA0010566	잡건철	1934~	간이학교림, 무상양여 처분, 지목변환 관련 외에도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특기 사항
		1940	국유임야 대부 처분(전주부의 사직단 소재지) 관련 문서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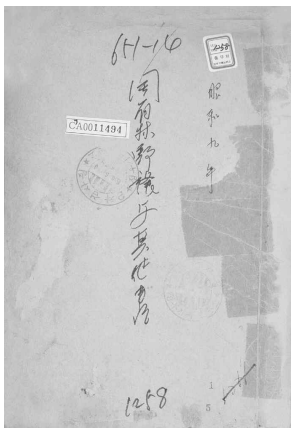
한편 조선총독부 임정 관련 기록물에는 이상 소개한 대부, 대부기간 연기, 대부권 반환, 차지권 양도 관련 기록물과 함께 양여 관련 문서들이 섞여서 하나의 기록물철을 형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의 자료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양여 관련 기록물과 함께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03

일제문서해제 (임정편)

국유임야 양여 관련 기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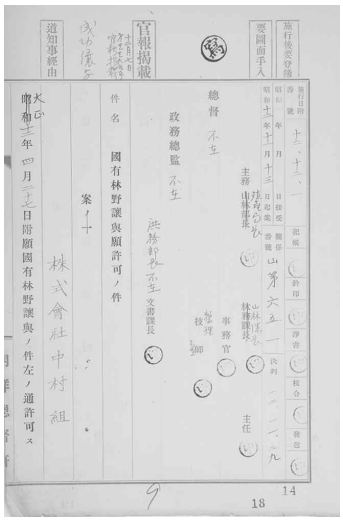
1) 관련 기록물



국유임야 양여 기타서류
(國有林野讓與其他書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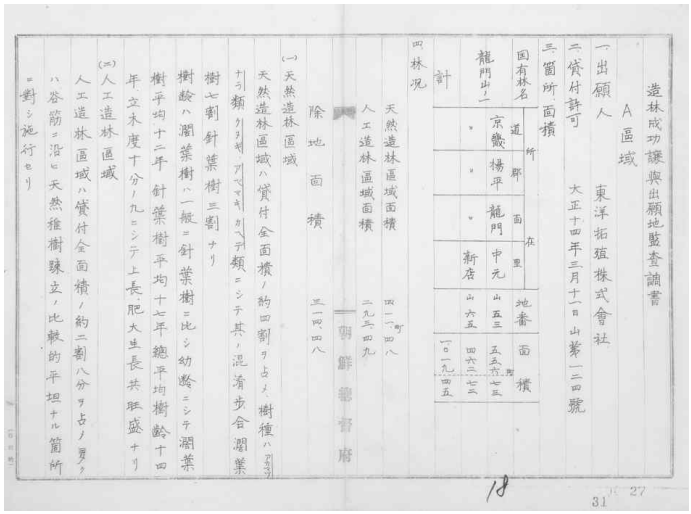
- 생산연도 1937년
- 생산기관 총독부 농림국
- 관리번호 CJA0011494
- M/F 1310091-5688
- 총페이지 560면

'성공양여(成功讓與)'란 1911년에 공포된 「삼림령」 관련 조항에 따라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그 대부임야에서 계약시에 작성한 조림계획서대로 조림을 시행, 성공한 경우에 그 소유권을 양여받은 것이다. 1912년에 발표된 「조림사업 성적 인정에 관한 건」에 의하면, 평균 입목도 7/10이상, 천연조림 구역일 경우 임령(林齡) 8년 이상, 인공조림 구역일 경우 식재(植材) 후 2년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는 조림에 성공으로 인정받아 해당 대부의 소유권을 양여받을 자격이 있었다.



<그림 17> ≪국유임야양여기타서류≫(CJA0011494)에 수록된 <국유임야양여원허가의 건>

이 기록물철에는 각 문서건 마다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의 건>이라는 농림국 생산 문서와 국유토지 양여 통지서, 양여원(讓與願) 제출자의 대부임야 조림 상황 조사 결과를 담은 '조림성공양여출원지감사조서(造林成功讓與出願地監査調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양여 통지서'는 국유토지 양여 통지서를 양여신청자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류이며, 조림성공양여출원지감사조서는 「조림사업 성적 인정에 관한 건」에 규정된 '성공양여'의 표준에 도달했는지의 여부를 관계 당국자가 실제로 답사, 조사한 결과를 담은



<그림 18> ≪국유임야양여기타서류≫(CJA0011494)의 <국유임야양여원 허가의 건>에 부속된 '조림성공양여출원지감사조서'

자료이다. 이 조서에는 양여 대상지의 임상, 식재된 나무 수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한편 이 기록물철에는 동양척식회사, 카다 나오지(賀田直治), 주식회사 나카무라 구미(中村組)가 각각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중원리, 전남 장흥군 유치면 신월리, 경기도 포천군 창수면 고소성리 소재 국유임야 대부지를 대상으로 제출한 양여 신청서와 그 처리 관련 자료가 편철되어 있어 유력 일본인 자본가와 동양척식회사의 임야 확보 과정에 관한 연구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록물철 외에도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는 양여 관련 기록물철은 다수에 달하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의 <표 15>와 같다.

<표 15> 국유임야 양여 관련 기록과 주요 내용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특기 사항
CJA0010243	양여허가	1911	동래보통학교 식수비림 양여허가, 진주보통학교 기본재산 식수비림 양여허가 관련 서류 등 각지 보통학교 기본재산를 조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양여한 문서들이 수록되어 있다.
CJA0010244		1912	전국 각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관련 문서이다.
CJA0010245	양여	1912	국유 산야 및 임야의 양여원 허가 관련과 평안남도 일대의 보통학교 아동식수에 대비한 국유임야 양여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특기 사항
			허가 관련 문서이다.
CJA0010246	양여허가	1912	전국 각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관련 문서이다.
CJA0010265		1913	1908년「삼림법」규정에 따른 지적신고를 하지 않아 국유림이 된 곳 중 영년 금양 기준에 충족한 곳을 선별하여 양여원에 대해 이를 허가한다는 내용의 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CJA0010266		1913	1908년「삼림법」시행 당시에 지적 신고를 태만히 하여 국유로 귀속된 것으로 '영년 금양의 실적'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므로 양여를 허가한다는 내용의 문서들이 수록되어 있다.
CJA0010267		1913	
CJA0010268		1913	
CJA0010269		1913	
CJA0010270		1913	
CJA0010271		1913	
CJA0010272		1913	
CJA0010273		1913	
CJA0010284		1913	
CJA0010308	임야양여 허가 경기	1914	경기도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와 관련된 문서(1월~5월) 이다.
CJA0010309	임야양여 허가 충남	1914	충청남도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와 관련된 문서이다.
CJA0010310	임야양여 허가 경북	1914	경상북도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와 관련된 문서이다.
CJA0010311	임야양여 허가 경남도	1914	경상남도 일대의 국유임야와 삼림의 양여원 허가 처리와 관련된 문서(7월~10월)
CJA0010312	임야양여 허가 함남	1914	함경남도 일대의 국유임야와 삼림의 양여원 허가 처리와 관련된 문서
CJA0010313		1914	함경남도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와 관련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특기 사항
			된 문서
CJA0010349	양여허가 경기도	1915	경기도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와 관련된 문서
CJA0010350	양여허가 충남	1915	충청남도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와 관련된 문서
CJA0010351	양여허가 경남	1915	경상남도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와 관련된 문서
CJA0010352	양여허가 함남	1915	함경남도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와 관련된 문서
CJA0010353	양여허가 함북	1915	함경북도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와 관련된 문서
CJA0010383	대부허가 각도	1915	충북, 평남북, 경기, 강원, 전북, 함북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 처리와 관련된 문서
CJA0010385	양여허가 충청북도	1915	충청북도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와 관련된 문서
CJA0010386	양여허가 충청남도4	1915	충청남도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와 관련된 문서
CJA0010387	양여허가 경상남도	1915	경상남도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와 관련된 문서
CJA0010388	양여허가 황해도	1915	황해도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와 관련된 문서
CJA0010390	양여허가 강원도	1916	강원도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와 관련된 문서
CJA0010391	양여허가 함경북도	1916	함경북도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와 관련된 문서
CJA0010428	양여허가 평북	1917	평안북도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와 관련된 문서
CJA0010429	양여허가 강원도	1917	강원도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와 관련된 문서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특기 사항
CJA0010432	양여허가 전남	1917	전라남도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와 관련된 문서
CJA0010434	양여허가 경북	1917	경상북도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와 관련된 문서
CJA0010435	양여허가 황해도	1917	황해도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와 관련된 문서
CJA0010471	양여허가 경기도	1918	경기도, 강원도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및 임산물 매각원 처리와 관련된 문서
CJA0010473	양여허가 전라남북도	1918	전라남북도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와 관련된 문서
CJA0010474	양여허가 평안남북도	1918	평안남북도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와 관련된 문서
CJA0010475	양여허가	1918	평남 일대의 서선조림합자회사의 국유림 양여원 및 임산물 매각원 허가 처리와 관련된 문서
CJA0010511	양여허가 강원도	1919	강원도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와 관련된 문서
CJA0010512	양여허가 평안북도 경기도	1919	평안북도와 경기도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와 관련된 문서
CJA0010513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1919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 및 양여통지 관련 문서
CJA0010514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기타잡철	1919	양여원허가 관련 서류 외에 차지권양도허가서류, 을종 요존예정 임야해제 및 대부원 허가의 건 등이 수록되어 있음
CJA0010543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1920	경상도, 함경도, 황해도 등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와 관련된 문서
CJA0010544	양여원 허가	1920	충청도, 강원도 황해도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와 관련된 문서
CJA0010545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전남북, 평남북, 함남북	1920	전라도, 평안도, 함경도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와 관련된 문서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특기 사항
CJA0010556	임야양여 허가	1921	경상, 함경, 전라, 경기, 황해, 강원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 관련 문서
CJA0010558	임야산물 양여허가	1921	여러 지역의 국유임야 및 임산물 양여원 허가 처리 관련 문서
CJA0010594	양여원 허가	1922	평남, 황해, 경북, 경기, 충남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 관련 문서
CJA0010640	국유임야 양여 기타서류	1924	강원도, 황해도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 관련 문서
CJA0010641			전라북도, 평안남북도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 관련 문서
CJA0010662	국유임야 양여 서류	1925	경남, 충남, 함북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 관련 문서
CJA0010663			함경도, 강원도, 경남도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 관련 문서
CJA0010664			경북, 강원, 함경도, 경기도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 관련 문서
CJA0010667	국유임야 양여 기타서류	1925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이외에도 차지권 양도 허가, 대부원 허가, 매각원 허가 처리 관련 문서도 함께 편철되어 있음
CJA0010684	국유임야 양여 서류	1926	충청, 전라도 등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 관련 문서
CJA0010685		1926	경상남도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 관련 문서
CJA0010686		1926	경상북도와 황해도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 관련 문서. 황해도 봉산군의 동양척식주식회사 관련 문서가 포함되어 있음
CJA0010687		1926	함경, 충남, 황해, 전남, 평남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 관련 문서
CJA0010688		1926	전라, 황해, 평남, 충남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 관련 문서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특기 사항
CJA0010719		1927	전라, 경기, 평안, 황해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 관련 문서
CJA0010720		1927	경남, 함경, 강원도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 관련 문서
CJA0010721	국유임야 양여 서류	1927	강원도, 경북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 관련 문서
CJA0010722	국유임야 양여 기타 서류	1927	함북, 평안도, 강원, 황해 등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 관련 문서
CJA0010723	국유임야 양여 서류	1927	함경, 황해, 경기, 강원, 충남, 경북. 평안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 관련 문서
CJA0010724	국유림 양여허가 서류	1927	성공양여 뿐만 아니라 조선인 학교를 운영하는 지방단체인 '학교비'에 임야를 무상으로 양여하는 내용의 문서들도 수록되어 있음
CJA0010752	국유임야 양여 서류	1934	황해, 평안, 경북, 강원, 함경도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 관련 문서
CJA0010725	국유임야 양여 서류	1927	함경남도 일대 동양척식주식회사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 관련 문서
CJA0010728		1927	여러 지역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 관련 문서
CJA0010775		1928	함경북도 경성군 일대의 스미토모합자회사, 경상북도 영덕군 일대의 미츠이합명회사 등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 관련 문서
CJA0010776		1928	경상도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 관련 문서. 경북 영덕군 일대의 스미토모합자회사 관련 문서가 함께 편철되어 있음
CJA0010777		1928	함경도, 강원도, 전남, 충남, 황해, 평북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 관련 문서. 함북 부령군 일대의 스미토모합자회사 관련 문서가 포함되어 있음
CJA0010778		1928	경성부, 함경도 등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특기 사항
			관련 문서. 강원도 이천군 일대의 스미토모합자회사 관련 문서가 포함되어 있음
CJA0010779		1928	전라, 충청, 경기도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 관련 문서
CJA0010780		1928	경상도, 황해도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 관련 문서
CJA0010781		1928	여러 지역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 관련 문서
CJA0010782		1928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관련 문서 이외에도 함남 신흥군 일대의 조선수전주식회사의 국유임야 매각원 허가 관련 문서도 포함되어 있음
CJA0010790	국유임야 양여 기타 서류	1928	경상, 충남, 전북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 관련 문서. 강원도 일대의 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 관련 문서도 포함되어 있음
CJA0010815	능원에 관한 서류	1928	능원, 묘로서 국유림에 편입된 곳을 이왕직에게 양여하는 관련 문서들이 수록되어 있음
CJA0010826	국유임야 양여 서류	1929	경기도, 충청도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 관련 문서
CJA0010827		1929	전남과 경북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 관련 문서. 스미토모합자회사와 미츠이합명회사 관련 문서 포함
CJA0010828		1929	경기, 전남, 황해, 경북, 함북 등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 관련 문서
CJA0010829		1929	경북, 강원, 황해, 평북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 관련 문서
CJA0010830		1929	황해, 평안도, 함북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 관련 문서. 강원도 춘천군과 화천군 일대의 주식회사 나타무라 구미 관련 문서 포함
CJA0010831		1929	각 지역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 관련 문서. 함남 문천군 일대의 동양척식주식회사 관련 문서 포함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특기 사항
CJA0010832		1929	함남 정평군, 영흥군, 평남 고원군 등지의 스미토모 합자회삭 관련 문서 포함
CJA0010882	국유임야 성공양여 서류	1930	황해도 신계군, 재령군, 해주군 일대의 미츠이합명회사 관련 문서 포함
CJA0010883		1930	황해도, 평안도, 강원도, 경북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 관련 문서
CJA0010884	국유임야 양여 서류	1930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이외에도 국유임야 차지권 양도원 허가 관련 문서도 함께 편철
CJA0010912	국유림 양여 기타서류	1930	경성부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 관련 문서
CJA0010920	국유임야 양여 서류	1931	강원도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 관련 문서. 삼양농림주식회사 관련 문서 포함
CJA0010921		1931	전라, 평안도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 관련 문서. 조선농림주식회사와 스미토모주식회사 관련 문서 포함
CJA0010922		1931	경상북도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 관련 문서
CJA0010923		1931	경상남도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 관련 문서
CJA0010924		1931	황해도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 관련 문서. 미츠이합명회사 관련 문서 포함
CJA0010925		1931	함경도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 관련 문서
CJA0010926		1931	경기, 충북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 관련 문서
CJA0010928		1931	황해, 평안, 경북, 강원, 함남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 관련 문서. 동양척식주식회사, 스미토모합자회사, 조선흥농주식회사 관련 문서 포함
CJA0010929	국유임야 양여허가 서류	1931	함남, 강원, 경북, 평안, 충북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 관련 문서. 불이흥업주식회사, 조선흥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특기 사항
			농주식회사 관련 문서 포함
CJA0010932	국유임야 양여 기타 서류	1931	국유임야 매각원 허가 및 임야반환원 허가 관련 문서 등이 함께 편철되어 있음
CJA0010933			대부기간 연기 및 차지권 양도 허가 관련 등의 문서가 함께 편철되어 있음
CJA0010983	국유임야 양여 서류	1932	전국 여러 지역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 관련 문서. 선만개척주식회사, 삼양농림주식회사, 스미토모합자회사, 미츠이합명회사,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의 관련 문서가 포함
CJA0010984		1932	
CJA0010985		1932	
CJA0010986		1932	
CJA0010987		1932	
CJA0010988		1932	
CJA0011049		1932	
CJA0011050		1933	
CJA0011099		1933	
CJA0011100		1933	
CJA0011140	외국인출원 양여허가 처분서류	1934	특별연고삼림에 대한 양여원 허가 처리 관련 문서
CJA0011142	국유임야 양여 서류	1934~1935	전국 여러 지역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 관련 문서. 동양척식주식회사, 선만개척주식회사, 갑자부동산주식회사, 스미토모합자회사 등의 관련 문서가 포함되어 있음
CJA0011143		1935	
CJA0011144		1935	
CJA0011145		1935	
CJA0011146	양여허가 처분서류 전라북도	1934~1935	전북 지역 외에도 충북과 함남 지역의 특별연고삼림의 양여 허가 처리 관련 문서
CJA0011184	국유임야 양여 서류	1935	전국 여러 지역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 관련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특기 사항
			문서
CJA0011196		1936	
CJA0011197		1936	
CJA0011228	국유임야 양여 증빙서류	1936	충청, 전라, 경상 지역의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 관련 문서
CJA0011229		1936	조림성공으로 인정받아 대부림을 양여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명세서'라는 이름으로 정리되어 있음. 명세서에 등장한 인물은 황해도 지역의 조○○ 외 212명, 평남 32명, 평북 19명, 강원도 및 함남의 20여 명이었음. 그 외에도 학교림 면모범림, 공동묘지용 임야를 학교 및 면에 양여한 사례와 관련된 문서도 수록되어 있고, '국유임야 증감보고 및 계산서의 건'이라는 이름으로 당해연도의 국유임야 증감면적이 정리되어 있음
CJA0011232	국유임야 양여 허가 서류		평안도, 함경도 일대의 국유임야 양여 및 매각 처분 관련 문서
CJA0011242	국유임야 양여 서류	1937	전국 여러 지역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 관련 문서. 함북 종성군 일대의 북선식산주식회사, 전남 강진군 일대의 조선농림주식회사, 강원도 일대의 일동척식농림주식회사 관련 문서가 포함되어 있음
CJA0011303		1937	
CJA0011315		1938	
CJA0011316		1938	
CJA0011317	국유임야 양여 기타서류	1934	양여원 허가 외에도 매각원 허가 처리 관련 등의 문서
CJA0011358	국유임야 양여 서류	1934	전국 여러 지역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 관련 문서
CJA0011403	국유임야 양여 기타서류	1933	국유임야 및 차지권 양여원, 임목불하원 허가, 대부기간 연기원 처리 등 관련 문서
CJA0011492		1943	
CJA0011493	국유임야 양여 서류	1933	전국 여러 지역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 관련 문서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특기 사항
CJA0011494	국유임야 양여 기타서류	1937	국유임야 및 차지권 양도원 허가, 양여지 용도변경원 허가, 공매처분 등 관련 문서
CJA0011495		1936	
CJA0011503		1934	1943년 10월에 조림성공을 인정받아 소유권을 양여받은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면 덕산리 산54번지 일대를 장수면에 양여한 경우와 같이 대부 국유림을 기본재산 조성 목적으로 면에 양여한 유사 사례가 수록되어 있음
CJA0011509	국유임야 양여 서류	1933	전국 여러 지역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 관련 문서
CJA0011515		1942	
CJA0011516		1942	
CJA0011520		1942	연고림 벌채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진정서 등이 포함되어 있음
CJA0011525		1943	전국 여러 지역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처리 관련 문서. 함북 명천군 일대의 동양척식주식회사 관련 문서 포함되어 있음

<표 15>에 소개된 것 가운데 1912년에 생산된 《양여허가》(CJA0010244)를 사례로 들어 주목되는 문서를 소개하면, 먼저 <경남 창녕군 합산면 대동동 매산령 국유림의 양여 건>이 있다. 이 문서는 「삼림령」 제7조 및 제29조에 따라 해당 국유림의 연고자 이○○에게 해당 임야를 양여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원래 이 땅은 1908년에 시행된 「삼림법」 당시에 지적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국유림으로 편입된 땅으로 이후 '영년 금양의 사실'이 확인되어 무조건 해당 연고자가 양여받게 된 것이다.

'영년 금양'에 대해서는 앞의 '총론'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는데, '영년 금양지'라고 라함은 평균입목도 3/10 혹은 해당 임야 내 소재하는 수목의 평균 수령(樹齡)이 10년 이상에 달한 경우이다. '영년 금양지'는 1912년 조선총독부 훈령 제4호 「삼림산야 및 미간지 국유 사유 구분 표준」에 따라 사유지로 귀속되도록 하는 것이 조선총독부의 방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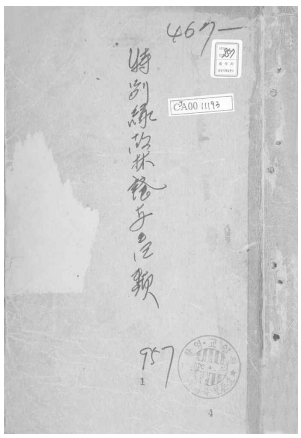
이 문서에는 연고자 이○○가 자신의 땅이 '영년 금양지'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를 번역,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청 원 서

위 산은 본인이 종래부터 소유해오던 산야로서(말미에 도면을 첨부함) 영년 금양을 해오던 바 법령을 부지(不知)한 고로 삼림법(森林法)에 의한 민유 지적의 신고를 행하지 아니하고 국유산야에 편입되었사오니 이 개소에 대하여 양여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삼림령시행규칙(森林令施行規則) 제2조에 의하여 도면을 첨부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 땅은 연고자가 조림대부를 신청하지 않은 곳이다. 그럼에도 위 청원서가 제출되자 당국자가 출장하여 현지를 답사하고, '조림성공 조서'를 작성한 후 이에 의거하여 '영년 금양의 사실'을 판명하였다. 이 조서에는 치수(稚樹)의 연령, 조림의 성공 정도, 조림실행방법, 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 문서는 일제가 조림대부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전에도 1908년 「삼림법」 제19조 지적신고 조항 미이행자에 대해 '영년 금양'의 기준을 들이대어 국유림을 양여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2) 관련 기록물



특별연고삼림처분서류
(特別緣故森林處分書類)

- 생산연도 1936년
- 생산기관 총독부 농림국
- 관리번호 CJA0011193
- M/F 1310091-5468
- 총페이지 661면

'특별연고삼림처분'이란 '특별양여'라고도 일컫는 것으로, '성공양여'의 경우와 달리 조림대부를 받지 않은 자가 연고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임야에 대해 내린 양여 처분이다. 이 처분은 조선임야조사사업(1917~1924년)이 끝난 직

후 내려진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에 의해 취해진 조치이다.

이 조치가 취해지기 직전인 1926년 7월까지 임야조사위원회는 조선임야조사사업의 사정 결과에 불복, 재심을 청구한 신청원을 접수하였는데, 그 건수는 11만 1,305건에 이르렀다. 이들 재심 청구건에 대해 한창 심의를 하던 중, 조선총독부는 "민심의 안정과 조림 촉진을 위해 일대 영단을 내려 연고림을 모조리 해당 연고자에게 무상 양여"한다고 발표하였다.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에 의하여 임야조사를 거쳐 임야조사부에 등재된 국유림 가운데 연고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2종 불요존림으로 구분된 국유림야는 '특별양여'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후 당국은 특별양여 신청 건수가 무려 110만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실제로 모두 1,174,454건, 면적 합계 3,416,433정보의 양여신청이 접수되었고, 그 중 약 90%가 양도 처분되었다.

이 기록물철은 당시에 접수된 '특별양여' 신청서에 대한 심사 결과, 불허가 판정을 받은 사례를 모아놓은 것이다.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특별양여' 관련 기록물의 상당수는 불허가 판정과 관련된 자료이다. 불허가 관련 자료들은 대개 불허가 통지서, 연고자의 재심 진정서, 최종심사결정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을 포함하여 '특별양여' 관련 기록물철을 나열하면 다음의 <표 16>과 같다.

<표 16> 특별양여 관련 기록과 주요 내용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주요 내용
CJA0011183	국유임야 양여서류	1935년	<특별연고삼림양여원불허가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들이 수록되어 있다. 각 문건은 먼저 총독부의 불허가 통지서와 '연고임야조서'로 이루어져 있다.
CJA0011221	특별연고림 양여서류	1935년	<특별연고삼림양여원 취하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으며, 이에는 함남 고원군 산곡면 원거리 산1번지의 연고자 김○○, 동면 동리 산1-2번지 연고자 한○○이 특별양여 신청서를 취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 연고자가 양여를 신청한 땅은 농경지로서 신청서에 의하면 토지조사사업 직전까지 결수연명부에 등재되어 납세한 사실이 있는 곳이다. 연고자가 신청을 취한 이유는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은데, 원래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주요 내용
			산전이었다가 토지조사 임야조사시에 임야에 분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CJA0011221	특별연고임야 양여서류	1935년	<특별연고삼림양여원 취하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다.
CJA0011519	국유임야 양여서류	1943년	<특별연고삼림양여원에 대한 탄원 및 진정서에 관한 건>과 <사실조사보고서>가 수록되어 있다.
CJA0011539	특별연고삼림 처분서류	1935년	강원도 춘천군 동산면 북방리 일대의 임야에 대한 <특별연고삼림양여원 불허가의 건>이 있는데, 불허가 판명의 이유는 '연고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CJA0011540	특별연고삼림 처분서류	1935년	함북 길주군 덕산면 도목동 산173번지에 대한 <특별연고삼림양여원 불허가의 건>이 있는데, 불허가 판명의 이유는 '연고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CJA0011541	양여 불허가철	1935년	함북 길주군 덕산면 도목동 일대 임야에 대한 <특별연고삼림양여원 불허가의 건>이 수록되어 있다.
CJA0011542	특별연고삼림 처분서류	1934년	함북 부령군 부령면 최형동 일대 임야에 대한 <특별연고삼림양여원 불허가의 건>이 수록되어 있다.
CJA0011543	특별연고삼림 처분서류철	1934년	여러 지역의 <특별연고삼림양여원 불허가의 건>이 수록되어 있다.
CJA0011544	특별연고삼림 처분서류철	1934년	함남 삼수군 삼서면 김천포리 우○○ 외 6명이 제출한 건에 대한 <특별연고삼림양여원 불허가의 건>이 수록되어 있다.
CJA0011545	특별연고삼림 처분서류철	1934년	함남 갑산군 회린면 중흥상리 김○○이 제출한 건에 대한 <특별연고삼림양여원 불허가의 건>이 수록되어 있다.
CJA0011546	특별연고삼림 처분서류철	1934년	함남 정평군 고산면 신풍리 일대의 임야에 대한 <특별연고삼림양여원 불허가의 건>이 수록되어 있다.
CJA0011547	특별연고삼림 처분서류	1934년	함남 갑산군 회인면 직동리 일대 임야에 대한 <특별연고삼림양여원 불허가의 건>이 수록되어 있다.
CJA0011548	특별연고삼림 처분서류철	1934년	함남 갑산군 회린면 위계리 임야들에 대한 <특별연고삼림양여원 불허가의 건>이 수록되어 있다. 이 지역 임야는 경사도 30 이상의 화전지이며, '연고임야조서'에는 원래 주인이 없는 무주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주요 내용
			지라고 적혀 있다.
CJA0011549	특별연고삼림 처분서류철	1935년	함남 갑산군 회린면 동측리 일대 임야에 대한 <특별연고삼림 양여원 불허가의 건>이 수록되어 있다.
CJA0011550	특별연고삼림 처분서류	1935년	함남 갑산군 회린면 삼포리 일대 임야에 대한 <특별연고삼림 양여원 불허가의 건>이 수록되어 있다.
CJA0011551	특별연고삼림 처분서류	1935년	함남 갑산군 회린면 강초리 일대 임야에 대한 <특별연고삼림 양여원 불허가의 건>이 수록되어 있다.
CJA0011552	특별연고삼림 처분서류	1935년	함남 이원군 서면 원상리 일대 임야에 대한 <특별연고삼림 양여원 불허가의 건>이 수록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서면이 양여신청을 했다는 것인데, 아마 이 지방의 공용임지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며 실제로 '연고임야조서'에도 의하면 원상리 주민들이 입산했던 곳이라고 적혀 있다.
CJA0011553	특별연고삼림 처분서류	1935년	함남 정평군 고산면 풍서리 일대 임야에 대한 <특별연고삼림 양여원 불허가의 건>이 수록되어 있다.
CJA0011554	특별연고삼림 처분서류	1935년	미북장로회 조선선교회재단이 제출한 안동군 안동읍 법상동 산21번지 일대에 대한 양여신청을 거부하는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해당 임야는 선교회가 융희4년도 이후 점유, 관리한 것이 확실하지만 당시 이 임야는 거의 초생지이며, 그 후 선교회가 조림을 했다고 하지만 그 조림의 연차가 상세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양여가 거부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관련 연구에 주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CJA0010908	특별연고림 양여서류	1931년	경성부 현저동, 충남 천안군, 경북 문경군 일대의 특별연고림에 대한 양여원 허가 관련 문서
CJA0010909		1931년	충남 아산군, 대전군 일대의 특별연고삼림 양여 허가 및 불허가 관련과 전북·경북 일대의 특별연고삼림 양여원 처분 관련 문서이다.
CJA0010957		1931년	충남 부여군, 아산군 일대의 특별연고삼림 양여 허가 및 불허가 관련 문서이다.
CJA0010958		1931년	
CJA0010959		1931년	충북, 전북, 경북, 평남, 강원도 일대의 특별연고삼림 양여 허가 및 불허가 관련 문서이다.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주요 내용
CJA0010960		1931년	함경남도 풍산군 일대의 특별연고삼림 양여 허가 및 불허가 관련 문서이다.
CJA0010961		1931년	함경남도 풍산군과 문천군 일대의 특별연고삼림 양여 허가 및 불허가 관련 문서이다.
CJA0011032		1932년	황해도와 강원도 일대의 특별연고삼림 양여 허가 및 불허가 관련 문서이다.
CJA0011052		1933년	전라남북도와 경상북도 일대의 특별연고삼림 양여 허가 및 불허가 관련 문서이다.
CJA0011053		1933년	평안남도와 함경남북도 일대의 특별연고삼림 양여 허가 및 불허가 관련 문서이다.
CJA0011140	외국인출원 양여허가처분서류 함경남도	1934년	함경남도 이외에도 전라남북도와 평안남도 일대의 특별연고삼림 양여 허가 및 불허가 관련 문서이다.
CJA0011147	특별연고림 양여서류	1935년	전북, 강원, 황해도 일대의 특별연고삼림 양여 허가 및 불허가 관련 문서이다.
CJA0011148		1935년	평안남도 성천군 일대의 특별연고삼림 양여 허가 및 불허가 관련 문서이다.
CJA0011149	특별연고림 처분서류	1935년	함경남도 고원군 일대의 특별연고살림 특별연고삼림 양여 허가 관련 문서
CJA0011150	특별연고림 양여서류	1935년	함경남도 고원군, 홍원군, 갑산군 일대의 특별연고삼림 양여 허가 관련 문서이다.
CJA0011151	특별연고림 처분서류	1935년	함경북도 명천군, 길주군, 경원군 일대의 특별연고삼림 양여 허가 관련 문서이다.
CJA0011152	특별연고림 양여서류	1935년	경상북도 안동군 일대의 특별연고삼림 양여 허가 및 불허가 관련 문서이다.
CJA0011153		1935년	강원도 일대의 특별연고삼림 양여 허가 및 조사입회 관련 문서이다.
CJA0011193		1936년	강원도 춘천군 일대의 특별연고삼림 양여 허가 및 불허가 관련 문서이다.

<표 16>에 소개한 기록물철 가운데 《국유임야양여서류》(CJA0011183)에는 융희4년(1910년) 선교사 언더우드가 한국인 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250엔을 주고 산 임야에 대한 특별양여 신청건이 소개되어 있어 주목을 끈다. 이 문서에 의하면 출원자인 선교사 언더우드는"이 임야를 매입한 후 매년 조림을 하고 관리를 했으나 본인의 부주의로 지적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서 양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총독부 당국자는 인근 마을 주민들의 증언을 들었는데 그 분량이 매우 많은 편이다. 이에 의하면 주민들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매수했다는 소식은 들었으나 누구로부터 언제 샀는지는 몰랐던 듯 하며, 임야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어 지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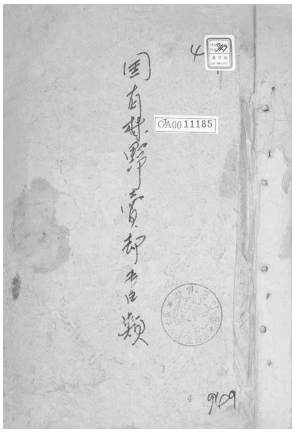
《국유임야양여서류》(CJA0011519)는 강원도 삼척군 상장면 황지리 일대 임야에 대한 특별양여 신청 불허가 관련 문서이다. 이에 의하면 1908년「삼림법」시행 전부터 이 임야를 점유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연고자가 있지만 지역주민의 증언 등에 비추어 관련 사실이 거짓이라고 판정되어 있다. 신청자가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사패문서기'를 제시하고 있어 논란이 일었으나 해당 '사패 문서'와 동시대에 발급된 다른 교서를 비교한 것을 바탕으로 불허가 판정을 내리고 있다. 당시에 연고사실을 판정하는 방식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 관련 연구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별연고림처분서류철≫(CJA0011544)와 ≪특별연고림처분서류≫(CJA0011553)의 사례는 모두 화전민들이 화전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 제출한 특별양여 신청을 불허가한 것이다. 화전민들이「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시행 당시에 양여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은 관련 연구에서 아직까지 언급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상당히 흥미를 끈다.

04

일제문서해제 (임정편)

매각 및 공매 관련 기록물



국유임야양여 기타서류 (國有林野讓與 其他書類)

- 생산연도 1936년
- 생산기관 총독부 농림국
- 관리번호 CJA0011185
- M/F 1310091-5463
- 총페이지 797면

1910년 8월 총독부가 작성한 「한국 임야 정리에 대한 의견서」에 의하면, 1908년 「삼림법」 제19조 조항에 따른 지적 신고 미행지 등을 향후 '국고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매각 혹은 대부할 계획임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일제는 실제로 이후 그와 같이 임정을 시행해 나갔다. 일제가 국유림을 민간에 양여, 대부 혹은 매각한 것은 국유림을 사유림화 한 후 그로부터 조합비, 대부료, 매각 대금을 거둬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기록물철에는 조선총독부가 임상(林相)이 뛰어난 국유림 혹은 미처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특정 임야의 연고자들이 매입을 원하는 경우 이를 허가 혹은 불허가한 문서가 수록되었다.

이 기록물철에 수록된 문건은 <국유임야 공매 처분에 관한 건>, <국유임야 처분에 관한 건>, <국유임야 매각원의 건>, <국유토지매각통지서>이다. <국유임야 공매 처분에 관한 건>은 경성부 누상동 산1-6번지 임야에 대해 공매 처분한 기록으로 원래 김○○에게 매각되었으나 대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게 매각한다는 내용이 상세히 언급되어 있다. 원 매수자인 김○○에게 대금 납입을 독촉하는 서류 등이 다수 포함되었다.

그 다음 문서인 <국유임야 처분에 관한 건>과 <국유임야 매각원의 건>은 각각 함북 경흥군 웅기읍 호서면 및 함북 경흥군 노서면 대암동 일대의 임야를 공매하는 건에 관련된 내용이 수록되었다. 이어 함북 길주군 길성면 길북동 일대 임야, 경성부 홍제정 소재 임야, 함북 종성군 풍곡면 운암동 일대 임야에 대한 매각통지서가 수록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매각 관련 기록물철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7>과 같다.

<표 17> 매각 관련 기록과 주요 내용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주요내용
CJA0010248	국유임야매각허가 기타서류	1912	조선귀족인 자작 윤덕영이 신청한 경기도 파주군 조리면 봉일천리 국유림(공릉·순릉·영릉 부속 국유림)으로서, 윤덕영이 분묘 설치 목적으로 매각을 신청한 서류들이다. 이 땅은 윤덕영 및 윤택영의 선대 및 순종 황후의 이장지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허가한다는 내용의 문서도 수록되었다.
CJA0010355		1915	미츠이합명회사에게 대부한 임야 관련 서류가 포함되었고,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신영동 일대 임야에 대한 매각 출원이 있었던 바 이 땅의 매각 가능 여부를 도지사에게 확인하는 내용이 남아 있다.
CJA0010392	국유임야매각허가서류	1916	일본인 야스다 오토키치(保田乙吉) 등이 제출한 매각원을 처리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CJA0010436	국유임야매각원허가서류	1916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산업계장 윤○○에게 돈암리 임야를 매각한 기록이 있다.
CJA0010430	국유임야양여허가서류	1917	김○○ 등이 신청한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전농리 일대 임야에 대한 매각 신청 문건으로서, 신청자의 선산이 원래부터 이 곳에 있어 연고자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양여를 받지 못하고, 결국 선산 수호 목적으로 매각을 신청하고, 당국이 허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CJA0010482	매각허가	1918	창덕궁의 능묘 보호를 위한 매각 요청, 미츠이광산주식회사의 광업용 매각 신청건 등이 수록되었다.
CJA0010483	국유임야매각서류	1918	조선무연탄주식회사, 미츠비시제철주식회사 등이 신청한 매각신청 서류가 수록되었다.
CJA0010484	매각허가	1918	홋카이도제철주식회사, 조선미츠비시제철주식회사, 조선무연탄주식회사의 매각신청서류가 수록되었다.
CJA0010517	국유임야매각원허가	1919	평안남도 강서군 일대의 조선무역탄광주식회사와 경상남도 함안군 남해척식주식회사의 매각원 허가 관련 문서 등이 수록되었다.
CJA0010548	국유임야매각허가원서류	1920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주요내용
CJA0010549	매각원 허가	1920	대부분 강원도 홍천군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과 매각원 허가 관련 문서이다.
CJA0010550	국유임야공매 전말서류	1920	경상북도 영일군 죽남·죽북면 가사동의 산 2,200정보를 다카다 마사오(高田政雄), 양○○ 등이 매수 입찰한 건에 대해 국유임야 조사원을 파견하여 이들의 자본력 등을 조사한 자료들이 수록되었다. 그 외에 해당 임야에 산재하는 입목의 매각 예정 가격을 조사한 기록도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제목과 같이 '전말'이라고 할 정도로 사건화된 것이 아니라 국유임야를 매각하기 위해 가격을 자세히 조사한 결과를 수록한 것이다.
CJA0010696	국유임야매각서류	1925	대부분 경기, 충남, 경북, 함남 일대의 국유임야 매각원 허가 관련 문서와 경북 상주군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 관련 문서이다.
CJA0010755		1927	경남, 충청, 평남 일대의 국유임야 매각원 허가 및 강원 일대의 국유임야 매각원, 대부원 허가 관련 문서이다.
CJA0010783		1928	황해도 안악군 일대의 국유임야 매각원 허가 관련 문서가 수록되었다.
CJA0010785	국유임야공매처분에 관한 철	1928	변산국유림 공매처분에 관한 건이 수록되었다.
CJA0010786		1928	동양척식회사, 스미토모(住友)합자 등이 제출한 매도신청 처리 관련 문서들이 수록되었다.
CJA0010787	황룡산국유림공매처분에 관한 철	1928	함남 안변군에 소재한 황룡산국유림을 매수하기 원하는 노무라(野村) 임업주식회사의 매도신청건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문서들이 수록되었다.
CJA0010877	국유임야매각 기타서류	1930	국유임야 매각원 허가 및 함경북도 일대의 국유산야 대부원 관련 문서이다.
CJA0010878	국유림매각 기타서류	1930	경성부, 경기, 평남 일대의 국유임야 매각원 허가 및 공매 처분 등에 관한 문서이다.
CJA0010879	국유임야공매 처분서류	1930	경성부와 경기도 일대의 국유임야 처분 및 국유통지매각 통지 관련 문서이다.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주요내용
CJA0010880	국유임야공매 처분서류	1930	경기도 일대의 국유임야 처분 및 매각원 허가 관련 문서이다.
CJA0010881		1930	경기도 포천군, 가평군 일대의 국유임야 공매 처분 관련 문서가 대부분이다.
CJA0010990	국유임야매각서류	1932	경성부 일대의 국유임야 공매 처분 관련 문서이다.
CJA0010992	국유임야공매처분 서류	1932	경북 문경군과 충북 괴산군, 제천군 일대의 국유임야 공매 처분 관련 문서이다.
CJA0010993		1932	경북 문경군, 경기 포천군, 함북 온성군 일대의 국유임야 공매 처분 관련 문서이다.
CJA0010994	국유임야매각서류	1932	조선질소회사 등에 임야를 매각한 사례가 수록되었다.
CJA0010989	국유임야매각 및 임산물처분서류	1932	강원 일대의 국유임야 대부원 및 임산물 매각원 허가 관련 문서이다.
CJA0010991	국유임야매각서류	1932	충남 안면면에서 면 기본재산 조성을 위해 제출한 매각원이 수록되었다.
CJA0011054		1933	경기, 경북, 강원, 함북, 평남 일대의 국유임야 매각원 허가 및 처분 관련 문서이다.
CJA0011081		1933	함북 일대의 국유임야 공매, 불하, 매각원 처리 관련 문서이다.
CJA0011082		1928~ 1932	국유임야 매각원 및 대부원 허가 등 관련 문서이다.
CJA0011102		1934	국유임야 매각 허가 및 함북 일대의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의 국유 임야와 토지 교환 관련 문서이다.
CJA0011103		1933~ 1934	함경, 평안, 강원, 경기 일대의 국유 임야 매각 허가 관련 문서이다.
CJA0011154	국유임야공매	1935	함경과 강원 일대의 국유임야 매각통지서 및 공매처분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주요내용
	처분서류		관련 문서이다.
CJA0011155	국유임야공매 처분서류	1935	함경, 평안도 일대의 국유임야 공매 관련 문서이다.
CJA0011156	국유임야매각서류	1934~1935	함경, 평안도 일대의 국유토지 매각허가 및 통지 관련 문서이다.
CJA0011538		1935	소화10년 1월31일 임정 15호/평남 양덕군 양덕면 봉계리 산126-2번지 용흥리 산36번지 등을 평남도에 매각한 문서이다.
CJA0011194		1935	<농용 임지 설정을 위한 국유임야 처분에 관한 건>과 경흥군 나진읍 신안동 산77-2번지의 공매 관련 기록 등이 수록되었다.
CJA0011185	국유임야매각원 허가서류	1936	국유임야 공매 처분, 국유임야 처분, 북 길주군과 종선군 일대 임야에 대한 매각통지서가 수록되었다.
CJA0011212	국유임야매각 및 조사에 관한 건	1936	<군용지 경계 실측에 관한 건> 등이 수록되었다. 본 문서는 경기도 고양군 한지면 이태원리 산1번지 군용지를 육군에 보관환 조치하고, 그 경계를 재조사한 후 불요존림경계표식을 이동하는 건에 관한 것이다. 이 외에 함북 경흥군 소재 임야에 대해 홍○○이 제출한 매각신청서에 대해 요존임야라는 이유로 거부 처리한 문서도 남아 있다.
CJA0011241	국유임야매각서류	1935~1936	평북 강계군 외귀면 건상동 산104번지를 대금 713원에 외귀면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기록이 있다.
CJA0011455		1934	강원항만매축주식회사, 사단법인평북산림회 등이 제출한 매각 신청과 관련된 문서들이다.
CJA001152	요존해제 및 매각관계서류	1936	경기도 양평군 갈전면 오빈리 외 5개면 24개리에 소재하는 요존국유림에 대한 지정 해제와 매각 관련 문서들이 수록되었다. 그 외 불요존 임야 매각과 관련하여 1936년 9월 8일에 발송된 '임정 을 814호' 문서와 같이 농림국장이 경기도지사에게 불요존 매각과 관련된 절차를 의뢰한 내용도 수록되었다. 이에 의하면 농림국장은 경기도지사에게 양평군 소재 불요존 임야 가격 조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주요내용
			사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였다.
CJA0011579	국유임야매각 관계서류	1936	경성 청운동 산1-1번지 국유림 매각 신청대해 도립상업학교 부지의 경내와 해당 임야가 연접하였기 때문에 불허가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CJA0011243	국유임야매각서류	1937	<성천군 소재 국유임야 매각원 불허가 및 대부 처분에 관한 건> 등이 남아 있다.
CJA0011244		1937	<요존 해제 및 국유임야 매각 불허가의 건>이라는 문서 등이 수록되었다. 경흥군 상하면 농경동 154번 을종 요존국유림에 대해 조선석탄주식회사가 제출한 매각원 처리 과정도 남아 있다.
CJA0011391	국유임야공매처분 및소속환	1937	
CJA0011239	국유임야매각서류	1937	강원도 춘천군 일대 임야의 매각 처분 관련 문서가 수록되었다.
CJA0011240		1937	
CJA0011388	국유임야매각 기타서류	1939	함남 풍산군 안수면의 임야를 장진강수전주식회사에 수력발전용 저수지 부지로 매각한 기록이 남아 있다.
CJA0011389		1940	평남 성천군 대구면 광산리 임야를 도모범림으로 매각한 기록이 남아 있다.
CJA0011390	국유임야매각서류	1940	전남 고흥군 점암면에 기본재산과 전주소년보육원재산 조성을 목적으로 임야를 매각한 기록이 남아 있다.
CJA0011532	국유임야요존해제 매각	1940	함북 부령군 부거면 청산동 소재 요존 국유임야의 요존지정 해제 및 매각 관련 서류들이 수록되었다. 1940년 11월 19일에 기안한 '임정87호' 문서에 의하면 부령군 부거면 소재 제1종 불요존 국유림 슬봉 국유림의 일부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주 요 내 용
			면적 4,121정보를 함북 도모범림으로 매각한 것으로 나온다.
CJA0011485	국유임야매각서류	1941	조선전력, 대동광업 등의 매각 신청 처리 건이다.
CJA0011526	요존해제매각	1943	함남 풍산군 안산면 양평리 소재 요존 임야의 지정 해제와 해당 임야를 조선수력전기주식회사에 매각하는 절차 관련 문서가 있어 주목된다. 1943년 5월 7일에 총독부는 함남 풍산군 안산면 양평리 산162번지 48정보의 땅을 481원에 조선수력전기회사에 매각하였는데, 용도는 조림으로 기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조선수력전기회사 소유 발전소의 사택 및 각종 공작물 부지로 매입한 것이다.

<표 17> 가운데 《국유임야매각서류》(CJA0011194)에 등장하는 <농용(農用) 임지(林地)>는 일제가 1933년에 「민유림지도방침대강(民有林指導方針大綱)」이라는 것을 발표하여 지피물(地被物)의 채취를 금지함에 따라 발생한 퇴비원료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가 1호당 1정보의 비율로 지정한 채초지이다. 농용림은 임야를 소유한 자의 경우는 소유지 내에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런데 임야를 소유하지 못한 농가의 경우에는(1936년 현재 조선 내 전체 농가의 56%가 임야를 소유하지 못했음) 농민 스스로 농용림을 구입하여야 했다.

임야를 가지지 못한 농민들은 대개 첫째 농민들로 하여금 저축계를 조직하여 그 저축금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방법, 둘째 금융조합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입하도록 하는 방법, 셋째 산을 대규모로 소유한 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임대하는 방법 등으로 농용림을 확보하였다.

《국유임야매각서류》에는 국유림을 농용림 조성 명목으로 농민들에게 매각하는 건과 관련된 문서가 남아 있는데, 이에 수록된 <농용 임지 설정을 위한 국유임야 처분에 관한 건>은 소화 10년 4월 12일에 기안한 문서로 조선총독부 농림국장이 각 도지사에게 내려 보낸 농용 임지 설정에 관한 방침을 잘 보여주는 자료로 의미가 있으므로

아래에서 일부 내용을 번역, 소개하도록 하겠다.

＜농용 임지 설정을 위한 국유임야 처분에 관한 건＞

농촌 지역의 농민을 위해 농용 임지를 설정하는 것은 특히 긴요한 바인데, 농용임지 조성을 위하여 국유림 가운데에서도 적당한 곳을 골라 「조선국유삼림미간지 및 삼림산물특별양여령」 제1조 1호 및 소화 9년 1월 23일 임정 제7호 통첩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매각 혹은 유료 대부토록 하는 방침을 택하도록 한다. 이 때 농용림 지정 대상 국유임야 가운데 면적이 작은 국유림은 될 수 있는 대로 매각 처분하고 면적이 넓은 곳은 매각 보다는 대부 조치하도록 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농용림지로 적합한 곳을 조사하도록 할 것이고 …… (중략) …… 이 작업은 경기도 이남 7개도 및 황해도에서 1도 평균 2개 군 도합 16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소화 10년도(1935)부터 본격 실시하도록 한다.

이 16개군에서 농용림 시설을 필요로 하는 농가 호수는 7만 400호이며, 이들 농가에 대하여 1호 평균 1정보의 비율로 합계 7만 4백 정보의 농용임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그 중 3만 2천 정보는 면유림을 개방하는 것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민유림을 임대하는 형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민유림에서 임대하는 농용임지는 면에서 경영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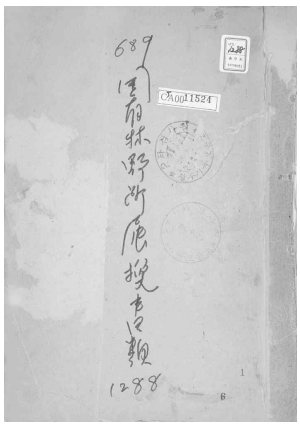
기타 3만 2천 정보에 대해서는 현재의 면이 소유한 공유림 가운데 적당한 개소를 골라 개방하되 차지료를 굳이 받지 않도록 할 것이며, 면이 새로 취득한 공유림 3만 8천 정보를 개방할 때에는 차지료로 1년에 1원 40전을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바, 그 중에 1원은 입산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40전은 경영비 보조로 해결한다. 이 공유림 이용은 일정한 통제 하에서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농용임지의 면적을 농가 1호당 1정보로 하는 이유는 농가 1호의 농용 임산물 소비량이 약 4천관이라고 할 때 임야 1정보에서 1천 4백관 내지 3천관의 농용임산물이 생산된다. 1호 평균 2정보를 충당하면 대체로 모자라지 않을 것이지만 1호당 2정보를 제공하게 된다면 막대한 경비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1호당 평균 1호당을 표준으로 시설하는 것으로 정한다. 입산료를 1정보당 1원으로 하는 이유는 본 시설에 충당하는 임야는 치수지 혹은 산생지로서 이들 임야에서 평균 500관의 입모(立毛)를 생산하고 있다. 입모 1관의 가격은 대략 6리이며 약 4원에 상당하는 입모를 생산하는 것이나 이 정도를 이용하면 산림은 황폐해질 것이다. 금후 5개년 간 약 반 정도의 양만 채취를 허용할 것이고, 그런 점에서 1원 정도로 낮춘 것이다.

05

일제문서해제 (임정편)

소속환 및 조체(組替) 관련 기록물



국유임야소속환서류
(國有林野所屬換書類)

- 생산연도 1942년
- 생산기관 총독부 농림국
- 관리번호 CJA0011524
- M/F 1310091-5712
- 총페이지 720면

임야조사사업과 대부, 양여 등의 절차를 거쳐 국유림으로 남게 된 임야는 조선총독부 농림국에서 관리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특정 국유림이 도로 부지로 바뀌거나 해군 용지 등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체신국, 해군 등이 관리하는 것이 상례였다. 이 기록물철에는 충남 천안군 환성면 일대 국유림 일대에서 진행되는 산금(産金) 사업 관련 송전선 시설을 위해 농림국에서 체신국으로 해당 임야를 소속 전환한다는 내용의 <국유산금 송전선로 시설 용지로 대부 중인 국유임야의 소속환에 관한 건>, 충남도지사가 관리하는 충남 보령군 청소면 정전리 소재 국유임야를 도로 용지로 편입하고 이를 농림국 소속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도로용지에 편입된 국유임야 소속환에 관한 건> 등이 수록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에는 《국유임야 소관전환 및 학교림양여 허가서류》(CJA0010277) 및 《토지관리환지건철》(CJA0010737)이 있다. 전자에는 전북 진산군 동일면 만불산 일대의 국유림 일부를 금산~대전간 도로공사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농상공부에서 전라북도로 소속을 바꾼다는 내용의 문서와 철도노선복구 공사용으로 농상공부에서 철도국으로 소관을 바꾸는 임야의 건도 수록되어 있다.

이 외에 《국유임야보관환조체서류》(CJA0010835)와 같이 '조체'와 관련된 문서들을 모아 놓은 기록물철도 있다. '조체(組替)'는 임야를 도로 부지, 기타 다른 용도로 전환할 때 지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기록물철로는 《국유임야조체관리환》(CJA0010999) 등이 있다. 여기에는 국유림을 도로부지로 '조체'하는 조치와 관련된

문서, 국유림 내 도로부지의 관장 부서를 산림부에서 내무국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이상 소개한 양여, 대부, 매각, 대부기간 연장, 차지권 양도, 소속환 관련 내용이 섞여 있는 기록물철도 다량 존재한다. 이를 정리하여 소개하면 <표 18>과 같다.

<표 18> 국유임야 소속환 및 조체 관련 기록과 주요 내용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주요 내용
CJA0010277	국유임야 소관환 및 학교림 양여허가서류	1913	전북 진산군 동일면 만불산 국유림 일부를 금산~대전간 도로공사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농상공부에서 전라북도로 소속을 바꾼다는 내용이 수록되었다.
CJA0011313	국유임야매각 및 대부서류 생산년도	1936~1938	국유임야대부 및 매각 허가, 공매처분 등의 문서이다.
CJA0011314	국유임야대부 및 기타서류	1938	국유임야 대부원 및 양야원 허가 관련 문서 외에도 배부기간 연, 차지권 양도원 허가 관련 문서도 있다.
CJA0010384	매각원·양여원 허가	1916	경기도 일대의 국유임야 매각원과 양여원 허가 관련 문서이다.
CJA0011406	국유임야조사서류	1940	<국유임야대부원 불허가의 건>, <국유임야분할 신고에 관한 건>, <국유재산 소속환에 관한 건> 등이다.
CJA0010515	국유대부 및 양여허가 기타서류	1919	대부원과 양여 신청 관련 서류가 섞여 있다.
CJA0011513	국유임야양여 기타서류	1919	<나진소재 육군용지 관리환의 건> 등이 있다. 본 철은 양여관계서류라는 제목이 붙어 있으나 실제로는 차지권 양도원이나 국유임야 관리전환 등의 내용이 훨씬 많다.
CJA0010599	국유임야대부 허가서류	1922	양여 및 대부 관련 문서들이다.
CJA0010603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서류	1923	<대부임야 사업계획 변경원의 건>,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의 건>, <학교연습림 설정에 관한 건> 등이 수록되었다.
CJA0010604	국유임야 양여허가 기타서류	1923	양여 및 대부 관련 서류이다.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주요 내용
CJA0010611	국유임야 양여허가 기타서류	1923	양여 및 대부 관련 서류이다.
CJA0010612	국유임야에 관한 잡건철	1923	국유임야 대부자 명의 변경원의 건, 국유임야 대부지 반환에 관한 건, 국유임야차지권 양도원 허가의 건 등이다.
CJA0010617	국유임야 양여대부 보관환 기타서류	1923	양여 및 대부, 보관전환 관련 문서이다.
CJA0010619	국유임야조체 및 양여허가서류	1923	양여 및 조체 관련 기록이다.
CJA0010620		1924	양여, 대부 관련 자료가 수록되었다.
CJA0010621	국유임야 대부매각 양여서류	1924	양여, 대부, 보관환 관련 자료가 수록되었다.
CJA0010622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서류	1924	양여와 대부 관련 문서가 수록되었다.
CJA0010623		1924	양여와 대부, 보안림 해제 관련 문서이다.
CJA0010624	국유임야 양여 및 매각서류	1924	미츠비시제철주식회사가 황해도 재령군 하성면 운기리 산에 대해 신청한 매각신청서가 수록되었으며, 그 외 여러 지역의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국유임야 조림성공양여원 허가, 국유임야 대부기간 연기 허가 관련 문서들이다.
CJA0010625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서류	1924	차지권 양도, 양여 관련 문서가 수록되었다.
CJA0010626		1924	<국유임야 양여원 의건>, <보안림 편입에 관한 건>, <국유임야 대부원허가의 건> 등이 수록되었다.
CJA0010627	국유임야 양도 및 양여허가서류	1924	<국유임야 차지권 양도 허가>, <대부국유임야 면적 및 대부료 경정의 건>, <국유임야 대부 허가의 건> 등이다.
CJA0010628	국유임야 성공양여 허가서류	1924	양여 및 대부 관련 서류가 수록되었다.
CJA0010629	국유임야 대부 및 양여	1924	<국유임야를 도로부지에 조체하는 건> 문서와 <조림성공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주요 내용
	허가서류		양여출원처리상황>이라는 표가 수록되었다.
CJA0010630	국유임야 양여대부 허가서류	1924	양여 및 대부 관련 서류가 수록되었다.
CJA0010631	국유임야 양여대부 매각서류	1924	<국유임야 양여 허가의 건>,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 및 불허가의 건>, <국유임야 매각에 관한 건> 등의 몇 개 문서가 수록되었다.
CJA0010632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서류	1924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의 건>, <국유임야 대부기간 연기 허가에 관한 건> 등의 문서이다.
CJA0010633		1924	<국유임야양여원 허가의 건>, <국유임야 대부기간 연기원>, <보안림 편입의 건> 등이 수록되었다.
CJA0010634	국유임야대부양여 허가서류	1924	'성공양여' 관련 기록 뿐만 아니라 <국유임야 대부원허가 및 불허가 및 임산물 매각서류의 건> 등의 문서도 있다.
CJA0010635		1924	실제로는 국유임야 대부기간 연기원, 국유임야 성공양여허가 등 관련 문서가 있다.
CJA0010636		1924	수록된 내용은 국유임야 산물 매각원 허가,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 국유임야조림 성공양여 등이다.
CJA0010638	국유임야양여허가 기타서류	1924	양여 관련 뿐만 아니라 대부 관련 문서도 있다.
CJA0010639	국유임야양여대부 허가서류	1924	양여 관련 뿐만 아니라 대부 관련 문서도 있다.
CJA0010660	국유임야양여 허가서류	1925	'국유임야 대부개소면적 및 대부료 경정의 건', '국유임야 대부기간 연기원 허가의 건', '국유임야 대부지 개소 면적 및 대부료', '국유임야 대부기간 연기 허가' 등의 문서가 있다.
CJA0010665	국유임야대부 및 양여허가기타관계서류	1925	양여 및 대부 관련 문서가 수록되었다.
CJA0010666	및	1925	양여 및 대부 관련 문서가 수록되었다.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주요 내용
	기타관계		
CJA0010668	국유임야대부 및 양여허가 기타관계	1925	양여 및 대부 관련, 차지권 양도 관련 문서가 수록되었다.
CJA0010669		1925	양여 및 대부 관련 문서가 수록되었다.
CJA0010670	국유임야매각 기타서류	1925	<국유임야 대부지 개소 면적 및 대부료 경정의 건>, <국유임야 반환원 허가의 건>, <국유임야 매각원 허가의 건> 등이 수록되었다.
CJA0010671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서류	1925	양여 및 대부, 보안림 편입 관련 문서가 수록되었다.
CJA0010672		1925	양여 및 대부 관련 문서가 수록되었다.
CJA0010681	국유임야 양여허가 기타서류	1925	<국유임야 대부지구 반환 명령>,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국유임야 공매의 건>, <양주군 소관 국유임야 일부 공매의 건> 등이 있다.
CJA0010682		1925	양여와 대부 관련 문서가 있다.
CJA0010689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서류	1925	조림성공 양여신청서류와 차지권 양도 관련, 대부 관련 서류가 있다.
CJA0010694	국유임야 대부연기원 허가서류	1925	<국유임야 차지권 양도원의 건>, <국유임야 차지권 담보 공여원의 건>, <대부료 경정의 건> 등이다.
CJA0010727	국유임야 양여연기 보안림 관계서류	1927	양여 및 국유림 대부기간 연기, 차지권 양도 관련 문서가 있다.
CJA0010729	국유임야대부 기타서류	1927	<보안림 편입에 관한 건>, <대부국유림 차지권 양도원 허가의 건> 등이 수록되었다.
CJA0010730	국유임야차지 기타관계서류	1927	<국유임야 차지권 양도원 허가의 건>,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의 건> 등이 수록되었다.
CJA0010737	토지관리환지건철	1927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주요 내용
CJA0010734	국유임야대부 매각서류	1927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국유임야 임산물 매각의 건> 등이 수록되었다.
CJA0010753	국유임야 양여원 기타관계서류	1927	<국유임야 대부원 불허가의 건>, <토지 보관환에 관한 건>, <국유임야 양여에 관한 건> 등이다.
CJA0010754	국유임야양여 매각서류	1927	국유토지불하통지서, <국유임야매각에 관한 건> 등이 수록되었다.
CJA0010784	국유임야매각허가 기타서류	1928	<국유임야 공매에 관한 건>, <국유임야 양여원의 건>, <불복신립 사건에 관한 건>, <요존임야 일부 해제 처분에 관한 건> 등이다.
CJA0010791	국유임야양여 기타서류	1928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의 건>, <요존예정임야 해제의 건> 등이 수록되었다.
CJA0010810	국유임야 대부 및 양여기타	1928	<국유임야를 도로부지로 조체하는 건>, <국유임야 대부기간 연기원 허가의 건>, <국유임야 양여원의 건>, <국유임야 매각원 허가의 건> 등이다.
CJA0010833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서류	1929	차지권 양도와 양여원 허가 서류가 있다.
CJA0010834	삼림조합사무실적기타 보고관계 동(同)연합회 예산에 관한 철	1929	<국유임야 대부기간 경정 및 반환의 건>, <대부지 반환의 건>, <국유임야 매각원의 건> 등이 수록되었다.
CJA0010835	국유임야 보관환 조체서류	1929	임야를 도로 부지, 기타 다른 용도로 전환할 때 지목을 변경하는 관련 문서가 수록되었다.
CJA0010869	국유임야양여 허가서류	1930	반환명령, 조체 및 보관전환의 건 관련 문건이 있다.
CJA0010918	국유임야대부 및 양여서류	1931	국유임야 양여원 및 대부원, 사용원 허가 관련 문서이다.
CJA0010919	국유임야대부 양여서류	1931	국유임야대부원 및 양여원 허가 관련 문서이다.
CJA0010999	국유임야조체보관환 관계서류	1932	임야를 도로 부지, 기타 다른 용도로 전환할 때 지목을 변경하는 관련 문서가 수록되었다.
CJA0011051	국유임야양여 기타서류	1931	양여 관련 문서와 함께 <국유임야 내 화전정리 실시에 관한 건>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주요 내용
CJA0010931	국유임야양여 및 반환 기타서류	1931	국유임야 양여원, 대부원, 반환원 허가 관련 문서이다.
CJA0011001	국유임야양여 기타서류	1932	국유임야 양여원, 대부원 허가 관련 및 대부지 반환 명령 관련 문서 등이 수록되었다.
CJA0010995	국유임야 차지권 기타서류	1932	차지권 양도, 대부기간 연장과 관련된 문서가 수록되었다.
CJA0011083	국유림불하 기타서류	1933	국유림 불하통지서, 국유림 대부료징수의 건과 관련된 문건 등이 수록되었다.
CJA0011085	국유임야조사에 관한 서류철	1933	보관환, 도로부지조체, 양여원 불허가, 요존해제 등 여러가지 성격의 문서가 섞여 있다.
CJA0011101	국유임야 차지권양도 기타서류	1934	국유임야 차지권, 양여원 및 기간 연기원 허가 관련 문서 등 수록되었다.
CJA0011575	잡건서류	1934	광주읍 소재 관유 재산의 주장환에 관한 건, 구현령 국유임야의 지적오류 정정에 관한 건, 남산정 2정목 51번 국유임야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조체하는 건 등이 수록되었다.
CJA0011224	국유임야요존해제에 관한 서류	1934	<향내봉 국유임야의 일부 요존 해제 및 도로부지로의 조체의 건> 등의 문서가 있다. 이 문서에 의하면 평북 후창군 후창면 장흥동 소재 후창영림서 관할 요존국유림 내 향내봉 국유림 일부가 도로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도로 부지를 필지 분할하고 요존 지정을 해제하여 도로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조치가 취해졌다. 또 임야대장등본과 평면도가 첨부되어 있는데, 요존국유림을 해제할 시에 구비되는 서류들이 어떠한 것들이 잘 보여주는 자료로 의미가 있다. 이 문서에 부속하여 1934년 6월 30일 농림국장이 발송한 '임정 을 제491호'에는 "임야필지 분할 수속을 지체없이 속히 하라"는 내용의 훈령과 뒤이어 관할 영림서장이 결과를 보고하는 문서 등이 이어져 있다.

위 기록물 가운데 《국유임야양여 기타서류》(CJA0011051)에는 '소화 6년(1931) 산(山) 비(秘) 제2호' 문서 <국유임야 내 화전정리 실시에 관한 건(산림부장이 함남 도지사

에게 발송한 통첩)>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주목된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유임야 내 화전 정리 실시에 관한 건 >

화전 정리의 어려움은 다년간 절감하는 바이다. 화전 정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화전 현장에 특설기관(지도원)을 배치하여 화전민 주·부업의 지도 장려 등에 관한 적절을 기하는 것이 긴요하다. 지난번 본 업무를 위해 설치한 화전조사위원회에서는 일반 실행방책에 대하여 방안을 마련했지만 현재 곧바로 이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

귀도는 조선 내 유수의 화전지대에 속하여 특히 피해가 증대하는 경향이 있다. 도내 요존치국유림 중 가장 급히 이 방안을 적용해야 할 지방에 대해서는 특히 도지방비의 협력을 받아 화전조사위원회에서 심의한 일반 방책을 근간으로 곧바로 시행하도록 하되 소화 6년(1931) 이후 대체로 다음 요령에 의하여 실행을 기도하라.

먼저 정리수용예정개소(지도구 2개소 이내)와 도지방비지출예상경비개산 등을 작성할 것 – 화전민의 수용지방 1개소를 1지도구로 하고 현장에 지도원 1명을 배치하여 지정한 구역 내에서의 경작자에 대하여 지도 장려의 실행에 당하도록 할 것. 단 1개 지도구의 지역 및 경작자의 호수는 1명의 지도원으로서 지도 장려의 철저한 실시를 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당히 결정할 것. 배치할 지도원은 국비기술고원으로서 충당하도록 할 것.

한편 그에 요하는 경비는 지도원 1명에 대하여 1개년 급료 480원, 여비 190원, 청비 24원, 잡비 6원, 합계 700원으로 하고 국유림조사처분비에서 배부할 것. 기타 경비는 도지방비에서 부담하도록 할 것.

국유림 내 화전 중 경사 15도 이하(단 계단식에 의한 경지의 경우에는 15도를 넘어도 무방함), 국토보안 및 영림상 지장이 없는 개소는 경작을 인정하고 기타는 폐경하도록 할 것,

화전 정리 대상과 허용 대상을 구분하는 화전정리구분조사는 본부에서 도 및 영림서원 입회를 구하여 시행한다. 화전 및 새로 공여할 국유임야 내 농경적지 및 부대지(주로 택지)는 도 지방비에 대해 무상으로 양여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도 지방비에서는 화전민 수용의 목적 달성 등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를 경작자에 부대지와 함께 무상으로 양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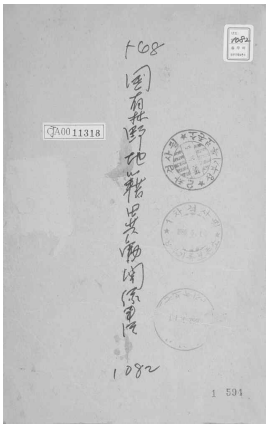
화전의 정리에 따라 필요해질 수용할 경작자에 대해서는 주·부업의 지도장려 등 각종시설의 수행이 필요하지만 종래와 같이 대면적의 토지를 보유하는 약탈농법을 파기하여 비료 사용의 방법에 의하여 필요한도의 면적을 숙전화하고 생산수익의 증가를 득하는 것을 본래 취지로 하여 먼저 퇴비 등 자급비료의 증산 및 시용에 대하여 극력 지도 및 장려를 가함과 동시에 한편으로 경사지에 대하여는 계단식에 의한 경지 정리 등 지력의 유지증진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여 점차 시설의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민유지를 겸경하는 경작자에 대해서는 해당 민유경작지의 지력 유지 증진 및 농법 개선 등에 관하여 똑같이 지도 장려하여 금후 새로이 국유임야 내에 화전 모경을 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06

일제문서해제 (임정편)

지적
이동 관계 기록물



국유임야지적이동관계서류
(國有林野地籍異動關係書類)

- 생산연도 1934년
- 생산기관 총독부 농림국
- 관리번호 CJA0011318
- M/F 1310091-5567
- 총페이지 293면

이 기록물철은 1933년도 국유임야 지적 관계 서류들이다. 임야조사사업 등으로 국유림에 편입된 임야 중 여러 가지 이유로 지목을 변경하거나 면적 등에 오류가 발견되어 정정하는 경우와 관련된 문서들이 편철되었다. 이에는 1933년 4월에 경남지사가 농림국장에게 발송한 조회 문서인 <국유임야의 지적 이동정리에 관한 건>과 부산부 소재 을종요존 임야의 일부 임야 분할 관련 문서 등이 있다. 전자는 경남 각지 국유림 인근 주민이 무단으로 침간하여 사실상 전답으로 변한 임야의 지목을 '임야'에서 '전답'으로 바꾸는 관련 문서이며, 후자는 해당 지역 내 국유 임야가 군사기지로 편입되는 등의 이유로 지목을 임야에서 토지로 변경한 후 해당 임야를 일부 지번 분할하여 군사기지로 속한 곳 외의 임야를 그대로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이 외 《국유임야조사 기타서류》(CJA0011285), 《국유림 측량관계》(CJA0011084), 《국유임야 반환양여 관계서류》(CJA0011131), 《토지측량 관계서류》(CJA0011132) 등에도 지적 이동 관계 사항이 있다.

《국유임야조사 기타서류》(CJA0011285)에는 함경남도 고원군 운곡면 관평리 및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대현리 소재 국유임야의 임야대장에 기재된 면적 등에 오류가 발견되어 정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국유림 측량관계》(CJA0011084)에도 임야 측량상의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정정하는 서류들이 있다.

《국유임야 반환양여 관계서류》(CJA0011131)와 《토지측량 관계서류》(CJA0011132)에는 토지 및 임야 측량을 위해 설치한 측량표의 설치 부지를 필지 분할하는 건에 관

한 문서가 있다. 이에 의하면 임야 측량을 위해 건설한 측량표는 원래 국유임야 내에 위치하는 것인데, 국유임야의 처분 및 대부 등에 따라 해당 임야가 사유지로 바뀔 수도 있는 바,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측량표 부지를 따로 필지 분할하여 국유지로 관리한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이 방침에 따라 각 도에서 측량표의 위치를 조사한 후 이를 필지 분할 조치한 문서들을 함께 편철하였다.

07

일제문서해제 (임정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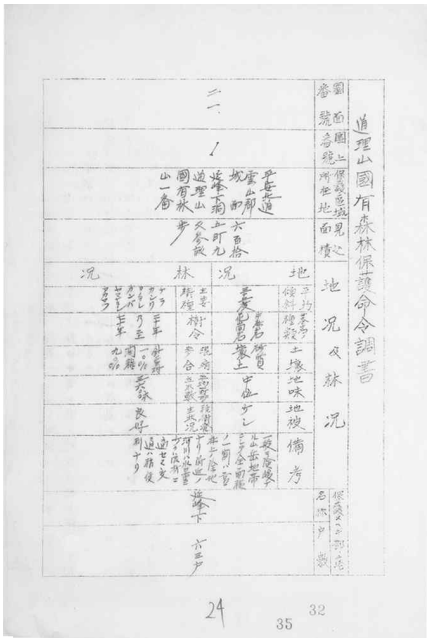
국유림보호명령 관계 기록물



국유림보호명령관계철
(國有林保護命令關係綴)

- 생산연도 1934년
- 생산기관 총독부 농림국
- 관리번호 CJA0011574
- M/F 1310091-5754
- 총페이지 1160면

이 기록물철은 1911년에 공포된 「삼림령」에 근거하여 조선총독이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마달리 · 화곡리 등에 발한 「국유림보호명령」 관련 문건을 담은 것이다. 「국유림보호명령」은 국유림에 무단으로 입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국유임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국유림 감시 등의 업무를 맡기고, 대신 주민들에게 삼림 산물을 일부 제한적으로 이용토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그림 19> ≪국유임야양여기타서류≫(CJA0011494)에 수록된 평안남도 운산군 일대 국유림 대상 국유림보호명령조서

「국유림보호명령」은 대개 매 건당 농림국(혹은 식산국이나 산림부)과 도지사 사이에 국유림보호 명령 대상 지역의 상황을 개략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주고 받은 조회서, 주민들에게 발한 통지문, 국유림보호명령조서, 임야도, 지시사항, 국유림보호명령 규약준칙 등으로 구성된다. 국유림보호 명령조서에는 해당 국유림의 소재지와 지번, 면적, 지황(地況) 및 임황(林況), 보호명령을 받은 자들로 조직되는 국유림보호조합의 명칭과 가입 호수가 기재되었다. 국유림보호조합의 조합장은 대개 면장이 맡는 것이 상례였다. 이 조합은 사실상 산불을 끈다거나, 입산 금지를 위해 소

수의 경비단을 운영하는 것 이외에는 역할이 많지 않았다.

국유림보호조합은 조선총독부가 만들어 둔 「국유림보호명령규약준칙」에 따라 운영되었는데, 이 기록물철에는 규약 자료의 전문이 수록되었다. 참고로 「국유림보호조약규약준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유림보호조합규약준칙 >

제1조 본 조합은 ○○리 국유림보호조합으로 칭하고 사무소를 ○○○에 둔다.

제2조 본 조합은 ○리 주민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직한다. 조합원이 ○리로부터 주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본 조합을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본 조합은 삼림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명령받은 동리 소재 국유림을 보호하고 애림사상의 함양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 조합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시행한다.

1. 화재, 침간, 도벌, 기타 임야의 피해 방제에 관한 사항
2. 임목의 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
3. 경계표식 기타의 시설물 보존에 관한 사항
4. 임업에 관한 강습및 강화회 개최
5. 위 각호 이외에 본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과 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항

제5조 조합원은 협심 노력하여 보호의 책임을 지고, 관 또는 조합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항은 이를 곧바로 시행하도록 한다.

제6조 조합원 보호 구역 내에 화재, 침간, 도벌 등의 피해와 경계표식 등의 시설물이 훼손되었을 경우 곧바로 조합장에게 신고한다.

조합장이 전항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곧바로 이 사실을 관할 삼림보호구에 보고한다. 이와 관련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발견자 또는 조합장은 응급 조치를 강구하고 그 내용을 신고한다.

제7조 보호에 임한 보수로서 양여받는 삼림산물은 조합장이 조합원의 보호 의무 성적을 참조하여 분배 수량과 채취시기 및 구역을 정하여 평의원회에 자문한 뒤 조합원으로 하여금 채취에 임하도록 한다.

제8조 관청의 허가를 받아 삼림무육(森林撫育:숲가꾸기)을 위해 수목 및 가지를 채벌할 때에는 조합장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공평하게 벌채에 종사하도록 하고, 그 벌채된 것

은 조합원에게 평등하게 분배한다.

제 9조 자가용에 사용할 산물의 양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조합장을 거쳐 출원한다.

제10조 조합원은 조합 업무 집행을 위하여 경비가 필요할 때에는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 조합에는 조합장 1인, 부조합장 1인, 평의원 약간명을 둔다. 역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12조 평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장이 이를 위촉한다. 조합장 및 부조합장은 평의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고 관할 영림서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13조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를 총괄한다. 부조합장은 조합장을 보좌하고 유고시에 직무를 대리한다. 평의원은 조합에 관한 중요한 사무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제14조 역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5조 조합장 및 부조합장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 사무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 본 조합에 고문 및 상담역을 둘 수 있다. 고문은 관할 삼림보호구 직원 중에서 조합장이 위촉하고 조합 업무에 관하여 조합장의 자문에 응한다. 상담역은 면장, 경찰관, 지방유력자 중에서 위촉하고 조합 업무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해 조합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7조 본 조합에는 조합 재정의 범위 내에서 다음 직원을 둘 수 있다. 이들의 임면에 대해서는 관할 삼림보호구 주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기, 감수

제18조 조합사무소에는 다음 책들을 비치한다.

조합원 명부, 역원명부, 재산대장, 출납부, 세입징수부, 회의의사록

제19조 회의는 총회와 평의원회의 두가지로 한다.

제20조 조합장은 매년 1회 총회를 소집하고 조합업무의 성적 및 수지 결산을 보고한다. 조합장은 임시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 평의원회는 필요에 따라 조합장이 소집한다. 평의원회에 자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수지예산, 결산
2. 조합비의 부과방법
3. 조합기본재산의 조성 관리 및 처분방법
4. 조합의 사업계획
5. 양여를 받은 삼림산물의 채취 및 분배방법

6. 기타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

제22조 총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은 조합장이 맡는다.

제23조 본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에 시작하고 이듬해 3월 31일에 종료한다.

제24조 본 조합의 경비는 조합비, 과태료,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5조 본 조합의 수지 예산은 평의원회에 자문한 뒤 관할 영림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26조 매년 결산잉여금은 익년도에 이월하고, 세입에 편입하거나 그 전부 및 일부를 기본재산에 편입할 수 있다.

제27조 본 조합이 현금, 기타 재산은 확실하고 유리한 밥법으로 조합장이 보관하다.

제28조 본 조합의 예산 경리 회계 및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서는 관할 영림서장의 감독을 받는다.

제29조 조합원으로 조합이 지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조합이 업무를 방해하고 기타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과태금을 징수한다.

제30조 본 규약의 변경은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관할 영림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이상의 규약에 따른 국유림 보호의 업무를 명령 건수 중심으로 살피면, 1932년에 483건 3,577,823정보였던 것이 1939년에는 761건에 4,189,532정보로 늘어났다. 국유림보호조합과 관련해서는 조합이 과연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지역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이것이 실제 조선인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실제로 국유림보호조합이 '산림녹화'에 도움이 되었는지의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국유림보호조합이 사실상의 '입회' 관행을 대신하는 역할을 했는지의 여부도 주목되는 연구 분야이다. '입회'와 유사한 우리나라 촌락 공유림 관리 관행을 무엇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입회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권리 관계인지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는지의 문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과 맞아떨어졌는지의 여부 등에서는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기록원에는 이 기록물철을 포함하여 국유림보호명령을 담은 자료가 상당수 있는데, 내용을 소개하면 <표 19>와 같다.

<표 19> 국유림 보호명령 관련 기록과 주요 내용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주요 내용
CJA0011187	국유림보호명령서류	1935	평북 삭주군, 경북 영양군·봉화군, 함북 경성군, 강원도 강릉군 등지의 국유림 보호 명령서가 수록되었다.
CJA0011188		1936	1936년에 함남 북청, 경기 고양, 함남 갑산, 강원도 등지 국유림보호명령서가 수록되었다. 1936년 1월에 작성된 <국유림보호명령 개폐에 관한 건>에 의하면 강원도 삼척군 소달면 신리, 구사리, 면하리, 대이리, 마차리, 점리, 안의리 등 모두 18개 촌락에 1929년 1월에 문서로 내려진 국유림 보호 명령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해당되는 산은 복두산, 대백산, 광배산이다.
CJA0011245		1937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신의주 옥상면 남사동 주민, 황해도 곡산군 주민, 강원도 김화군 주민, 단천군 수하면 황곡리주민 등에게 내린 국유임야보호명령 관계 문서가 수록되었다.
CJA0011312	국유임야보호명령서	1938	함흥 영림서 관내 지수산이라는 지역의 국유림이 요존에서 불요존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유림보호명령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었다.
CJA0011574	국유림보호명령관계철	1934	조선총독이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마달리, 화곡리 등에 발한 국유림보호명령 관련 문건을 모아놓았다.
CJA0010357	삼림보호명령서류	1915	함남 장진군 일대에 내린 국유삼림보호명령 관계 문서이다.
CJA0010476	보호명령관계	1918	충북 단양군, 함남 삼수군·신흥군, 경북 봉화군, 황해도 은율군, 평북 강계군·삭주군·자성군 일대 주민들에게 내려진 국유임야 보호명령 관련 문서이다.
CJA0010552	삼림보호명령서류	1918~1922	평북 자성군과 후창군 일대 주민에게 내려진 국유임야 삼림보호명령 관련 문서로, 삼림보호구 설치에 관한 문서 등도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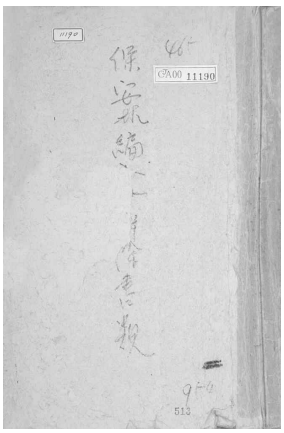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주요 내용
CJA0010562	보호명령	1921	함북 부령군과 경원군, 경성군 일대의 삼림보호명령 관계 문서와 경북 성주군 함북 성진군 일대는 보호명령을 해제한다는 문서가 함께 수록되었다.
CJA0010605	국유삼림보호명령에 관한 철 무산지창분	1923	함북 영림창의 무산지창 관할 지역에 실시된 국유삼림 보호명령 관계 문서이다.
CJA0010673	국유임야보호명령	1925	함남 삼수군·갑산군, 강원도 통천군, 함북 명천군, 황해도 곡산군, 함북 경성군 일대에 내려진 국유임야 보호명령 관련 문서이다.
CJA0010697	보호명령	1926	강원도 통천군, 함북 무산군, 함남 정평군·갑산군·삼수군·신흥군 일대에 내려진 국유임야 보호명령 관련 문서이다.
CJA0010733	국유임야보호명령서	1927	강원도 삼척군, 함북 경성군, 강원도 강릉군, 경북 영주군·예천군 일대에 내려진 국유임야 보호명령 관련 문서이다.
CJA0010812	국유임야보호명령관계	1928	충남 청양군, 평남 순천군, 함북 길주군 일대에 내려진 국유임야 보호명령 해제에 관한 문서이다.
CJA0010859	국유임야보호명령서류	1929	강원, 경북, 평남 지역에 내려진 국유임야 보호명령 관련 문서와 함남 지역에 내려진 국유삼림 보호명령 개폐 관련 문서이다.
CJA0010895		1930	강원도 양양군 일대에 내려진 국유임야 보호명령 관련 문서와 함북 무산영림서 관할 지역에 내려진 국유림보호명령 개폐 관련 문서 등이 수록되었다.
CJA0010968		1931	강원도, 함경도, 평안도 일대에 내려진 국유임야 보호명령 관련 문서이다.
CJA0011033	국유임야보호명령서류	1932	함경도, 강원도, 평안도 등지에 내려진 국유임야 보호명령, 국유삼림보호 명령개폐, 보호명령 해제 관련 문서이다.
CJA0011080		1933	
CJA0011157		1935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주요 내용
CJA0010650	구분조사에 관한 철	1924	국유림보호명령으로 구성되었다.
CJA0010394	국유임야양여지반환허가서류	1916	국유림보호명령 관계로, 함남 신흥군 가평면 능리 주민 등에게 발한 국유림보호 명령서류가 들어 있다.

08

일제문서해제 (임정편)

보안림 관계 기록물



보안림편입 및 해제서류
(保安林編入及解除書類)

- 생산연도 1935년
- 생산기관 총독부 농림국
- 관리번호 CJA0011190
- M/F 1310091-5466
- 총페이지 369면

이 기록물철에는 1935년 경기도 이천 일대 임야에 내려진 보안림 편입 명령 관련 문서가 수록되었다. 보안림은 1911년 공포된 「삼림령」 제1조에 규정된 제도로서 "국토의 보안, 위해의 방지, 수원의 함양, 항행의 목표, 공중의 위생, 어부(魚附) 또는 풍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조선 총독이 임야의 사유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안림 제도는 대한제국 시기에 공포된 「삼림법」에서 이미 창설된 바 있는데, 같은 법 제2조에"국토보안 또는 국유임야의 경영상 국유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림은 매각 양여 교환 또는 대부를 할 수 없다"고 하여 보안림과 비슷한 제도가 규정되어 있었다. 대한제국 시기에도 이 조항에 따라 토사붕괴 및 유출 방지, 낙석의 방지, 수원함양 및 공중 위생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접근과 산물 이용을 금지하였다.

보안림 편입 명령 관련 문서는 대개 보안림편입명령서 혹은 도지사의 보안림 편입 고시, 이에 따라 각 도장관(도지사)이 작성한 보안림편입조서와 보안림 편입지역 소유자 명세서, 편입 지역의 임야도 등으로 구성되었다. 보안림편입조서는 보안림으로 편입된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장으로 작성되었으며, 해당 임야의 소재지와 지번, 소유자, 면적, 보안림의 종류(토사억지 보안림, 수해방지 보안림, 어부 보안림 등), 지정 및 명령 사항(치수 보육 및 입산 금지 명령), 지황(地況), 임황(林況), 입회 관행의 유무, 편입을 요하는 사유 등이 기재되었다. 이 기록물철에 편철된 문서들도 대개 이러한 구성을 보이는데, <보안림 편입에 관한 건> (1935년 12월 19일, 경기도지사가 조선총독 앞

으로 보낸 보고)을 예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이 문서는 경기도 지사가 조선 총독의 명령에 따라 취한 보안림 편입 고시 작업을 완료한 후 이를 보고한 것으로, 경기도 이천군 소재 임야 중 토사붕괴 방지상 보안림 편입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곳이 있어 이를 당해연도 11월 27일 '경기도 고시 제144호'에 의하여 보안림으로 편입하고 보안림 각 필에 보안림편입조서를 작성하여 영림 방법을 지정하였다고 되어 있다. 해당 임야는 사방사업을 완료한 곳인데, 원래 사방사업을 시행한 후에는 해당 임야를 보안림으로 편입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문서에 의하면 사방지 내에서 잡초류를 채취할 때에는 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고, 임목의 보육 또는 맹아 보육을 위해 임목의 벌채를 명할 때는 지정된 시기와 방법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 보안림편입조서와 함께 보안림소유자명세서가 편철되어 있는데, 각 지번별 소유자의 주소·씨명·면적·지번 등이 정리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에는 이 외에도 보안림 편입 관련 기록물철이 상당수 소장되어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20>과 같다.

<표 20> 보안림 편입 관련 기록과 주요 내용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특기 사항
CJA0011190	보안림편입 및 해제서류	1935	1935년 경기도 일대 임야에 내려진 보안림 편입 명령 관련 문서가 수록되었다.
CJA0011191	보안림편입서류	1936	경북 지역의 보안림 편입조서가 대부분이다.
CJA0011192		1936	주로 경북, 보안림 해제명령, 해제지역 평면도 등 관련 서류이다.
CJA0011246		1937	충남 공주군 의당면 두만리, 경북 예천군 지보면 만화리 등의 보안림 편입 관련 문서들이다. 1937년 1월 공주군 의당면 두만리 산42번지 임야가 1936년에 시행된 사방공사 시행구역이어서 사업 실행 후 보안림으로 편입한다는 내용인데 사방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해당 사업구역 전체가 보안림 구역으로 편입되는 것이 상례였다. 이 문건에도 다른 문건과 동일하게 보안림으로 편입된 구역을 대상으로 한 명세서, 조사도, 사방사업 설계평면도를 첨부하여 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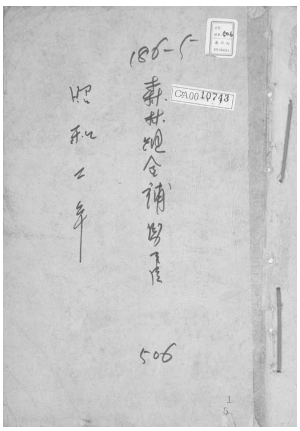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특기 사항
			림국장에게 사실을 보고한 관계 서류와 보안림 편입조사가 이어져 있다. 보안림 편입조서에는 임야의 소재지, 소유자, 보안림종류, 지정 또는 명령사항(치수 보육을 명령함), 지황, 임황, 종래의 관행, 편입되는 사유 등이 기재되었다.
CJA0011247	보안림편입관계서류	1936~1937	경북 상주군, 전남 담양군, 광산군, 경기도 여주군, 이천군 일대를 대상으로 내려진 보안림 편입 명령 관계 문서이다.
CJA0011248		1936~1937	충남 연기군 서면, 공주군 우성면, 청주군, 금산군 남일면, 경북 문경군 호서면·남면 등지에 내린 보안림 편입명령 문서이다.
CJA0011301		1937	충남 대덕군, 전북 정읍군 일대의 보안림 편입 조서 관련 문서와 평북 박천군, 함남 정평군, 함북 경흥군 일대의 보안림 해제 관련 문서가 수록되었다.
CJA0011306	보안림편입서류	1938	충북 도지사가 총독에게 해당 지역의 보안림 편입을 보고하는 문서와 경기도, 충남 일대의 보안림 해제에 관한 문서 등 이다.
CJA0011307	보안림편입 및 해제에 관한 서류	1937	소화 12년도 각 지역 보안림 편입 해제에 관한 서류이다. 해제는 도로공사, 농사시험장 설치 수리조합수원보호를 위한 보안림 편입 후 불량수리조합 정리계획에 따라 해제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루어진다.
CJA0011308	보안림편입관계서류	1937~1938	경북과 충남 일대의 보안림 편입조서 관련 문서 및 보안림 해제 관련 문서이다.
CJA0011309		1937~1938	함북과 전북 지역 일대의 보안림 편입 관련 문서로 전북 지역은 보안림 편입조서가 수록되어 있다.
CJA0011310		1937~1938	경북 일대의 보안림 편입조서를 수록하였다.
CJA0011311		1937~1938	경북 일대의 보안림 편입 관련 문서이다.
CJA0011393		1939	경성부 등지에서 개간을 위해 보안림을 해제 해달라는 신청서가 제출된 것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등의 문서가 편철되어 있다.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특기 사항
CJA0011394	보안림편입관계서류	1939	충북 지역의 보안림 편입조서이다.
CJA0011396		1939	충남 지역의 보안림 편입조서이다.
CJA0011397		1939	전남북 지역의 보안림 편입조서이다.
CJA0011398		1939	경남북 지역의 보안림 편입조서이다.
CJA0011399		1939	경북 지역의 보안림 편입조서이다.
CJA0011400		1939	경남 지역의 보안림 편입조서이다.
CJA0011401		1940	
CJA0011402		1940	경북 지역의 보안림 편입조서이다.
CJA0011408		1940	경남 지역의 보안림 편입조서이다.
CJA0011409		1940	강원도 지역의 보안림 편입 및 해제 관계 서류와 함남 지역 사방사업 실행 지역을 보안림으로 편입한다는 내용이다.
CJA0011410		1940	경기도 지역의 보안림 편입조서이다..
CJA0011450		1941	경북 지역의 보안림 편입조서이다.
CJA0011451		1941	경남 지역 보안림 편입 관계 자료이다.
CJA0011452		1941	충북 일대의 보안림 편입조서와 경기도 일대의 보안림 일부 해제에 관한 문서이다.
CJA0011578		1932~1934	강원도 양양군, 강릉군, 춘천군 일대의 보안림 편입 관련 문서와 경성부를 포함한 경기도 일대의 보안림 해제 관련 문서이다.

09

일제문서해제 (임정편)

삼림조합 보조 관련 기록물



삼림조합보조서류
(森林組合補助書類)

- 생산연도 1927년
- 생산기관 총독부 산림부
- 관리번호 CJA0010743
- M/F 1310091-4839
- 총페이지 771면

이 기록물철은 조선임야조사사업이 완료된 직후 각 군 단위로 만들어진 삼림조합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문서를 모아놓은 것이다. 조선총독부의 임정은 국유림과 민유림에 각기 다르게 적용되었는데, 민유림은 소유자들을 임야조사사업 등을 통해 확인하는 한편 대부제도를 통해 대부를 한 다음 그들 소유자와 임야대부를 받은 자(受貸付者)를 회원으로 하는 삼림조합을 만드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군 단위 삼림조합은 1931년에 이르러 전체 220개 군(郡)·도(島) 가운데 함경도 지역의 10개 군을 제외한 전 지역에 만들어졌는데,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거두어 이를 조림비 명목으로 지출하였다. 그러나 삼림조합이 지출한 '조림비'는 대개 군에서 고용한 삼림주사 등의 급여나 군청의 사무비로 전용되었다. 이 때문에 당시 상당수 조선인은 삼림조합을 군의 재정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조선총독부는 삼림조합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1927년 1월 「삼림조합보조규칙」을 제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매년 일정 액수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삼림조합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조합은 조합 규약과 조합원수·가입면적·조합비 징수 상황 등을 담은 현황보고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도지사를 경유, 조선총독부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렇게 지급된 보조금은 '우수한 기술원을 배치할 목적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1개 조합에 대하여 기수 1명에게 지급하는 1년치 급여의 1/2에 해당하는 액수에 지나지 않았다.

삼림조합 조합비는 전국을 다 합쳐서 1년에 약 280만원 가량에 달했지만 이 기록

물철의 보조비 관련 문서에 의하면 한 해 동안 전국 각 군의 삼림조합에 지출된 보조금은 5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이 기록물철에는 각 군 삼림조합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도지사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수록되어 있는데, 기술원 배치의 계획, 조림사업실시계획, 개량온돌구입계획, 민영사방사업 계획이 있을 시 실시 계획, 모범림 경영계획, 각종 선전 활동 계획 등이 적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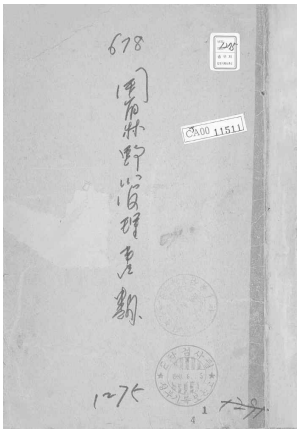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조선총독부 임정 관련 기록물에는 삼림조합 보조금 제도가 시행된 1927년부터 삼림조합이 폐지된 1932년까지 매년 각 도에서 수합하여 제출한 삼림조합 보조금 신청서류가 있다. 1927년에 생산된 삼림조합 보조 관련 기록물철은 《삼림조합보조서류》(CJA0010699, CJA0010700, CJA0010701, CJA0010702)이다. 이 외에 같은 해 만들어진 보조신청서가 모두 《삼림조합보조서류》(CJA0010739~CJA0010745)라는 이름으로 편철되어 있는데, 대개 도별로 정리되어 있다.

이후 연도의 자료 역시 모두 《삼림조합보조서류》(CJA0010792~CJA0010946)이며 각 도별로 정리되어 있다. 이외에도 1932년 충청북도 지역 삼림조합들에서 작성한 보조신청서(CJA0011537)가 있으며, 《삼림조합보조에 관한 서류》(CJA0011507)에는 경상북도 지역 삼림조합의 보조신청서가 편철되어 있다.

10

일제문서해제 (임정편)

삼림범죄 관련 기록물



국유임야관리서류
(國有林野管理書類)

- 생산연도 1937년
- 생산기관 총독부 농림국
- 관리번호 CJA0011511
- M/F 1310091-5700
- 총페이지 943면

「삼림령」 제20조 조항, 즉“삼림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따라 국유림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삼림산물을 불법 ‘절취’하다가 검거된 ‘삼림범죄’자들의 통계를 담은 자료이다. ‘삼림범죄’ 건수를 도벌, 개간, 방화, 실화, 기타 순서로 범죄건수를 정리하였는데, 이 외에도 각도별 삼림주사 배치 인원수, 훈계방면 통계, 즉결관서송치 건수, 검사국송치 건수, 처리 미(결)제, 총 사건 수 등이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다.

또 삼림주사 및 산업기수 1인당 ‘범죄인’ 검거 성적이라는 이름으로 삼림범죄 검거 결과가 담겨져 있다. 이러한 내용의 문서가 1937년까지 연도별로 편철되어 있다.

국유삼림 입산자에 대한 단속은 1911년에 발표된 「국유삼림산야보호규칙」에 따라 그 절차와 보호 방법이 규정되었다. 참고로 이 규칙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유삼림산야 보호규칙 >

제1조 지방장관은 국유삼림 및 산야를 상당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국유삼림 산야 중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곳은 삼림보호구를 설치하여 보호원을 배치한다.

제2조 삼림보호구에 다음과 같은 삼림보호원을 둔다.

산림감수 1인, 산림감수보 약간명

원래 이왕가의 분영(墳塋)에 부속된 삼림산야로서 그 구역으로 할 삼림보호에 대해서는 당분간 전항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이왕직 직원이 보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제3조 삼림보호원은 경성부 관내에 있어서는 조선 총독의 지휘를 받고, 기타 지방에 있어서

는 지방장관의 감독을 받아 삼림 산야 보호, 보육 및 정리에 종사한다.
제4조 지방장관은 삼림보호구(경성부 관내는 제외)에 있어서 삼림산야 보호, 보육의 상황 및 그에 대한 의견을 매년 6개월마다 연보로서 보고하여야 한다.

위 규칙에 따라 실제로 삼림보호구가 설치되었는데, 조선 국왕들의 능묘를 제외한 지역의 삼림보호구로는 경성 북부·동부·남부·서부, 가평, 안면도, 변산, 완도, 금정산(부산), 장산곶, 운산, 춘천, 삼근(울진군 서면 삼근동에 위치), 임원(강원도 삼척군 원덕면 소재), 화천, 양구, 성천 보호구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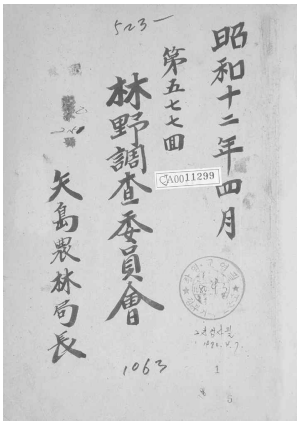
일제는 이상 소개한 보호구만으로 국유림 보호가 불완전하다고 판단하고, 1912년 「삼림산야 취체에 관한 건」을 발표하여 헌병 경찰이 관내 국유림에 대해 '범죄' 예방 업무를 맡도록 하였다. 이에 경무총감 아카이시 겐지로(明石元二郎)는 충북 2개소, 전북·경남·경북·황해도에 각 1개소, 강원도 2개소, 함남과 함북에 2개소의 산림보호감시소를 설치하였는데 이를 일명 '삼림경찰'이라고 한다. 이 산림보호감시소는 1926년 행정기관 통일 조치에 따라 산림감시소로 전환되어 산림부 산하로 편입되었다. 이 기록물철에 소개된 '삼림범죄'는 바로 이들에 의해 검거된 건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 외에도 《국유림보호관계서류》(CJA0010736)가 있다. 여기에는 1926년도 국유림보호 상황연보라는 이름의 범죄자 통계가 수록되었고, 처분 결과도 표로 정리되었다.

11

일제문서해제 (임정편)

임야조사사업 관련 기록물



임야조사위원회관계서류
(林野調査委員會關係書類)

- 생산연도 1937년
- 생산기관 총독부 농림국
- 관리번호 CJA0011299
- M/F 1310091-5551
- 총페이지 74면

조선임야조사사업이 종료된 후 수리된 임야불복 재심 신청서의 처리 상황이 수록된 기록물철로서 '소화12년 4월 작성 577회 임야조사위원회'라고 적힌 표지가 붙어 있다. <임야 재심 신립(申立) 사건에 관한 건>이라는 문서 하에 재심 신청인의 신청서가 부속되었는데, 일본인 세리자와 요네지로(芹澤米次郎)가 소유를 인정받은 임야에 대해 조선인 이○○이 1935년에 제출한 전라북도 정읍군 입암면 신금리 소재 임야의 재심 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비롯해 재심 신청에 대한 결정서가 붙어 있다. 참고로 위 신청인이 제출한 재심청구는 기각되었는데 주문(主文)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전라북도 정읍군 내장면 부전리 산11번지 임야의 일부는 원래 국유로서 타마루 요네스게(田丸米助)가 대정 10년(1921년) 1월 17일에 조선총독부로부터 대부허가를 받은 바 있는 임야로서 세리자와 요네지로(芹澤米次郎)가 대정 15년(1926) 4월 중에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경유하여 타마루 요네스게로부터 차지권을 양도를 받은 이래 조림 경영하여 소화 6년(1931) 8월 중 조림 성공 판명을 받아 양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서 사정 당시에는 전북 도지사가 사정한 바와 같이 국유였는데, 이후 양여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의 불복 신청에 대하여 임야조사위원회가 조사한 바 이○○은 본건 계쟁(係爭) 지역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조문기를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하략)

이상과 같은 형식의 결정서가 각 건마다 붙어 있는 바, 관련 사례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외에도 몇 건의 임야조사사업 관련 기록물철이 있는데, 이를 소개하면 <표 21>과 같다.

<표 21> 임야조사 관련 기록과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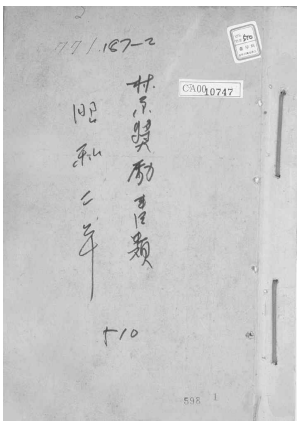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주요 내용
CJA0010563	국유대부허가서류	1921	<임야조사시행에 관한 건>, <임야조사 특별감독 실시에 관한 건>, <임야조사를 행한 토지의 번호 통지의 건>, <임야대장 가 제정정 및 기타 사항에 관한 건>, <임야조사에 관한 의의의 건>, <강계오류 정정에 관한 건> 등으로서 임야조사사업 시행 상 발생하는 실무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책 등이 담겨져 있다.
CJA0010642	임야조사종말보고서 강원도	1924	강원도 지역에서 시행한 임야조사사업의 시행토지 범위와 면적, 외업(측량 조사 등)의 계획, 사업 실행의 상황 및 분쟁 개소 상황, 심사 과정 상황, 임야대장작성 결과 등을 담았다. 임야조사사업의 전개 과정을 간단히 정리한 자료로서 관련 연구에 의미있는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CJA0010643	분쟁에 관한 서류 전라북도	1924	지역, 특히 변산국유림에 대한 분쟁지 통계(변산국유림에 대한 소유신고자가 있음에도 국유로 사정된 곳을 표로 정리한 것) 및 '분쟁지 조서 송부에 관한 건'(전북지사) 등의 문서와 이어서 '변산국유림 분쟁에 관한 건'이 수록되었다. 이에 의하면 산내면 마포리 산 87번지는 변산국유림의 일부로서 미간지 이용법에 의하여 전(田)으로 개간할 목적으로 1921년 8월 25일에 백○○에게 대부되었는데 백○○은 이를 근거로 해당 임야의 소유권 신고를 이행한 후 '미간지이용법'에 의한 대부지는 연고지로 취급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사유권을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촌락공유지에 대해 해당 지역 면장이 면유지로 사정해야 한다고 제기한 불복 신청관련 문서가 있어 주목된다.
CJA0010644	임야조사종말보고서 황해·평안남북도	1924	황해도, 평남, 평북 지역에서의 임야조사사업의 총괄보고 문서이다.
CJA0010645	분쟁에 관한 서류 경기도	1924	경기도 지역의 분쟁 신청자 명단이 수록되었으며, <임야조사에 관한 분쟁 처리의 건> 등의 문서가 담겨져 있다. 이 문서에는 '합자회사 대보 농림'에 대부 중인 파주군 외 11개 군의 국유임야 중 고양군 벽제면 벽제리 일부에 지역 주민들이 제출한 불복 신청과 관련된 분쟁지 관련 문서들이 부속되어 있다.
CJA0010646	임야조사종말보고서 경기·충청도·전북	1924	경기도, 충청도, 전북 지역의 임야조사사업 총괄보고 문서이다.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주요 내용
CJA0010647	임야조사종말보고서 전남·경상남북도	1924	전남, 경상도 지역에서의 임야조사사업 총괄보고 문서이다.
CJA0010648	분쟁에 관한 서류 경상북도	1924	경북 지역의 분쟁 신청자 명단이 수록되었으며, 주요 분쟁 건에 대한 조회문서가 담겨 있다.
CJA0010649	분쟁에 관한 서류 황해도	1924	황해도 지역의 분쟁 신청자 명단이 수록되었으며, 주요 분쟁 건에 대한 조회문서가 담겨 있다.
CJA0010813	불복신립의 건	1928	<국유임야에 대한 불복 신립 사건 재결의 건>이라는 이름으로 주요 불복 신청 건의 처리 결과가 나열되었다.

12

일제문서해제 (임정편)

조림 보조 관련 기록물



임업장려서류
(林業奬勵書類)

- 생산연도 1927년
- 생산기관 총독부 산림부
- 관리번호 CJA0010747
- M/F 1310091-4839
- 총페이지 178면

이 기록물철은 조선총독부가 각 도장관(도지사)가 관리하는 국유림 및 도유림 등에 대한 임야의 조림 비용을 총독부가 일부 보조한 건과 관련된 문서이다. 도유림 조림 보조비는 보통 각 도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염출하여 지출하는데, 총독부가 약간의 보조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총독부가 황폐 산야 복구에 소요되는 조림비를 따로 보조하였고,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함경남도의 수원 함양 조림 사업에도 별도로 조림 보조비를 지급하였다.

총독부는 민유림에 대해서도 특별한 경우 보조비를 지급하였는데, 민유림에 대한 조림 보조비는 주로 면 모범림, 학교림, 사찰림, 임상 개선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지급하였다. 민유림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조금 수납자가 '조림설계서'를 먼저 제출하여야 했는데, 이 기록물철에는 민유림 보조비 지급과 관련된 '조림설계서'가 편철되어 있다. 조림 보조비는 1925년에 29,380건 282,701원이 집행되었으며 이후 매년 약간의 오르내림을 보이다가 1939년 무렵에는 27,717건 409,633원에 달했다.

본 기록물에는 <소화 2년도 조림보조에 관한 건(충청북도 조림보조의 건)>, <소화 2년도 조림보조에 관한 건>, <소화 2년도 민유임야 개선계획 내시에 관한 건>, <조림보조성적 및 결산보고에 관한 건> 등이 수록되었다.

<소화 2년도 조림보조에 관한 건(충청북도 조림보조의 건)>은 충청북도 지사가 조림보조 절차와 관련하여 질의한 것에 대해 산림부장이 재무국장에게 조회한 문서이다. 이에 따르면 충청북도가 지출한 조림비에 대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통례이나 당해연도 충청북도의 재정이 극히 어려우므로 7월과 11월에 걸쳐 2회 분납 지원

하기로 되어 있는 보조금 전액은 7월에 지원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재무국장이 이를 확인하고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 액수는 모두 25,885원이었다.

<소화 2년도 조림보조에 관한 건>은 총독부에 조림 보조액을 신청할 시에 각 도에서 올려야 하는 문서의 형식을 설명한 것으로, 이에 의하면 기술원 급료 등이 지원 대상이었다. 본 문건에는 각도별 보조금이 표로 정리되어 있다.

<소화 2년도 민유임야 개선계획 내시에 관한 건>은 '민유림개선계획'이라는 이름으로 1927년도에 각 도에 지출한 조림보조비가 계산된 기록물이다. 이에 의하면 1927년 보조비는 사방사업비 70만원, 지방청직원 증치비 22만여원, 임업시험장경비 17만 3329원, 민유임야단속원 급여 8만 9,991원, 삼림조합보조 3만원, 삼림병충해구제예방비 보조 3만원 등이었다. 이 문서에는 <소화 2년도 사방사업 시행면적 및 공사비액조>라는 이름의 문서가 부속되었다.

<조림보조성적 및 결산보고에 관한 건>에는 1926년도에 지출된 조림보조액 32만 5천원에 대하여 각 도별로 조림보조의 지출처와 액수가 정리되었다. 이 외 조림보조 관련 기록물철을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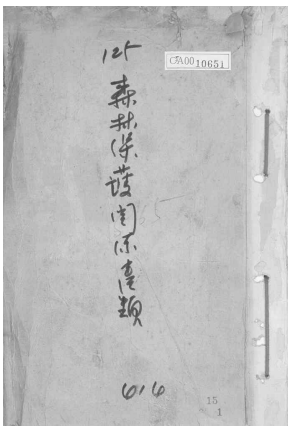
<표 22> 조림보조 관련 기록물철 제목과 주요 내용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주요 내용
CJA0010732	국유림보호관계서류	1927년	<대정 15년도(1926) 민유임야개선계획 내시에 관한 건>(각도에 지원하는 사방사업 조림보조비의 액수를 정리한 문서), <사단법인 조선산림회 설립허가의 건> 등이다.
CJA0010735	국유림보호명령서 및 해제서류	1927년	<소화 3년도(1928) 국비보조 신청에 관한 건>(국유림에 대한 도지방비의 지출-사방공사, 조림 등에 대한 보조금 하부 관련 문서), <삼림주사 배치에 관한 건> 등이다.
CJA0010746	임업장려관계서류	1927년	<조림보고표>, <사단법인 조선산림회 보조의 건>, <도지방비 모범임 사업실행표>, <삼림조합 보조신청에 관한 건> 등이다.
CJA0010788		1928년	조선총독부 제18회 기념식수 개황이 실려 있다.
CJA0010789		1928년	<소화 3년도(1928) 조림 보조에 관한 건> 등의 문서가 있다.

13

일제문서해제 (임정편)

화전 정리 관련 기록물



삼림보호관계서류
(森林保護關係書類)

- 생산연도 1924년
- 생산기관 총독부 식산국
- 관리번호 CJA0010651
- M/F 1310091~4598
- 총페이지 654면

이 기록물철에는 <삼림화재취체에 관한 건>, <임야보호예규>, <삼림령 실시에 관한 질의의 건>, <국유보안림에 관한 건>, <영년 금양의 인정에 관한 건>, <화전 정리에 관한 건>, <국유림 보호명령에 관한 건>, <국유삼림보호명령 대장 양식의 건>, <국유임산물 피해손해배상에 관한 건>, <화전견취도 삭제에 관한 건>(화전견취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수속 과정에서 규정에 저촉되는 곳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군수에 곧바로 통보하여 견취도에서 삭제하도록 한다는 내용), <국유림보호조합 설치 개소 및 구역표>, <삼림피해 상황표> 등이 있다.

문서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화전 관계 문서들만 있는 것이 아니나 이 중에 화전 관계 기록물이 가장 주목되므로 편의상 '화전 관계 기록물'의 하나로 분류하여 주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가장 주목되는 문서는 '화전에 관한 초록'이다. 일제는 1924년 9월까지 요존 임야 내 1만 정보의 화전 및 6천여 호의 화전민의 거주 및 경작 상황을 조사하고 정리에 착수했는데, 1926년 다시금 본격적으로 화전정리에 나서게 된다. 당시 구체적인 방침으로 「화전조사요강」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문서는 1924년 당시에 화전정리의 방침으로 채택된 사항들을 열거한 것으로 이후 만들어진 「화전조사요강」 등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 문서에는 화전을 무조건적으로 정리하지 말고, 숙전(熟田)이 된 것은 인정하되 지세를 거두도록 한다는 등의 방침이 실려 있는데 조림계(造林係)의 삼림보호에 관한

참고 자료로 보인다. 모두 13쪽 분량의 '초록'은 '조선총독부영림창'의 용지에 작성되었다. 아래에서 주요 내용을 번역, 소개 하겠다.

화전에 관한 초록

화전은 조선인의 악습으로서 임야에 화입(火入)하여 개간하는 것이다. 이 화전과 같이 누백년에 쌓인 폐습을 갑자기 금지하는 것은 전혀 방도가 아니고 이를 점차 금지해나가는 것이 득책이다. 우선 국유림보호명령을 내린 구역에서는 화전민은 조합원으로서 국유림을 직접 보호해야 할 당사자이다. 이 경우에는 화전과 보호의 관계에 대해 가장 주의하여야 한다. 그 주요 사항을 적시하자면 먼저 화전과 보호명령의 관계이다. 보호명령을 받은 부락민은 국유림의 주변 촌락에 거주하는 부락민으로서 호구의 증가에 따라 경지 부족이 발생하게 되고, 이 때문에 국유림을 침간하여 화입을 하므로 화재가 빈발하다. 따라서 화전민들의 신규 화입을 엄히 단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유림 경사도 35도 이내의 토지 및 국토보상 기타 특별한 사유없는 토지는 이미 화전되거나 또는 경작이 되면 당분간 종전의 관습을 인정하도록 한다.

화전 정리에 의한 경작 이전지는 영림창에서 동 창 소관의 임야에 대해 임야조사를 한 후 경작 이전지를 선정하도록 한다. 그 경계에는 표식을 설치하고 6천분의 1 지도에 면적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하고, 조사서를 제작한 후 이를 도장관(道長官)에게 인계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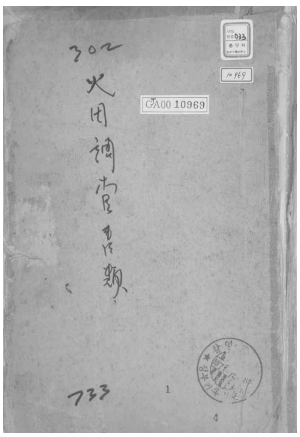
윤경지와 방경지(放耕地) – 윤경지라 함은 경작 구역을 일정하게 계속 경작한 사실이 있어도 지력양성을 위하여 일시 휴경하는 것이고, 방경지라 함은 경작구역이 일정하지 않고 혹 연간 경작하여 지력 소모에 의하여 그를 방기하는 것이다. 화전의 실황으로서 과연 숙전(熟田)이라고 간주할 것인가 아닌가 판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먼저 화전경작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조사할 것, 그리고 화전이 숙전인지의 여부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대정 5년 4월부 '영업 제400호'에 의하여 판별하도록 할 것. 이후 화전에 대한 지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대장을 만들어 각 부 · 군청 및 면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한다.

화전조사에 관한 건 – 화전의 조사는 별도로 정하는 것 외에 좌기 각 항에 의하도록 한다. 경작 구역이 일정하고 계속적 경작의 사실이 있어도 지력양성을 위하여 일시 휴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거나 장래 영속하여 동일의 경작법을 시행할

수 있거나 하는 것에 한하여 숙전으로 규정한다. ①격년으로 경작하는 것, ②경작연수가 휴경연수보다 많거나 휴경연수 3년 이하의 것, ③휴경구역이 일정한 것은 숙전으로 할 것.

위 사항에 따라 숙전으로 조사한 화전은 화전 필지당 작성한 '경계견취대장'의 상당란에 '격년경', '2년경', '1년휴 3년경', '2년휴' 등이라고 기입할 것, 이외 사실상의 화전에 대해서는 요존 예정 임야마다 ①화전 경작자의 예상호수, ②화전의 면적 등을 사항을 조사하여 요존예정 임야조서의 상당란에 기입할 것.

이상의 사항은 이후 화전정리 과정에서도 중요한 원칙으로 계속 채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화전조사서류 (火田調査書類)

- 생산연도 1928~1931년
- 생산기관 총독부 산림부
- 관리번호 CJA0010969
- M/F 310091-5318
- 총페이지 561면

1928~1931년 사이에 진행되었던 화전조사 관련 문서가 한데 묶인 기록물철이다. 이에 수록된 자료는 <소위원회보고서>, <화전조사보고서>, <화전정리에 관한 조사복명자료의 건 품의>, <화전에 있어서 축산상황>, <화전에 있어서 양잠방면 관찰>, <화전조사에 관한 건>, <국유임야 내 화전경작자에 관한 건> 등이다.

조선총독부는 화전 정리를 위해 1924년 9월까지 요존 임야 내 1만 정보의 화전 및 6천여 호의 화전민의 거주 및 경작 상황을 조사, 정리하였다. 화전 정리는 1926년 다시 재개되었고, 구체적인 방침은 1928년 3월 「화전조사요강」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바 있다. 이 기록물은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문서들이다.

<소위원회보고서>, <화전조사보고서>에는 정리 대상 화전민들에게 이전지를 지급할 것, 화전이 숙전(熟田)이 된 경우는 경작자에 소유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 등의 기본 원칙을 의결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화전조사위원회가 조사방침에 기초하여 실행방책을 입안하기 위해 만든 것이 화전조사위원회 소위원회였다. 소위원회는 14차례의 심의를 거치면서 보고서를 마무리 지었는데 5항목으로 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현재의 화전 중 그냥 경작을 허용해도 지장이 없는 것은 이를 용인하고 폐경이 필요한 곳은 이전지를 공여하는 등의 방법에 따라 정리를 행한다. 그리고 공여할 토지에 대해서는 점차 애착의 관념을 함양하도록 소정의 요금을 징수하여 대부하도록 하고, 또 숙전이 되어 경작자가 정착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무상 양여하도록 한다.
>
> 이에 따라 토지 대부를 받은 경작자에 대해서는 상황을 고려하고 주업과 부업에 관한 적절한 지도를 행하여 정착을 도모하도록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지도에 관해서는 지도 관리를 배치함과 동시에 공려조합(共勵組合)을 설치하여 상당한 원조를 행하는 방법에 따라 성과를 거두도록 한다.
>
> 신규 모경(冒耕)은 절대로 금지하며 임야의 보호 취체 기관 및 법령을 정리하여 신규 모경 금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이다.
>
> 국유임야 중 농경 적지를 조사하고 화경 경작자의 생활 안정을 고려하여 이를 개방하도록 하고, 동시에 교통 기관을 정비하여 화전정리사업의 실효를 거두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고지대의 농림업 경영 방식은 저지대의 그것과는 다르므로 경작자에 대한 지도철저와 고지대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시험기관을 설립하여 합리적으로 조사, 시업하도록 한다.
>
> 화전의 정리에 대해서는 실행상 필요한 법령을 제정 공포하고 본 사업을 속히 완료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지만 화전의 현재 상황 및 사업의 성질을 충분히 고려하여 15년간 종료하기로 하고 산림부에 새로 관련 과를 설치하여 실행을 맡도록 한다.

이상의 보고서 내용에 따라 소위원회는 「화전 정리 요강」을 작성하였다. 별지 포함 약 80쪽 분량의 요강은 화전조사위원회 소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작성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전 정리 요강

제1항 화전 정리 및 경작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1. 화전 중에는 그대로 경작을 용인해도 지장이 없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므로 각기 실정에 따라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과 같이 이를 구분한다.
   1) 제1종 – 영구히 경작을 용인해도 좋은 곳이다. 화전의 경사가 15도 이하로서 숙전이 된 것, 또는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은 영구 경작을 용인한다.
   2) 제2종 – 기한을 한정하여 폐경시킬 것이다.
   3) 제3종 – 경사 30도 이상의 화전, 심히 토사 붕괴가 진행된 곳, 공용 또는 공익을 위해 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곧바로 폐경한다.
2. 제1종 및 제2종 화전에 대해서는 경지 및 택지의 대부를 인허하고 토지가 안정되고 숙전이 되어 경작자가 정착하였을 때에는 택지와 함께 무상으로 이를 경작자에게 양여한다. 제2종 및 3종 화전의 경작자로서 폐경에 의해 생계가 막힌 자에게는 새로 체지(替地)를 공여하거나 다른 농경 적지에 이전하도록 한다. 경작이전지는 택지와 함께 대부하고, 숙전이 되었을 때 양여한다. 이 대부지의 경작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장작 수요에 응하여 목초지 및 부락공유지를 정하여 사용을 인정한다.
3. 제1종 화전 및 전 항에 의한 대부지의 경작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장작에 대해 되도록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목초지 기타 부락공유지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국유임야 내 적당한 지구를 정하여 사용을 인정한다.
4. 대부지에 대해서는 매년 수확 후에 대부료를 정하여 징수한다. 1단보에 10전 이내로 정하고 토지 상황에 따라 몇 등급으로 나누어 적당히 정한다. 대부료 징수는 영림서 소관의 임야에 관계되는 것에서는 영림서, 도 소관의 임야에서는 도(道)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한다.
5.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대부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차수인이 국유임야에 관한 죄를 범하고 정상이 특별히 무거울 때
   2) 차수인이 화전정리에 관한 법령 또는 대부조건에 위반하고 정상이 특히 무거울 때
   3) 공용 또는 공익을 위하여 또는 관의 형편에 따라 필요가 있을 때
   대부지를 전대하거나 차지권을 양도하고 상속에 의한 승계는 인정한다.
   … (중략) …

제2항 경작자의 지도에 관한 사항

1. 대부를 인허한 제1종 화전 및 화전의 폐경에 의하여 새로 체지 혹은 경작이전지로 대부한 농경 적지의 경작자에 대해서는 다음 방침에 따라 지도한다.
   1) 농법의 개선 및 지력 유지 증진에 관한 지도 장려
   2) 생산물의 이용 판매 기타 수입증진에 관한 지도 장려
   3) 경작자의 생활 개선, 풍속 교화 실적을 얻기 위해 필요한 시설 확충
2. 전 항의 방침에 의한 지도 장려는 시험 기관의 조사 시험 성적을 기다려 합리적 방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다음에 따라 이를 실행하도록 한다.
   1) 경작지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적당한 토지공사(土止工事)를 권장하고 비료 시용을 장려하고 작물에 대해서는 예전의 조방농법을 버리도록 하고 우량품종의 재배를 장려하는 등 농경법 개선에 적절한 지도 장려를 가할 것
   2) 현행 화전 중 상당한 세월이 경과하므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이동의 우려가 있는 경작자가 많은 지방에 대해서 위 1)에 의해 지도하고 퇴비 녹비 사용을 장려하며 소와 양잠 기타 부업을 장려할 것
3. 개량 농법에 사용할 농구 기타 설비 및 종묘 비료 등의 구입, 가축 구입 증식에 대해서는 농회, 축산회, 금융조합, 공여조합 등에 저리 자금을 융통하고 대출을 권장하는 등의 방법을 취한다. … (중략) … 경작자 500호를 내외로 하나의 지도구를 삼고 각 구에 지도원 1명을 배치한다. 새로 농경 적지에 이주할 경작자는 30호 이상으로 집단 수용하며 한 지도구는 3년 동안 이를 완성시키도록 한다. 새로 설정된 이주 부락에는 생업 보도, 애림 사상 함양, 생활 개선 및 교화 등의 목적으로 공려조합(共勵組合)을 설치한다.

제3항 신규 모경 금지에 관한 사항

1. 신규 모경 금지를 기함에 있어서는 현재와 같은 보호단속기관으로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다음에 의하여 이를 충실히 할 것
   1) 요존림 : 각 영림서에 보호구의 감독, 삼림경찰사무를 처리시키기 위하여 전무자를 둘 필요가 있음. 보호구를 증설하고 현재 1보호구의 담당 면적 3만 5천 정보를 1만 정보로 낮추도록 할 것
   2) 요존해제가 끝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분간 위의 보호기관에 의하여 엄중 단속하도록 할 것
   3) 불요존 임야에는 전임의 보호단속기관을 배치하지 않아 거의 황폐화된 상황이므로

관제를 개정하여 부·군도 삼림주사로 하여금 보조단속에 임하도록 할 것이다.

2. 임야에 대한 단속 철저를 기하기 다음과 같이 법령을 개정한다.

… (중략) …

제4항 농경 적지의 조사 및 고지대의 이용 개발에 관한 사항

1. 국유임야 중 농경 적지는 되도록 개방한다. 그러나 농경 적지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면 이는 요존국유림으로 계속 존치한다.
   1) 군사상 또는 학술상 존치가 필요한 곳
   2) 보안림
   3) 영림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는 곳

이상을 제외한 농경 적지는 표고, 기상, 경사도, 토질, 수리 등의 관계에 따라 이를 선정하도록 하고 조사는 본부에서 행한다.

2. 농경 적지는 화전경작의 생활 안정을 고려하여 다음에 따라 개방한다.
   1) 화전경작자 및 모범농가의 수용은 정리구분조사의 진행에 따라 하면서 토지의 할당 구획조사를 행하고 이를 실시하도록 한다.
   2) 농경 적지로서 화전 정리상 필요가 없는 것은 이를 일반에 개방한다. 단 일반의 수용자는 인격자산 등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두어 영농 모범이 될 자를 선정한다.
3. 고지대 농림업의 경영법식이 낮은 곳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경작자에 대해 지도 철저, 고지대 개방에 도움 될 조사 시험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긴요하므로 이에 대한 시험기관을 설치한다.
4. 교통운수의 기관을 정비하고 일반산업의 진흥을 계획하는 것은 세농(細農)의 경제를 향상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바로서 화전정리사업의 실효를 거두는 데 필요한 사항이므로 다음 사항에 따라 고지대 개발에 노력한다.
   1) 조사시험의 결과 목축업 또는 가공업 등과 같은 사업으로 상당히 큰 규모로서 경영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이를 조장하는 데 노력한다.
   2) 도로 철도 등의 교통기관을 정비하고 자원 개발을 기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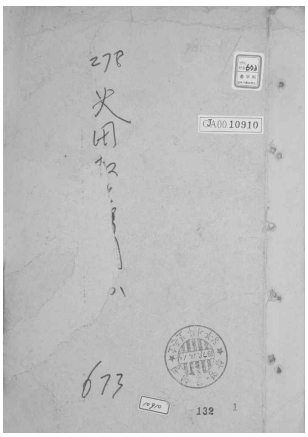
제5항 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 실시에 대해서는 토지의 처분, 경작자의 수용 등에 관해 필요한 법령을 제정, 공포한다.
2. 산림부에 임시화전정리과를 신설하고 전적으로 화전 정리의 실시에 필요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교통운수기관 정비 기타 화전 정리의 실행상 관계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본 요강에 의하여 실현을 기하도록 한다.
3. 화전 정리를 위해 처분한 토지의 감사, 경작자의 지도 감독은 영림소 소관지에 관계되는 것의 경우 영림서장, 기타의 경우 도지사가 이를 관장한다.
4. 본 사업은 대체로 15개년 간에 종료하도록 하고 각종 조사는 5개년 이내에 완성하도록 한다.
5. 현재 경작하는 화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정리 구분의 조사를 끝낼 때까지 경작을 허가하고 요금을 징수한다.

이상의 「화전정리요강」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1932년부터 화전민 정리 등을 주요 사업 내용로 하는 '북선개척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이 기록물철에는 <화전정리에 관한 조사복명자료의 건 품의>라는 문서가 있다. 이 문서는 화전조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교토제국대학 농학부교수 하시모토 스게소우몬(橋本傳左右門)이 작성한 것이다. 화전민에 대한 단속을 엄격히 하는 동시에 현재 화전 중 숙전화될 수 있는 곳에서는 경작을 용인하는 한편, 가급적 단기간에 화전의 전반에 대해 상황을 밝힐 수 있는 조사를 행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화전민을 신고하도록 강제할 것과 이 신고에 근거하여 영림서가 화전대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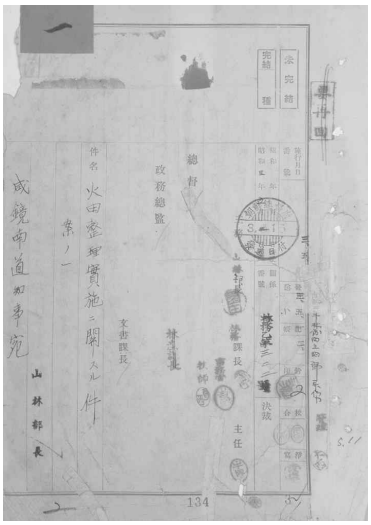
<화전조사에 관한 건>은 위 건의에 따라 시행된 화전조사 시행과 관련된 문서로서 화전조사반이 조사 현지에 당도하였음을 알리는 전보와 그들에게 시달된 주의 사항 등이 실려 있다. 이 문서에는 별지형식으로 '화전조사요강'과 '화전조사요강참고문서'가 첨부되어 있다. <화전조사요강>은 위의 「화전 정리 요강」 등에 의하여 진행되는 화전 정리의 전초 작업으로 시행된 화전 조사의 방법을 간단히 정리한 자료로서 국유임야 내에서의 무허가 개간지 화입에 대해서는 적절히 단속할 것, 경작을 용인할 화전은 반드시 숙전화한 후 소작료를 받을 것 등 조사의 기본 원칙이 정리되어 있다.



화전정리 (火田整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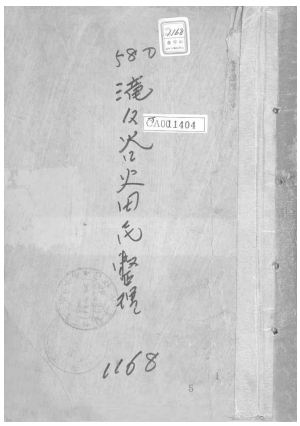
- 생산연도 1928년
- 생산기관 총독부 산림부
- 관리번호 CJA0010910
- M/F 1310091-5636
- 총페이지 311면

앞의 《화전조사서류》에 담긴 '화전조사요강'에 따라 실제 실시된 화전 정리의 양상이 기록된 것으로 <화전정리 실시에 관한 건> 등이 편철되었다. 이에 의하면 화전조사 결과에 의하여 정리 계획을 수행하되 매년 실적을 다음해 2월까지 총독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화전민의 수용 실시에 대해서는, ①경지택지 기타 소유토지 및 가옥 건축재는 무상 공여할 것, ②영림서 국유임야 내 거주민은 향후 1개년 내에 수용을 완료할 것 등의 원칙이 문건을 통해 시달되었다.



<그림 20>≪화전정리≫(CJA0010910)에 수록된 <화전정리 실시에 관한 건>

한편 《화전정리》 외에도 <화전민의 현황>, <수용예정 구역 개요>, <현재 거주민의 호수> 등의 자료가 첨부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갑산군 등 함경도 일대의 화전민은 조선수전회사의 공사에 동원된 인부로서 공사에서 이탈한 후 이곳에 정착한 화전민, 인근 지역에서 수해를 입고 갈 곳이 없어 흘러들어온 이재민 등으로 구분된다. 일제는 이들에 대하여 1호당 농경 적지 4정보를 확보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지방위원 등 실무자를 화전민 가운데에서 뽑아 임명하였다.



농롱곡화전민정리 (瀧瀧谷火田民整理)

- 생산연도 1929년
- 생산기관 총독부 산림부
- 관리번호 CJA0011404
- M/F 1310091~5636
- 총페이지 839면

1929년에 발생한 일명 '갑산화전민사건'의 전말을 기록한 문서들이다. 이 사건은 조선총독부가 《화전조사서류》에 수록된 「화전 정리 요강」에 따라 실제로 화전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문서에 나타난 각종 「요강」의 내용을 액면적으로만 파악한다면 화전민이 당국의 방침에 반대, 저항하는 것이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화전민 정리 과정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일제 당국의 발표대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정리가 추진되지 않았다.

이에 의하면 갑산군 보혜면 대평리 일대에는 수해 이재민 등이 수년 간 모여들어 자치조직을 결성, 화전을 일구고 살았는데, 그 인구는 약 200호에 1,000여 명이었다. 1929년 4월 혜산영림서가 「화전 정리 요강」에 따라 화전민을 농경 적지로 '이전'시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전 대상지로 농경에 전혀 부적합한 곳을 제시하고, 심지어 이전지가 농경 적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전을 거부하는 화전민의 가옥을 무단으로 방화하는 사건을 일으키기에 이르렀다. 이에 주민들이 강하게 저항하자 총독부 당국은 무장 경찰을 동원하여 주민을 협박하고, 마을 전체를 소각하여 버렸다.

이 사건 이후 화전민 정리의 실상이 알려지게 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이를 반대하는 움직이 벌어졌다. 주민들이 함경남도 도청과 총독부에 진정 활동을 벌이는 한편으로 신간회가 직접 진상 조사에 임하였고 여러 사회단체로 구성된 '갑산화전민 구축사건 대책강구회'가 조직되기도 하였다. 이 《농롱곡화전민정리》 당시 당국이 작성한 <농롱곡화전정리 실행상황 보고요지>와 <화전 정리 상황>, 신간회의 항의문, 종로경찰서의

첩보문건인 <갑산군 보혜면 송가동 및 농롱곡 화전사건 실황> 등이 편철되어 있다.

이 문건은 경성 종로경찰서장이 총독부 경무국장에게 보낸 1929년 8월 21일자 경종경고비(京鍾警高秘) 제11097호, <신간회 긴급중앙상무집행위원회 집회단속 상황보고>에 첨부된 것으로 한문을 혼용한 우리말로 작성되었다. 문건에 의하면 중앙집행위원 김병로가 직접 현지 답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매우 중요한 문서이므로 요약하여 소개하겠다.

갑산군 보혜면 송가동 및 농롱곡 화전민 사건 실황

갑산군 보혜면 혜산진으로부터 압록강 상류의 지류에 접하여 약 12리쯤 올라간 곳에 10여 호 가량 가옥이 모인 대진평이라는 촌락이 있으니 이곳은 경찰관 주재소도 설치된 지 10년이나 된 곳이다. … (중략) … 대진평에서 오른편 산곡으로 1리 반 정도 떨어진 지대에 수십년 전부터 거주하던 규모 약 20호의 촌락이 있으니 이를 소송가동(小松哥洞)이라 한다. 이 곳의 거주민이 보유한 경작지는 약 4만여 평인데, 주민의 소유지로 사정된 부분도 있고, 근래에 들어 새로 개간된 땅도 있다.

혜산진 영림서에서는 금년(1929) 3월부터 소송가동 입구에 화전 폐경 경계라는 표목을 세우고 이곳 거주민에게 폐경, 이주하라고 명령하였다. 이곳에서 다시 험준한 지대로 1리 반 정도 올라가면 대송가동이 있는데 이곳은 14년 전에 화전민이 초입하여 그 수가 매년 증가하다가 올 봄에 총 호수가 140호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그 중 10호는 금년 6월 19~20일에 방화로 소실되었다.

여기에서 다시 1리 정도 더 들어가면 소농롱곡이 있고 또 다시 1리를 들어가면 대농롱곡이 있는데, 이 농롱곡은 4~5년 전까지 아편밀조단이 무장을 하고 잠복하여 아편을 재배하던 곳으로 영림서원은 물론 일반인도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그러다가 작년 3월에 풍산군 안산면 김응순, 삼수군 진흥면 김용하, 갑산군 보혜면 김진형 등이 초입하여 화전을 개간하였고, 이후 각지에서 수해로 경작지를 잃은 농민들이 이입하여 화전을 일구었다. 이후에 소농롱곡에 20호, 대농롱곡에 66호 가족이 들어와 인구가 모두 천여명이 되었다.

이 곳은 목재에 적당하지 못한 '깔'나무 등 화고목(火枯木)이 있을 뿐이고 목재에 적합한 입목이 전혀 없다. … (중략) … 대농롱곡은 단 한 개의 생목도 전혀 없는 상황으로 약 30여만 평에 이르는 평원이다. 대진평 주재소에서 순사가 들어와 일반 주민에게 인구 조사를 행한 적도 있었고, 화전을 기전(起田)하여도 삼림지대만을 범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돌아가

는 정도였다.

순사가 들어와 인구 조사를 한 며칠 후에 주재소에서 주민 7명을 불러 주민 일반은 면사무소에 호적 거주에 관한 수속을 하라고 말하였고, 일반 주민은 이에 보혜면사무소에 호적 거주 수속을 하던 중 수 일 후에 갑자기 가토 순사가 수속을 중지하라는 통지를 하고, 돌연 산림주사 등과 무장을 갖추고 들어와 작업 중에 있는 화전민에게 화전 폐경 구역에서 경작을 개시함은 절대 불허한다 하면서 농구 등을 탈취하였다.

이에 경작하던 농민들이 소리를 지르며 육박하고 거주민들이 회집하여 크게 공황이 발생하였는데, 주사 사카이는"너희들은 경작을 폐지하고 각기 이주하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주민들은"우리는 이주할 곳도 없고 경작할 토지도 없으니 죽어도 이곳에서 죽겠다"고 거부하였다. 이에 사카이 등은 대송가동으로 돌아가서 당지에 산림보호구 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대농롱곡에 왕래하면서 혹은 거주민을 구타하고 혹은 기전 작업을 저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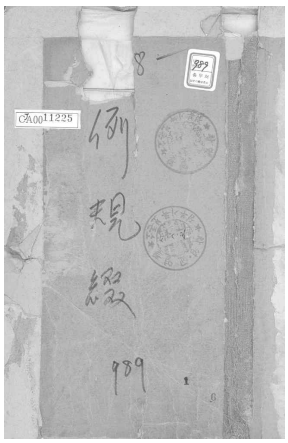
금년 5월 17일에 산림주사 박춘식 등이 와서 금번 정부에서 경작에 적당하고 거주에 편한 화전민 수용지를 주기로 결정하였은 즉 '이주증'을 교부할 것이라며 보혜면 신흥지구 선덕동으로 이주하라 하기에 거주민들은 방금 경작 시기가 경과하였는데 어디로 가느냐며 거부한 즉 박춘식은 주민 중 이재범을 난타하였다.

그 다음날에 산림서원 2~3인이 와서 다시"이주에 불응하면 산림서원과 경관이 합력하여 방화 축출한다"고 위협하기에 주민들은"화전민 수용지로 결정되었다는 신흥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100여 명이 회합한 후 산림주사와 함께 이전지로 지정된 신흥리 선덕동에 가본 즉 거주지라고 하는 곳에는 음료수로 쓸 물이 없고 밭을 일구기에는 너무 경사가 급격한 석질 경사지대로서 경작하지 못할 곳이기에 이주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사카이가 말하기를"그러면 이 동네에 기존 거주하는 주민의 경작지를 1호에 1일경(1천 2백평)가량 빼앗아 분급할 터이니 거주, 경작하라"고 강요하였다. 그렇게 되면 기존 거주민이 이에 불응할 것이 분명할 뿐 아니라 기전 토지를 분급한다면 기존 거주민도 생활이 불가능할 터이므로 100여 인의 농롱곡 주민은 이를 거부하였다.

그 후 5~6일을 경과한 후 산림주사 박춘식과 가토 순사 등이 들어와서 주민 김원술 등의 방에 돌입하여 가재 도구를 문 밖에 내던지고 방화하겠다고 하며 난타한 후 주재소에 구속하기에 주민 100여 인은 대진평 주재소로 몰려가서 철야 항의하였더니 그 다음날에 주재소 주임이 혜산진으로부터 와서 구속했던 인민을 석방하였다. … (중략) … 그 후 6

> 월 16일에 산림서원 사카이 순사 등이 무장을 하고 와서 금일은 단연코 방화한다고 선언하므로 주민들은 어찌할 줄 모르고 몸을 피하며 방황하던 중 무장대들은 부녀들을 협박하여 가옥에 불을 지르라고 강요하였다. 이 때문에 화전민들은 자기 손으로 자기 집에 불을 지르는 등 참상이 일어났다. 그 후 3일 동안 대농롱곡에 가옥 46동, 소농롱곡에 16동이 소각되었다. 어떤 주민은 산림서원을 붙들고"우리 집에 불을 놓았으니 나와 같이 불속에 들어가서 타죽자"며 울부짖다가 경관에게 감금을 당하였다. 무장대는 19일부터 대송가동으로 가서 농롱곡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가옥 10동을 소각하였던 바, 소실가옥은 모두 72동이었다.(하략- 이하에 피해 상황이 표로 정리되었다)

이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화전조사위원회가 「화전 정리 요강」에서 화전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전지는 사실상 전혀 거주 및 경작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었다. 그럼에도 당국자는 위 문서의 말미에"본 사건은 장래 화전 정리의 선구로서 중대한 의의와 사명을 가지는 바, 영림서에서도 전력을 기울여 정리를 수행하고 있다. 농롱곡 화전정리에 관련하여 불량배 2~3명과 민족주의자 사상단체 등이 개입하여 진상을 세상에 잘못 알려 분규를 확대시키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고 부서해 두었다.



예규철
(例規綴)

- 생산연도 1929~1936년
- 생산기관 총독부 산림부
- 관리번호 CJA0011225
- M/F 1310091-5495
- 총페이지 803면

《예규철》에는 1929~1936년 사이에 생산된 화전민 정리 관련 각종 통첩 및 지령문 등 화전 정리 관련 문서들이 함께 편철되어 있다. 여기에는 화전정리사업이 본격화될 당시 실제 정리사업 실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처리 방안과 「화전 정리 요강」에 실린 세부 규정들을 다시금 확인하는 내용이 주로 수록되었다.

주요 문서로는 <화전의 침간 방지 및 정리에 관한 건>, <국유임야경작화전민 강제 입퇴에 관한 건>, <화전대장 및 그 도면정비 처리에 관한 건>, <북선개척계획에 의한 화전정리조사요령 제정의 건>, <북선개척사업종사직원의 진퇴 기타이동사항 보고 처리의 건>,<산농공려조합 설립에 관한 건> 등이 있는데,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표 23>과 같다.

< 표 23 > 《예규철》에 수록된 기록과 주요 내용

문서 제목	주요 내용
화전의 침간 방지 및 정리에 관한 건	1929년에 12월 24일에 산림부장이 각 영리서장에게 발송한 문서이다. 당해 여름의 수해가 국유림 내에 잠입, 경작하는 화전민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적극 이주시키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이다. 화전 정리의 방법으로 1) 지방 관헌과 밀접한 연락을 유지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엄중히 훈시하고 개간 행위를 처벌할 것 2) 가해자를 발견할 때는 신속히 송치할 것 3) 현재 경작을 용인하는 경작지를 화전대장에 모두 등록하여 관리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문서 제목	주요 내용
국유임야경작화전민 강제 입퇴에 관한 건	1929년 12월 22일에 산림부장이 강원도 영림서장에게 발송한 문서이다. 국유임야 내에 경작하는 자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이다.
화전대장 및 그 도면 정비 처리에 관한 건	1931년 9월 8일에 산림부장이 각 영림서장에게 발송한 문서로 화전이 신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화전민 대장을 작성하라는 내용이다. 화전민 대장은 화전구역 견취도와 세대주 씨명, 생년월일, 주소, 원적, 화전 경작을 하게 된 경위, 자산 상태 등이 담겨 있다. 화전민 외 신규 화전 경작자는 곧바로 퇴거하도록 조치되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장래 퇴거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었다. 화전대장에 실린 화전민에게는 별도로 조사 제표(濟票)를 교부하고 가옥 입구에 걸어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복명서	혜산진 영림서 관내 화전 기본조사 지원을 위해 함남 갑산 관내로 출장한 산림부 직원들이 작성한 보고서이다.
북선개척계획에 의한 화전정리조사요령 제정의 건	1932년 8월에 작성된 것으로 북선개척사업 중 실시할 화전민 '지도'의 방침을 제시한 문서이다. 화전 조사의 일환이었던 이 조사는 화전을 갑종 화전(국토보안 및 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개소, 현지 경작을 용인하는 곳, 경사 15도 이하로서 숙전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곳)과 을종 화전(폐경 대상지)로 나누어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서에는 갑산 일대의 화전경작자 조사부가 첨부되어 주목된다.
북선개척계획에 의한 농경적지 예찰조사요령 제정의 건	1932년 8월에 작성된 화전민들의 이주지 선정을 위한 농경 적지 조사 요령을 담은 것이다.
국유임야대부원서용지 인쇄에 관 한건	1932년 9월에 작성된 문서로서 북선개척사업의 실행으로 화전민으로부터 징수할 국유임야 대부원서(이전지를 받을 경우에 작성해야 하는 문서)의 형식을 규정한 것이다.
북선개척사업종사직원의 진퇴 기타이동사항 보고 처리의 건	화전민 정리 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임면 상황을 기록한 문서이다.
북선개척사업계획에 의한 삼림주사 배치에 관한 건	평북 강계·후창·자성 지역에 배치할 삼림주사의 명단과 관할 구역을 정리한 문서이다.

문서 제목	주요 내용
삼림보호구 분구의 설치 등에 관한 건	화전민을 단속할 삼림보호구 내에 분구를 설치하는 건과 관련된 문서이다.
산농지도직원 근무 규정 준칙에 관한 건	화전민 정리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근무 규정을 담은 문서이다.
산농공려조합 설립에 관한 건	1933년 2월에 농림국장이 함남, 함북 지사에게 발송한 문서로서, 공려조합 결성을 지시하는 내용이다. 이에 의하면 조합은 한 개 산농지도구를 단위로 만들어졌으며, 촌락의 중심 인물을 지정하여 발기인을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본 문서에는 발기인이 작성해야 하는 조합설립 취의서 양식, 조합가입 신청서, 조합의 임원 구성 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다. 화전민 25호 당 1명씩 지도위원을 선정하였으며, 이 지도위원이 1반보 당 5전씩 조합비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하 공려조합의 표준규약이 수록되어 있다.
북선개척사업계획에 의한 화전정리조사원 심득에 관한 건	화전조사원의 업무 규정이 수록되었다.
북선개척사업계획에 의한 화전경작자 이전 수용 실시 요령 제정의 건	1933년에 작성된 문서로서, 화전 경작자의 이전 수용에 관한 실시 요령을 담은 것이다. 경작지 분배 원칙, 택지 조성 원칙 등이 담겨 있다.
북선개척사업계획의 실행에 관한 건	1933년 9월에 작성된 문서이다. 화전민을 이전시킬 때 가축을 보유할 수 있도록 대출, 지도를 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비장려금 급여에 관한 건	1934년 4월에 작성된 문서이다. 화전민 이주 후에 시비(施肥)를 장려하도록 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이를 위해 시비 장려비를 지급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장려비는 공려조합에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이 명시되었다. 자급 비료 증산을 위해 공려조합이 '녹비채종포'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려조합이 비료를 만드는 용구를 구매할 경우 8할을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부업 보급 조성에 관한 건	화전민 정리를 위해서는 화전민이 부업을 가져 생활이 안정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부업 보급 정책 실시에 관한 문서이다. 부업 장려의 일환으로 강제 저축을 하는 방안이 언급되어 있다.

문서 제목	주요 내용
산농공려조합에 있어서 사업 자금의 조성 운용에 관한 건	조합원에 대한 생산자금 대부 현황을 소개한 자료이다. 이에 의하면 공려조합이 매년 조합비 세입 예산액의 3할 이내에서 대부 자금을 마련하게 되어 있으며, 1인당 10원 이내에서 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화전민의 이전 수용 방침에 관한 건	1934년 5월에 작성된 문서이다. 화전민들이 대다수 이주를 기피하여, 질병이라든지 노동 불능 등을 사유로 내놓고 있지만 이를 막론하고 수용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본 문건에 '이전수용경과'라는 제목의 문서가 부속되어 있다.
보고례에 의한 화전면적 및 경작자 호구의 보고에 관한 건	1935년 2월에 작성된 문서이다. 북선개척사업을 실시할 요존 예정 국유임야 216만 정보 중에 존재하는 화전민의 이전 적지는 '국유미간지이용법'에 의하여 처분하고 사업이 성공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여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담겨 있다. 또 현재 화전을 경작하는 자의 신탄림조성을 위해 필요한 임야는 화전 경작자가 속한 면 및 산농공려조합에 대부한다고 되어 있다. '북선국유임야정리처분령' '북선척식사업계획서' 문서가 부속되어 있다.
경지의 보전시설에 관한 건	1935년 2월에 작성된 문서이다. 화전대장에 등록할 사항으로 토사유실된 경지 여부 등을 추가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산농공려조합의 예산에 관한 건	1935년 2월에 작성된 문서이다. 공려조합 예산 지원 문제가 언급되어 있다.
지도포의 관리 및 시업에 관한 건	1934년 2월에 작성된 문서이다. 산농공려조합에서 경영하는 지도포(指導圃)는 화전민에 대한 농법 혁신을 촉진함에 중대한 사명을 가진 것으로 경종 방식의 개선, 비료 촉진 등 시범을 보이는 바이므로 몇가지 통제 원칙에 의거하여 용의주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후 조합 임원 중 적당한 자를 선정하여 감독하도록 하고, 해당 포에서 나오는 작물의 10분의 1을 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였다. 또 적합 품종 시험, 퇴지녹비시용 등의 업무를 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화전정리조사재검조서 작제의 건	1935년 5월에 작성된 문서로서 화전 조사 시행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개소에서는 토지 대부 처분이 정확히 시행되도록 재검을 하라는 내용과 함께 재검 조사 양식이 수록되어 있다.
북선개척사업 실시에 따른 국유임야의 처분에 관한 건	1935년 7월에 작성된 문서이다. 북선개척사업의 실시에 따라 개방할 국유임야 처분에 관해서는 국유미간지이용법 또는 삼림령에 의하여 대부하되 사업 성공인 때 이를 양여할 방침이라는 점이 설명되어 있다. 이 문서에 '북선개척사업계획에 의한 농경적지 등 개방예정지의 예찰조사 및 그 처분에

문서 제목	주요 내용
	관한 건'이라는 문서가 부속되어 있다. '농경적지 예찰조사'는 예정과 같이 개척 지역 내 216만 정보의 요존 예정 임야에 대해 1932~33년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조사에 따라 개방할 예정지의 총면적은 33만1,168정보였다. 이 문서에는 개방예정지 이용구분별 면적이 정리되어 있다.
북선개척사업실시에 따라 개방할 국유임야의 대부허가지령에 관한 건	1935년 7월에 작성된 문서이다. 개방 예정지를 대부 처분할 경우 새로운 문서 양식에 의하여 관련 사항을 기입, 보고하라는 지령이 담겨 있다.
북선개척사업지역 내 냉해 대책에 관한 건	1935년 11월에 작성된 문서이다. 냉해로 북선개척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으므로 각 도 담당자가 화전민 지도사무담당자 관하 산농지도구 감독사무소 주임 등과 회동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되, 부업장려 등의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다.
북선개척사업에 따른 개방국유임야처분조사요령에 관한 건	1935년 2월에 작성된 문서이다. '북선개척사업에 따른 개방국유임야처분조사요령'으로 1) 개방할 국유 임야 중 개간 또는 목축에 적합한 지역에서는 국유미간지이용법에 의하여, 다른 지역에서는 조림 용지로서 삼림령에 의하여 각각 대부 처분할 것. 2). 개간 또는 목축적지 중 토지의 이용으로 인한 토사의 붕괴를 가져오고 그 방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개소 혹은 수원 함양상 임지로서 존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개소는 조림 용지로서 선정 조사할 것 등의 사항이 제시되어 있고, '국유임야의 대부에 따른 사업성공 인정 표준'이 뒤이어 수록되어 있다.
산농공려조합연합회의 조직 기구 등에 관한 건	산농공려조합연합회를 조직, 그 통제를 도모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었다.
화전민의 정신 작흥에 관한 건	1936년 2월에 작성된 문서이다. 화전민들로 하여금 도덕 관념을 함양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력갱생의 실'을 거두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 외에 화전민 정리 사업을 농촌진흥운동 시설과 연계하여 강습회를 개최하고, 지도단위 부락마다 중견 인물을 선정하라는 지시가 수록되어 있으며, 청년단, 소년단, 부인회 등과 같이 정신단체의 설립을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북선개척사업실시지역 내 국유임야의 대부 처분에 관한 건	1936년 3월에 작성된 문서로 개방 예정지에 대부 출원이 있을 경우 총독부 본부를 경유하여 처리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다.

또한 《예규철》(CJA0011447)에도 화전 관련 내용이 적시되었는데, 여기에는 요존국유림 내 화전 정리를 위해 화전 기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관할 영림서장에게 알리는 내용의 <화전정리기본조사요령 제정의 건>, <국유삼림자원의 확보에 따른 화전정리사업 종사직원의 진퇴 기타 이동사항 보고방법의 건>, <산농지도 실속보고 양식 개정의 건> 등이 수록되어 있다.

한편 《북선개척관계서류》(CJA0011527)도 화전 정리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여기에는 <북선개발주식회사 사업용지로 공급할 국유임야 선정에 관한 건>, <동척사업용지에 쓸 국유임야의 선정에 관한 건>, <북선개척사업에 따른 개방국유임야처분조사요령에 관한 건>, <동척 출원 희망 국유임야 실지답사 복명에 관한 건>, <북선개척사업계획에 의한 대부 국유임야의 사업성적 조사에 관한 건> 등의 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북선개발주식회사 사업용지로 공급할 국유임야 선정에 관한 건>에는 북선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한 동양척식회사가 1943년 8월, 북선 지방(원래 화전민들이 거주하던 곳)을 사업 구역으로 삼고, 이에 개척민을 이주시킬 계획이라는 점이 언급되어 있다. 또 "기업자와 개척민 혹은 농축임업 상호간에 종합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여 적정한 사업을 운영할 것인 바, 그 사업 용지로서 지난번 동 사 설립 인가 시에 당국이 지시한 국유 임야 100만 정보(당초사업 계획에서는 사업용지를 21만 1천정보로 한 바 있으나 당국에 의해 늘어났다고 되어 있음) 중 함남·북 소재 성진, 무산, 혜산진, 함흥 각 영림서 관내 국유 임야에 대하여 답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문서에 이어 실제 답사보고서가 수록되었다. 여기에는 <동척사업용지에 쓸 국유임야 답사 요령> 등의 문서가 부속되었는데, 동양척식회사가 제출한 국유 임야 21만 1천정보(요존림을 포함)에 대한 신청서에 '농목임업각사업적지 조사' 보고서가 들어가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지황, 임황, 토지의 이용 방법 및 그 종별 면적(개간 용지, 목축 용지, 임업 적지-임업 적지는 일반 임업 용지와 신탄비림으로 구분), 개간 적지 상황(경사도 15도 이하 및 경사도 30도 이하 중에서 토지 안정의 방법을 강구하면 개간을 기할 수 있는 개소를 개간 적지로 구분함) 등의 사항이 설명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에는 이 외에도 동척의 보고서에 따라 당국이 진행한 조사보고서와 함께 <북선개척사업계획서>가 더 수록되었는데, 이들 문서는 모두 희귀한 자료로서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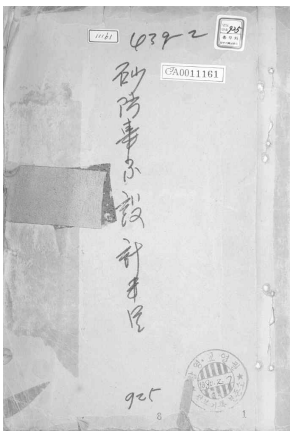
치가 높다. 이에 의하면 동척은 총 1만호 수용을 목표로 개척 사업을 준비하였는데, 주로 고지대 특수 작물을 재배할 계획이라고 하며, 10개년을 목표로 10개 사업지구에 이주민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 이 사업의 투자 총액은 2,650,000원으로서 금액에서 사업 기간 내 1년간 회수액은 858,816원이고, 자산을 합치면 10년 내로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계산이 나열되어 있다. 이 자료는 일제가 화전 정리를 완료한 후 그 땅을 동양척식회사에게 주었다는 정황이 기록된 것으로 주목을 끈다.

이 자료에 뒤이어 '북선개척흥업주식회사'의 사업 계획서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 회사는 1936년에 설립된 것으로 갑산군 등지에서 화전 정리 지역 4,579정보를 대부받아 고지대 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을 벌였다고 한다. 이 회사는 1942년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사업이 불가능해졌다고 하는데, 그 정황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14

일제문서해제 (임정편)

사방사업 관련 기록물



사방사업설계서 (砂防事業設計書)

- 생산연도 1935년
- 생산기관 총독부 농림국
- 관리번호 CJA0011161
- M/F 1310091-5445
- 총페이지 1,286면

사방사업이 시행될 당시인 1935년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사방사업 설계서를 모아 놓은 기록물철이다. 사방사업은 조선총독부가 1932년 실시한 황폐임야 현황 조사에 따라 사방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곳 27만 1천 정보 가운데 적당한 곳을 골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 하에 시행되었다.

원래 조선총독부는 매년 수해로 2천만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1918년도에 '수원함양조림사업'을 개시한 후 1922년 이래 매년 국비 사방사업을 소규모로 시행하였다. 그러다가 1931년에 '궁민구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방사업을 다시 시행하다가 1932년부터는 '응급사방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가로 사방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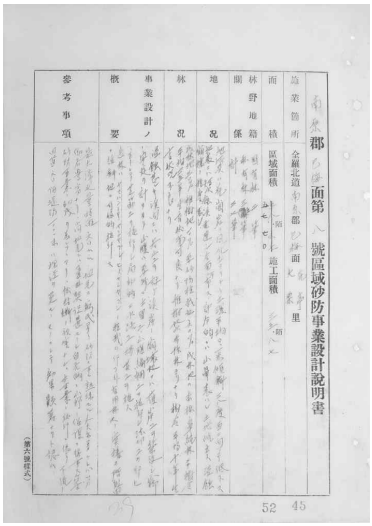
궁민구제 사방사업은 1차와 2차로 구분되는데, 모두 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궁민'으로 충당한다는 방침 하에 시행된 것으로 1차는 1931년부터 1933년까지 750만원으로 11,250정보를 대상지로 하여 진행되었다. 이 사업의 자금은 모두 도(道)에서 채권 발행을 통해 마련하는 것인데,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15년 균등 상환이었다. 이 사업비에 대해 총독부가 80% 상당액을 보조하였다.

1차 궁민구제 사방사업이 종료된 후 1934년에 다시 270만원을 투입하여 제2차 궁민구제사업을 시작하였던 바, 이는 이듬해에 대체로 완료되었다. 2차 궁민구제 사방사업의 시공 면적은 6,669정보였고, 사역된 노동자는 연인원 3,269,335명이었다. 이 궁민구제 사방사업과 별도로 1932년부터 1934년까지 '시국 응급시설 국비 및 도비

사방사업'이라는 것이 실시되었는데, 조림비는 도비에서, 인건비는 국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하여 9,900여 정보에 시공한 바 있다.

이들 사방사업 외에도 1934년에 '수해 이재민 구제 사방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수재민을 노동력으로 한 사방사업이 전체 1,846정보에 실시되었고, 1935년부터 1939년까지 '한해(旱害) 이재민 구제 사방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전라북도와 황해도, 평안남도에서 국고보조 80%의 조건으로 사방사업이 실시되었다.

국비 및 도비 사방사업과 별도로 1927년부터 매년 민영 사방사업이 실시되었는데, 이 사방사업은 임야 소유자로 하여금 사비를 들여 사방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것이었다.


郡 面第 號區域砂防事業設計說明書

<그림 21>≪사방사업설계서≫ (CJA0011161)의 <사방사업설계서(전라북도 남원군 사매면 화정리)> 중의 남원군 사매면 제8호 구역 사방사업설계설명서

조선총독부가 추진한 사방사업은 대개 무임이나 저임금으로 지역 주민들을 동원하여 실시한 것으로, 토사 유출을 억지하기 위해 반드시 시행이 필요했던 곳에 싼 노동력을 동원, 소정의 필요한 시설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사방사업을 실시할 시에는 각 도별로 시공이 필요한 곳을 조사하고, 시공에 필요한 각 공정별 단가를 적시한 설계서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했다. 그리고 시공이 완료되면 그 실행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했으며, 수해 등을 입어 시설이 파괴되면 '재해 임지(林地) 복구 사방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1939년과 같이 한해 피해가 극심했던 때에는 '야계공사'라는 이름으로 산록에 흐르는 개울물에 둑을 쌓아 물의 흐름을 보호하는 이른바 '개울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총독부 임정 관련 기록물에는 사방사업 시행 당시에 작성된 설계서(각 도별로 보관되어 있음), 실행보고서, 복구공사 계획서 등이 다량으로 있는데, 내용은 대부분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각 공정별로 수치를 적어 계상한 문서들이다. 사방사업 관련 기록물을 연도순으로 나열하면 <표 24>와 같다.

<표 24> 사방사업 관련 기록과 주요 내용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주요 내용
CJA0010703	제목 없음	1926	'대정 15년(1926) 사방사업 실행성적'이 수록된 이 자료는 각 도지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별 실행액을 표와 지도로 정리하였다.
CJA0011487	조림관계서류	1927	제1회 및 제2회 사방강습회 개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수록되었다.
CJA0010756	사방공사관계서류	1927	경기, 충북, 경북의 사업계획서이다.
CJA0010738	사방공사 및 사방식재 실행 제출의 건 철	1927	경기도 지역의 실행보고서이다.
CJA0010748	임업장려관계서류	1927	충남, 전북 지역의 사방사업 계획서이다.
CJA0010749		1927	전남, 경북 지역의 사방사업 계획서이다.
CJA0010750		1927	경기, 충북 지역의 사방사업 계획서이다.
CJA0010751	제목 없음	1927	경남, 평남, 강원, 함남 지역의 사방사업 계획서이다.
CJA0010803	사방관계서류	1928	<사방사업계획서(경북)>, <한해구제사방사업 시행의 건(경북 전북 경기)> 등이다.
CJA0010804	사방사업실행 성적에 관한 서류	1928	경기, 충북 지역의 보고서가 수록되었다.
CJA0010805		1928	충남 지역의 사방사업 실행 보고서이다.
CJA0010806		1928	각 도 사방사업 실행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CJA0010807	사방공사계획서류	1928	경기도, 충북 지역의 사방사업 계획서이다.
CJA0010808		1928	경북, 경남, 평남, 강원, 함남 지역의 사방사업 계획서이다.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주요 내용
CJA0010809	사방공사계획서류	1928	충남, 전남북 지역의 계획서가 수록되었다.
CJA0010849		1929	경기도 지역 사방사업 설계서가 수록되었다.
CJA0010850	사방공사실행보고에 관한 철	1929	경기도 지역 '설계 승인의 건'이 수록되었다.
CJA0010851	사방공사계획서류	1929	충북 지역 '사방사업 설계 승인의 건' 등의 문서가 수록되었다.
CJA0010852		1929	경기도, 충북 지역의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0853	사방사업실행보고에 관한 철	1929	충남 지역의 사방사업 계획서와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문서들이다.
CJA0010854	사방사업실행보고	1929	충남, 전북, 전남 지역의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0855	사방공사계획서류	1929	전남북 지역의 사방사업계획서와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문서들이다.
CJA0010856	사방사업실행보고에 관한 철	1929	전남북 지역의 사방사업 계획서이다.
CJA0010857	사방사업실행보고	1929	경남북, 황해, 평남북, 강원, 함남 지역의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0858	사방공사관계	1929	여러 지역의 사방사업 설계서류들이 수록되었다.
CJA0011486	사방강습회관계서류	1929	제3회 및 제4회 사방강습회 개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수록되었다. 사방강습회란 사방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사방사업 종사 적임자로 인정된 산업기수 42명을 모아 도쿄제국대학 교수 모로토 기타로(諸戸北郎) 등을 초빙, 개최한 강습회이다.
CJA0011488	제7회사방강습회관계서류	1930	제7회 및 제8회 사방강습회 개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수록되었다.
CJA0010896	사방공사계획서류	1930	여러 지역의 사방사업 설계서류들이 수록되었다.
CJA0010897		1930	경기도 지역의 사방사업 계획서가 수록되었다.
CJA0010898		1930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주요 내용
CJA0010899	사방공사계획서류	1930	충남북 지역의 사방사업 계획서가 수록되었다.
CJA0010900		1930	전남북 지역의 사방사업 계획서가 수록되었다.
CJA001090		1930	경북 지역의 사방사업 계획서가 수록되었다.
CJA0010902		1930	경남 지역의 사방사업 계획서가 수록되었다.
CJA0010906	사방사업실행보고	1930	충남 지역의 사방사업 계획서가 수록되었다.
CJA0010907		1930	각 도 사방사업 실행 보고서가 여러 개 섞여 있다.
CJA0011445		1931	충북 외 6개 도의 민영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0947	심사사방공사관계서류	1931	경기, 충북, 충남, 전남북 지역의 사방사업 실시계획서이다.
CJA0010948	궁민구제사방사업 계획서류	1931	경기, 충북, 전북 지역의 사방사업 계획서이다.
CJA0010949		1931	경남북, 전북, 충북 지역의 사방사업 계획서이다.
CJA0010950		1931	경기, 충북 지역의 사방사업 계획서이다.
CJA0010952		1931	전남북 지역의 사방사업 계획서이다.
CJA0010953		1931	경북 지역의 사방사업 계획서이다.
CJA0010954		1931	경북 지역의 사방사업 계획서이다.
CJA0010955		1931	여러 지역의 사방사업 계획서가 수록되었다.
CJA0010956		1931	평남북, 강원, 함남북 지역의 사방사업 계획서가 수록되었다.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주요 내용
CJA0010962	사방사업실행보고서	1931	경기도 지역에서 실시한 궁민구제 사방공사의 실행 상황을 정리한 궁민구제 사방공사 실행표가 수록되었다.
CJA0010963		1931	충남북, 전남북 지역에서 실시한 궁민구제 사방공사의 실행 상황을 정리한 궁민구제 사방공사 실행표가 수록되었다.
CJA0010964	사방사업실행표	1931	충남북, 전북 지역에서 실시된 궁민구제 사방공사의 실행 상황을 정리한 궁민구제 사방공사 실행표가 수록되었다.
CJA0010965		1931	전남과 경북 지역에서 실시된 궁민구제 사방공사의 실행 상황을 정리한 궁민구제 사방공사 실행표가 수록되었다.
CJA0010966	사방사업실행보고서	1931	1931년도 궁민구제 사방공사 실행표(전남북, 황해, 평남북, 함남 강원도의 자료)가 수록되었다.
CJA0010967		1931	소화 6년도 궁민구제 사방공사 실행표'와 평남북, 함남북, 강원, 경남 지역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0951	사방공사계획서류	1931	<지방비사방공사 계획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문건들과 <궁민구제사방공사계획의 건>이 실렸다. 그 외에 '1931년 11월에 신청한 장단군 군내면 제3호구역 사방공사계획의 건 승인' 문서가 있다. 이에 의하면 계원이 출장하여 실사한 결과 종전의 시행지에 계속하여 사방공사를 시행하면 적당하다고 하였으며 이어 사방공사계획표가 작성되어 있다.
CJA0011231	예규철	1931~1932	<지방토목비 국고보조의 감액에 관한 건>, <계산증명상부속서지정의 건>, <궁민구제토목공사 국고 보조에 관한 건> 등이 수록된 자료이다. <지방토목비 국고보조의 감액에 관한 건>은 1931년도 토목비 국고보조액을 감액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그에 대해 "궁민구제사업비기채상환에 대한 국고보조는 그 사업 연도 중에 일정한 보조를 하는 대신에 이를 사업단체로서 기채하여 매년도 상환실적을 보조"하는 것인데 이를 중단하면 큰 혼란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실렸다. <계산증명상부속서지정의 건>은 1932년 재무국장이 각 도 지출관에게 보낸 통첩으로서 사방공사 실행방침 설명서 등을 보고하라는 내용이다. <궁민구제토목공사 국고 보조에 관한 건>은 1931년에 지출한 궁민구제 토목공사 보조가 동년도 기채소요 이자액을 초과하는 것이 많아 회계검사 완료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주요 내용
			하여 재검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CJA0011007	사방공사신규시업개소 설정의 건	1932	경기지역 사방공사 계획서이다.
CJA0011008	시국응급국비 및 지방비 사방공사 계획의 건 서류	1932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지역의 사방공사 계획서이다.
CJA0011009	국비사방공사계획 기타관계서류	1932	경기,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지역의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010	국비사방공사 실행보고서류	1932	경기도의 사방공사 계획서이다.
CJA0011011	시국응급국비 및 지방비 사방공사 계획의 건 서류	1932	충남북, 전남북, 평북 지역 사방공사 계획서이다.
CJA0011013		1932	강원, 경남의 사방공사 계획서이다.
CJA0011014		1932	경북, 전남 지역 사방공사 계획서이다.
CJA0011015		1932	경남북, 평남, 함북, 강원 지역의 사방공사 계획서이다.
CJA0011016		1932	충남북, 전남북, 경기 지역의 사방공사 계획서이다.
CJA0011017		1932	충남북, 경기 지역의 사방공사 계획서이다.
CJA0011018	사방사업실행표	1932	전남북 관련의 사방사업 실행표이다.
CJA0011019	시국응급국비 및 지방비 사방공사 계획의 건 서류	1932	경남북, 황해 지방의 사방 계획서이다.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주요 내용
CJA0011020	사방사업계획서	1932	경기도 사방사업 계획서이다.
CJA0011021	사방사업계획서류	1932	충남북, 전북의 실행계획서이다.
CJA0011022	궁민구제사방공사 계획 및 실행보고서류	1932	전남과 경북 지역의 계획서이다.
CJA0011023		1932	
CJA0011024		1932	
CJA0011025		1932	
CJA0011026	사방사업실행보고	1932	경기, 충남북 지역의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027	궁민구제사방공사 계획 및 실행보고서류	1932	
CJA0011028		1932	경남북 지역의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029		1932	평남북, 함남북, 강원 지역의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030		1932	전남, 경남, 황해, 경기 지역의 사방사업 계획서이다.
CJA0011031		1932	경기, 전남, 경남 지역의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038	사방사업시행관계서	1932	1932년도 시국응급시설 사방사업의 실시를 지령하는 <시국응급시설사방사업에 관한 건> 및 각 도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사방사업 계획서가 수록되었다.
CJA0011577	사방사업신규승인서류	1930~1932	전북 금산군 금성면 도곡리, 평북 정주군 마산면 원서동, 충북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 전남 남원군 대강면, 전북 정읍군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주요 내용
			칠보면 백암리, 전남 광주군 임곡면 등에 대한 <사방공사 신규시업 개소승인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수록되었다.
CJA0011056	사방공사신규시업 개소설정	1933	궁민구제 사방공사 신규로 시공할 곳 설정 관련 신청지에 대한 승인 건 이다.
CJA0011057	사방사업계획서류	1933	경기도 지역의 사방사업 계획서이다.
CJA0011058	사방공사신규시업 개소설정서류	1933	경기도 지역의 사방사업 신규시업 개소설정 서류이다.
CJA0011059	궁민구제 시국응급 국비도비 사방공사 계획서류	1933	충북 지역의 사방사업 계획서이다.
CJA0011060		1933	충남 지역의 사방사업 계획서이다.
CJA0011061		1933	전북 지역의 사방사업 계획서이다.
CJA0011062	사방사업계획서	1933	전남 지역의 사방사업 계획서이다.
CJA0011063	궁민구제 시국응급 국비도비 사방공사 계획서류	1933	경북 지역의 사방사업 계획서이다.
CJA0011064		1933	경북 지역의 사방사업 계획서이다.
CJA0011065		1933	경북 지역의 사방사업 계획서이다.
CJA0011066		1933	경남 지역의 사방사업 계획서이다.
CJA0011067		1933	경남 지역의 사방사업 계획서이다.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주요 내용
CJA0011068	궁민구제 시국응급국비도비 사방공사계획서류	1933	평남, 황해 지역의 사방사업 계획서이다.
CJA0011069	사방사업계획서	1933	평북, 강원 지역의 사방사업 계획서
CJA0011070	궁민구제 시국응급국비도비 사방공사계획서류	1933	함남북 지역의 사방사업 계획서이다.
CJA0011072	궁민구제 사방공사 실행보고서류	1933년	경북 지역의 사방사업 계획서이다.
CJA0011073		1933	함남북, 평남북, 강원, 황해, 경남 지역의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074		1933	전남북, 경남북, 충남북, 경기 지역의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075		1933	전남북, 충남북, 경기도 지역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076		1933	경남북, 황해, 평남북, 강원, 함남북 지역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077		1933년	충남북, 경기 지역의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078		1933	경북, 전남북 지역의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079		1933	평남북, 황해, 함남, 강원, 경남 지역의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044	사방사업	1933	경기, 충북의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090	사방사업국고보조서류	1933	궁민구제 사방공사 국고보조액 개정의 건(보조액 약 0.5% 감액)이 수록되었다.
CJA0011091	소화7,8년도시국응급시설사방사업비국고보조관계철	1932~1933	국고보조액이 정리되어 있다.
CJA0011490	조림관계서류	1934	사방사업 실시에 관한 감사장의 건, 진정서 공람의 건, 자력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주요 내용
			갱생 휘보 송부의 건, 복명서(소화 9년도 사방공사계획심사), <소화 10년도(1935년) 노은(勞銀) 살포한 각종 공사에 대한 실적 및 지출 예상액 및 노은 조서> 등이 수록되었다. <소화 10년도 임금을 살포한 각종 공사에 대한 실적 및 지출예상액 및 노은 조서>에는 1935년도 뿐만 아니라 각 연도의 임금살포 총액이 나와 있다.
CJA0011139	소화9년수해이재자구제사방사업비국고보조지령 및 동개정관계서철	1934	사방사업 국고보조비 지급 관련 규정 개정 관련 문서가 수록되었다.
CJA0011104	사방공사관계서류	1934	충남북, 경남북의 사방공사 신규시업 장소설정서이다.
CJA0011105	사방사업계획서류	1934	경기도 지역 사방사업 계획서이다.
CJA0011106		1934	
CJA0011107		1934	경기, 충북 지역 사방사업 계획서이다.
CJA0011108		1934	충남 지역 사방사업 계획서이다.
CJA0011109	사방사업계획승인 및 실행보고서류	1934	전북 지역의 사방사업 계획서이다.
CJA0011110	사방사업계획서류	1934	전남 지역의 사방사업 계획서이다.
CA0011111	사방사업계획승인 및 실행보고서류	1934	경북 지역의 사방사업 계획서와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112		1934	
CJA0011113		1934	
CJA0011114		1934	경남 지역의 사방사업 계획서와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115		1934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주요 내용
CJA0011116		1934	
CJA0011117	사방사업계획승인 및 실행보고서류	1934	평남북, 황해도 지역의 사업계획서가 수록되었다.
CJA0011118		1934	함남북, 강원 지역의 사업계획서가 수록되었다.
CJA0011119		1934	각 도 도비 집행내역보고의 건과 충남북 지역 사방사업 실행보고서가 수록되었다.
CJA0011120		1934	충남북 지역의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121		1934	전남북 지역의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122		1934	경남 지역의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123		1934	평남북, 함남북, 황해, 강원 지역의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124	사방사업실행보고서류	1934	경기도 지역의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125		1934	
CJA0011126		1934	경북 지역의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127		1934	
CJA0011128		1934	경남 지역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129	사방사업관계서류	1934	<황무지 복구기술 강습회의 건>, <조선의 임업 책자에 첨부하는 사진첩 배부의 건> 등 사방사업 홍보관련 문서 및 기술강습회 관련 문서들이 수록되었다.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주요 내용
CJA0011294	한해이재민구제시설 사방사업관계서류	193년	황해도 지역의 사방사업 실행을 인가한다는 내용의 문서들이다. <도비사방사업계획면허에 관한 건>에 의하면 황해도에서 1935년 이래 실시해야 하는 사방지 면적은 4,300정보이며, 황해도는 1936년부터 2개년에 걸쳐 실시하기로 하였다. 초년도는 신천, 평산, 해주의 3개군 면적 319맥에 대하여 공사비 77,050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CJA0011159	사방관계잡건철	1935	<자동환등기 구입의 건>, <잡지 조선 6월호 원고 의뢰의 건>, <궁민구제공사비에 의한 자동차 구입의 건> 등 각 도 사방사업 관계자에게 보내는 사방사업 홍보관련 문서들이 수록되었다.
CJA0011160	사방사업계획서류	1935	경북 지역 사방사업 설계서이다.
CJA0011222	사방사업실행보고서	1935	강원도의 사방사업 실행보고서가 있고, 이외에도 함남 일부, 평북 일부, 함북 일부 지역의 사방사업 실행보고서가 있다.
CJA0011223	사방사업실행보고	1935	황해도 지역의 사방사업실행보고서가 있음. 수록된 문건중 <소화 10년(1935) 냉해이재자 구제시설 지반보호공사 실행보고서>라는 제목의 서류가 있다. 냉해이재자 구제시설 지반보호공사의 시행 취지 등을 설명하는 자료는 없고, 공사 단가표만 나온다.
CJA0011161	사방사업설계서	1935	전남북 지역의 사방사업 설계서이다.
CJA0011162		1935	충남북 지역의 사방사업 설계서이다.
CJA0011163	사방사업설계서류	1935	
CJA0011165	사방사업설계서류	1935	소화 10년 10월 7일에 농림국장이 황해도 지사에게 보낸 조회서가 수록되었다. 그 내용은 "소화 10년도 사방사업 설계서 내용이 불비하므로 다시 내용을 갖추어 보고하라"는 것으로 원 설계서 중 잡역부의 인건비가 잡비로 계상된 것을 시정하라는 것과 곡류 실파의 단위는 미터가 아니라 입(立)을 사용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등의 내용이다. 그 외에 함북 지방의 사방사업 설계서도 담겨 있다.
CJA0011166		1935	경기도 지역의 <국비사방사업설계서 제출의 건> 등의 문서가 수록되었다. 해당 문건 안에는 설계설명서 등을 비롯하여 여러 건의 부속 문서가 있다. 설계설명서에는 임야지적관계와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주요 내용
			지황, 지표 붕괴의 정도, 임황이 적시되었다. 그 외에 해당 지역의 인구가 조사되었는데 이는 인부를 고용하는 데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본 자료에도 "인부가 많아 사업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하여 인부 조달 상황을 직접 언급하였다. 이어 각 공정별 공사 종류, 수량 단위, 경비가 계상되어 있다. 인부는 160명으로 계상되어 있고 단가는 1원 40전으로 되었다.(인부고용비 단가가 다른 재료 단가와 동일하게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일용액이 아니라 총액인 것으로 이해됨)
CJA0011170	사방사업실행보고	1935	1935년 충북 지역의 사방공사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171	사방사업실행보고서	1935	1935년 전북 지역의 사방공사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167	사방사업설계서류	1935	<소화9년도시국응급시설도비사방공사계획서> 등이 수록되었으며 경북 지역의 사업 계획서들이다. 이 문건에 의하면 사방사업 종료 후 보호는 지역 중에 속한 농촌진흥조합이 주체가 될 것이라고 되어 있어 주목을 끈다.
CJA0011172	사방사업실행보고서	1935	1935년 경북 지역의 사방공사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174	사방사업실행보고	1935	1935년 경남 지역의 사방공사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175		1935	1935년도 황해도 도비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181	낙동강유역 사방사업비 국고보조지령 및 동 개정철	1935	소화 10년도 낙동강유역 사방사업비 국고보조에 관한 건 등이 수록되어 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부과할 부역에 한하여 부역 부과의 실적으로 국고 보조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CJA0011182	도비 사방사업비 국고보조지령 및 개정철	1935	1935년도 경기도, 충남북 지역의 도비 사방사업에 대한 보조금 관련 문건이다. 1935년 도비 사방사업비는 대부분을 실행하고 일부 익년도에 이월할 것인데 이미 공사 완료됨에 따라 공사실행보고서 및 경비보고서에 따라 도 및 시행개소에 대하여 실행감독을 완료했다는 보고서가 있다. 이에 의하면 보조금은 총 경비액의 8할 상당 및 그 이자액 원리상환수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주요 내용
			수료로 한다고 되어 있다.
CJA0011289	사방사업계획서	1935	전북 지역 사방사업 계획서이다.
CJA0011168	국비 및 제2차도비 사방사업 실행보고서류	1936	1936년 경기도 사방공사의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164	사방사업설계서류	1936	<낙동강유역사방사업설계서 제출의 건> 등이 수록되었다. 소화 11년도 낙동강유역 사방사업 계획서 목차가 있는데, 이에 의하면 시공 면적은 총 3,976맥(陌)이고 설계액은 1,203,290원 28전이다.
CJA0011200		1936	충북 지역 사방사업 설계서이다.
CJA0011201		1936	충남 지역 사방사업 설계서이다.
CJA0011202		1936	전북 지역 사방사업 설계서이다.
CJA0011203	사방사업설계서	1936	경북 지역 사방사업 설계서이다.
CJA0011205	사방사업설계서류	1936	
CJA0011206		1936	
CJA0011207	사방사업설계서	1936	황해도 지역 사방사업 설계서이다.
CJA0011208		1936	경남 지역 사방사업 설계서이다.
CJA0011209		1936	
CJA0011210	낙동강사방사업설계서	1936	경북 지역 사방사업 설계서이다.
CJA0011216	사방사업실행보고서류	1936	충북 지역 사방사업 설계서이다.
CJA0011217		1936	경북 지역의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주요 내용
CJA0011218		1936	경기도 지역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219	사방사업실행보고서	1936	<기설 사방공사 복구사업 실행 보고의 건> 및 경기도 사방시설 복구사업 실행보고서가 수록되었다. 기존에 사방공사를 실시한 지역에 홍수 등이 발생하여 시설이 유실된 경우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시행한 사방사업으로서, 그 실행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하여 총독부로부터 소정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본 문서에는 공사를 시행하게 된 원인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사방사업 관련 여타 문서들과 같이 공사비용 단가만 표로 정리되어 있다.
CJA0011454	사방사업계획서	1935~1937	경상북도 달성군의 국비 사방사업 계획 변경인가 등이 실려 있다.
CJA0011292			황해도, 강원도,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의 사방사업 계획서이다.
CJA0011220	사방사업실행보고서	1936	경북에서 진행된 보수 사방공사 실행 보고서로 사방공사 실행보고서와 동일하게 설명서는 없고 경비 계산만 나열되었다.
CJA0011226	냉해한해 사방사업비 국고보조서류	1936	<냉해이재 자구제시설 지반보호공사 보조의 건>, <소화 11년도(1936년) 흉작구제 지반보호공사비 국고보조 신청>, <소화 10년도(1935년)냉해이재자 구제시설 지반보호공사 실시의 건> 등의 문서가 수록되었다. 사업 대상지는 함남 장진군 신남면 외 1개군 3개면이었다. 이외에도 '임정 을 40호-소화 11년 5월 18일 함남産 제623호' <냉해한해자 구제시설 지반보호공사 국고보조의 건>의 문서에는 국고보조금으로 44,800원을 보조한다고 나온다. 이에 의하면"함남에서 오지 고지대는 최근 3년간 흉작 소화 10년(1935) 가을의 냉해가 심하여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자 다수, 화전적지가 다수이며 토질이 약한 부지가 많으며 농경상 가장 긴요한 비토도 유실된 상태이다. 이에 지반보호공사를 시행하고 농경지를 보전하는 것을 도모한다. 본공사 실시로 말미암아 임금 살포에 의하여 이재민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고 되어 있다. 다음으로 '지반보호공사실시예정표'가 수록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장진군 신남면 실시면적 200정보에 총 살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주요 내용
			포노은 19,200원을 들여 사방사업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그 외에도 갑산군 장진면 60정보(정보당 단가 109원 총액수 중 살포임근 5,760원), 갑산군 동인면 60정보 (단가 109원 총금액 6540원 살포임금 5760원) 동중흥면 30정보(109원 3,270원 임금 2,880원 계 350정보 총 38,150원 임금 33,600원) 등지에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관련 내용이 소상히 적혀 있다. 이 외에도 시공면적 시공비 계산되어 있는데, 이 문서는 소화 11년(1936년) 10월 6일 함남지사가 작성한 것으로 이에 의하면"장진군 신동면 제1구역, 삼수군 삼수면 제1구역, 갑산군 장평면 1구역, 진동면 1구역, 동인면 1구역, 운흥면 1구역 총면적 387.89맥에 대해 시공비 38,148엔 33전을 들여 사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각 각 공정별 단가표도 이어 나오는데, 특이한 것은 장진군 신남면 제1구역 지반보호공사 설계설명서에 화전의 현황 등이 간단히 소개된 점이다.
CJA0011291	사방사업계획서	1937	경남 지역 국비사방사업 계획서이다.
CJA0011296	제2차궁민구제 사방사업비 국고보조지령 및 동 개정	1937	사방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비의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수록되었다.
CJA0011199	사방사업설계서류	1937	경기도 도비 사방사업 계획변경에 관한 건 등 경기도 사방사업 관련 서류와 사업설계서가 수록되었다.
CJA0011295	도영사방사업비국고보조철	1937	경북의 낙동강유역 사방사업 국고보조의 건 등의 문서가 있다. 이에 의하면 국고보조금은 사업비 정산액 및 기채의 실적에 변경이 있을 경우 감액할 수 있고, 소화 12년도에 도비로 시행한 낙동강유역 사방사업의 사업비 중 8할 상당액은 도 기채에 의하여 시행하고, 2할 상당액은 읍면 단위에서 부역에 의하여 부담하지만 국고에서 기채액의 7할 5푼 상당액의 이자 및 상환액에 대하여 본년도에 보조 결정하고 보조액에 대해서는 사업비 정산액 및 기채의 실적에 따라 결정하며, 보조금액은 총사업비의 6할 상당액 및 이자액으로 하는데 소화12년도에는 국고보조 상당액에 대하여 공채발행 수수료 및 증서 제조비로 보조하며, 이율은 5푼이라고 나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주요 내용
			온다.
CJA0011264	사방사업설계서	1937	1937년 황해도 지역 한해이재민 구제 사방사업의 설계서이다. 황해도에서는 이 해에 사업비 예산총액 6만 620엔을 들여 사방사업을 실시했는데 그 중에 임금 살포액은 5,956엔으로서 공사비의 85%였다. 시행 장소는 4개군 5개면 5개구역 시공면적 304맥이었다.
CJA0011270	사방사업실행보고	19377	경기도 지역의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273			소화 12년도 사방사업 실행보고의 건이다.
CJA0011276			경북지역의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278			경남 지역의 사바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280			황해도 지역의 사바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281			사방보수사업 실행보고서 제출의 건 등이 수록되었다. 경기도, 경북 등 각지의 보수실행보고서가 있다.
CJA0011282			충북 지역의 국비 도비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288	사방사업계획서	1937	충남 지역 사방사업계획서이다.
CJA0011286	사방사업계획서류	1937	경기도의 국비사방사업계획서와 인가 관련 문서들이다. 이에 의하면 경기도의 황폐지는 30,336정보이고 그 중에서도 한강 유역에 속한 황폐 격심지는 5,826정보였으며 이중 반수인 2,913정보를 15년간 공사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CJA0011287	사방사업계획서	1938	<소화10년 이래 3개년간 국비사방사업계획변경의 건> 등의 문서가 수록되었다.
CJA0011319	사방사업설계서	1938	경기도 지역 사방사업 설계서이다.
CJA0011320		1938	
CJA0011321	사방사업설계서	1938	충북 지역의 사방사업 설계서이다.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주요 내용
CJA0011322		1938	충남 지역의 사방사업 설계서이다.
CJA0011323	사방사업설계서	1938	
CJA0011335	사방사업설계서	1938	황해도 지역 사방사업 설계서이다.
CJA0011325	사방사업설계서	1938	경북 지역 사방사업 설계서가 수록되었다.
CJA0011326		1938	
CJA0011327		1938	
CJA0011328	사방사업실행보고	1938	
CJA0011329	사방사업설계서	1938	
CJA0011330		1938	
CJA0011331	사방사업설계서	1938	경남 지역 사방사업 설계서이다.
CJA0011332		1938	
CJA0011333	사방사업설계서	1938	<소화1 3년도 낙동강유역 사방사업설계에 관한 건> 등 수록되었다.
CJA0011334		1938	경남 지역 사방사업 설계서이다.
CJA0011336	사방사업설계서	1938	강원도 지역 사방사업 설계서이다..
CJA0011337		1938	
CJA0011339	사방사업실행보고서	1938	경기 지역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주요 내용
CJA0011340		1938	
CJA0011341	사방사업실행보고서	1938	충북 지역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342	사방사업실행보고서	1938	충남 지역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343		1938	전북 지역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344	사방사업실행보고서	1938	경북 지역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345		1938	
CJA0011346		1938	
CJA0011347		1938	
CJA0011348		1938	
CJA0011349		1938	
CJA0011353	사방사업실행보고서	1938	황해도 지역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350	사방사업실행보고서	1938	경남 지역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351		1938	
CJA0011353		1938	강원도 지역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354		1938	경기도, 전남북 지역 사방사업 실행보고서
CJA0011355		1938	경북, 경남, 황해, 평남, 평북, 강원, 함남, 함북 지역의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356	도영사방사업비국고보조철	1938	<소화 13년도 낙동강유역 사방사업비 국고보조의 건>이 수록되었다.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주요 내용
CJA0011361	사방사업실행보고	1938	경북 지역 사방사업 설계서이다.
CJA0011362		1938	전남 지역 사방사업 설계서이다.
CJA0011359	사방사업시행인가서	1938~1940	충남 지역의 사방사업 계획서가 수록되었다.
CJA0011489	조림관계서류	1939	제11회 및 제12회 사방강습회 개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수록되었다.
CJA0011360	사방사업실행보고	1939	충북 지역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363		1939	경기도 지역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364		1939	경기도 지역 민영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366	사방사업실행보고	1939	경북 지역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365		1939	
CJA0011367		1939	
CJA0011368		1939	
CJA0011369		1939	
CJA0011370	사방사업실행보고	1939	경남북 지역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371	사방사업실행보고	1939	경북 지역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372		1939	
CJA0011373		1939	
CJA0011374	사방사업실행보고	1939	경남 지역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375		1939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주요 내용
CJA0011376		1939	
CJA0011377		1939	
CJA0011378	사방사업실행보고	1939	강원도, 경북, 함북, 경남, 황해도 지역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379		1939	황해도, 평남, 평북 지역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380		1939	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북, 경남, 황해도, 평남, 평북, 함남, 함북 지역의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384	도영사방사업비국고보조철	1939	경남 지역 도비 사방사업비 국고보조 신청서류로 <낙동강유역사방사업비 국고보조의 건> 등이 수록되었다.(낙동강유역사방사업은 도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사업구역 내 주민들로부터 징수하는 금액과 도비에서 염출하는 금액에다가 총독부의 보조금을 합쳐 조달하였음)
CJA0011385	사방사업실행보고	1938	경성부 홍제정,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우이리, 양주군 주내면 광사리 등에 대한 사방사업 설계서 및 추가설계서가 수록되었다.
CJA0011386		1939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상양혈리 일대에 대한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411	사방사업실행보고	1940	경기도 지역의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412		1940	
CJA0011413		1940	
CJA0011414		1940년	
CJA0011415	사방사업실행보고	1940년	충북 지역의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416		1940년	
CJA0011417		1940년	충남 지역의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주요 내용
CJA0011418		1940년	
CJA0011419		1940	
CJA0011420	사방사업실행보고	1940	전남 지역의 <소화 15년도 사방시설수선 및 보식보고>가 실렸다.
CJA0011421		1940	전북 지역의 <소화 15년도 한해대책시설 사방사업(야계공사) 실행보고> 관련 기록이 실렸다.
CJA0011422		1940	전북 지역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423		1940	전북 지역에서 행해진 '한해대책야계공사'의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424	사방사업실행보고	1940	경북 지역에서 행해진 사방사업의 실행보고서이다.이다.
CJA0011425		1940	
CJA0011426		1940	
CJA0011427		1940	
CJA0011428		1940	
CJA0011429		1940	
CJA0011430		1940	
CJA0011431		1940	
CJA0011432		1940	
CJA0011433	사방사업실행보고	1940	충북, 경북 지역의 사방사업실행보고서이다.
CJA0011434		1940	경북 지역에서 행해진 사방사업의 실행보고서이다.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주요 내용
CJA0011435		1940	
CJA0011436		1940	경남 지역에서 행해진 사방사업의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437		1940	
CJA0011438	사방사업실행보고	1940	경남 지역에서 행해진 <소화 15년도 한해대책시설비 사방사업>과 관련된 실행보고서가 실렸다.
CJA0011439		1940	경남 지역의 <소화 15년도 한해대책 사방사업 실행보고의 건>에 의하면 1940년도의 극심한 한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계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CJA0011440		1940	경남 지역의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441		1940	황해도의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442		1940	강원도의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443		1940	평남, 함북의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444	한해대책 사방사업 국고보조철	1939~1941	한해 구제사업 실시요강이 실렸다. 한해구제사업비는 토지개량사업비, 사방사업비, 도비 및 부업장려비를 도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할 것이며,"금회의 한해는 피해의 정도가 격심한 관계로 구제사업비가 다액에 달하고 국고보조는 종래와 같이 금액을 일시에 교부할 것이 불가능하여 원칙적으로 도채 상환보조의 방법에 의할 예정으로서 국고보조 상당액을 함께 기채하는 것으로 하고 연5푼 기채연도 내 거치 15년 반으로 년 상환액을 공채발행할 것"이라고 언급되었다. 이어 구제사업비에 관한 예산 및 도채를 의결하기 위해 도회 소집함에 있어서는 국고보조방법의 변경에 따라 도채및 예산의 변경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전결 처분할 수 있도록 미리 의결하도록 할 것, 국고보조에 기초한 구제기간은 12월 초부터 익년 5월 말에 이르는 6개월로 할 것 등이 명시되었다. 그 외에도 겨울철 동결로 인한 공사난, 기타 제반의 사정에 따라 착수 시기를 신중히 고려할 것, 기계류를 요하는 공사는 가급적 피할 것, 도에서 시행하는 임금 살포 공사라고 하더라도 청부업자로서 일을 맡도록 하지 말고 읍면에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주요 내용
			이를 위임할 것. 요구조자가 받은 임금소득에 대해서는 각호의 생계상태를 미리 조사하여 두고 궁핍의 정도에 응하여 지출하며 빈핍의 자라고 하더라도 가급적 최소한도 소요생활비인 1일 40전 이상을 지급하지 말 것, 잔여액을 지급할 때는 강제 저축할 것, 1호당 1일 소요 생활비 40전은 5인가족 1호 최소 한도의 곡물 소비량 1되 3홉을 표준으로 하여 정한 금액으로서 총독부에서 곡물 가격 및 배급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한 것이어도 도에 따라 맥속 등의 가격으로 수급하는 등에서는 지방 사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는 등의 여러 가지가 실려 있다. 이상 각 항의 실시에 대해서는 국민정신총동원부락연맹, 애국반, 농촌진흥회 등과 밀접히 연락하도록 할 것 등 행정 조치에 관한 내용도 수록되었다.
CJA0011460	사방사업실행보고	1941	경기도의 <소화 16년도 야계공사 실행보고서>가 수록되었다.
CJA0011461		1941	충남 지역의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462		1941	충남 지역의 <소화 16년도 도비 야계공사(경지보전공사)실행보고>가 실렸다.
CJA0011464		1941	전남 지역 <소화 16년도 국비 및 도비 사방사업 실행보고>이다.
CJA0011463		1941	충북 지역의 사방사업 실행보고이다.
CJA0011465		1941	<소화 16년도 국비 도비 민영 및 경지보전사업 실행보고서>가 수록되었다.
CJA0011466		1941	전북 지역의 사방사업실행보고이다.
CJA0011467		1941	경남 지역의 사방사업실행보고이다.
CJA0011468		1941	
CJA0011469		1941	경남 지역의 야계공사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470	조림서류	1941	
CJA0011471		1941	경남 지역의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472		1941	경북 지역의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주요 내용
CJA0011473		1941	경남 지역의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474		1941	경북 지역의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475		1941	
CJA0011476	야계공사실행보고	1941	경북 지역의 야계 공사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477		1941	
CJA0011478		1941	
CJA0011479	낙동강유역사방사업 실행보고	1941	경북 지역의 낙동강유역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480		1941	
CJA001148		1941년	
CJA0011483	사방사업실행보고	1941	황해도, 함남, 함북 지역의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457		1941	경기도의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458		1942	충남 지역의 <소화 18년도 도비 사방사업 실행보고 제출의 건> 등이 실렸다.
CJA0011482	낙동강유역사방사업 실행보고	1942	경북 지역의 낙동강유역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이다.
CJA0011290	사방사업계획서	1943	필지분할로 사방사업 공사 지구에서 제되된 곳에 대해 기존에 내린 사방사업 지구 지정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었다.

<표 24>에 소개한 것은 대개 사방사업 시공에 소요되는 단가를 계산, 기재한 것들로서 내용은 대체로 비슷한 편이다. 그런데 《낙동강유역 사방사업비 국고보조지령 및 동개정철》(CJA0011181)의 경우 시공과정별 단가표 외에 사방사업에 동원된 부역의

부과 기준이 나열되어 주목을 끈다. 이 자료는 봉화사방사업소에서 작성한 <낙동강유역 사방사업 부역부과조>라는 문서에 기록되었다.

'낙동강유역 사방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부역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노동력을 조달하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부담이 무척 큰 편이었다. 이 문서에 나타난 부역 부과 기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내성면의 소화 10년도(1935) 부역부과 내역은 다음과 같다.

1등급 – 등급표준(부과 대상자의 재산 표준액) 7,000엔~5000엔, 현주(現住)하는 호수 1호, 부과원수 60명(부과원수란 부역에 참가하는 할당된 인원을 의미한다. 대개 인부 고용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1등급으로 분류된 자는 60명 인부 고용에 소요되는 돈을 납부하는 것이었다.)

2등급 – 등급표준 5000~3000엔, 현주 호수 2호, 부과원수 각 55명

3등급 – 등급표준 3000~2500엔, 현주 호수 4호, 부과원수 각 50명

4등급 – 등급표준 2500~2000엔, 현주 호수 5호, 부과원수 각 46명

5등급 – 등급표준 2000~1500엔, 현주 호수 10호, 부과원수 각 38명

6등급 – 등급표준 1500~1200엔 현주 호수 9호, 부과원수 각 32명

7등급 – 등급표준 1200~1000엔 현주 호수 8호, 부과원수 각 34명

8등급 – 등급표준 1000~900엔, 현주 호수 11호, 부과원수 각 30명

9등급 – 등급표준 900~800엔, 현주 호수 15호, 부과원수 각 27명

10등급 – 등급표준 800~700엔, 현주 호수 13호, 부과원수 각 24명

11등급 – 등급표준 700~600엔, 현주 호수 14호, 부과원수 각 21명

12등급 – 등급표준 600~500엔, 현주 호수 17호, 부과원수 각 18명

13등급 – 등급표준 500~400엔, 현주 호수 31호, 부과원수 각 16명

14등급 – 등급표준 400~300엔, 현주 호수 44호, 부과원수 각 14명

15등급 – 등급표준 300~250엔, 현주 호수 62호, 부과원수 각 12명

16등급 – 등급표준 250~200엔, 현주 호수 61호, 부과원수 각 10명

17등급 – 등급표준 200~150엔, 현주 호수 104호, 부과원수 각 8명

이상의 부역 부과 표준은 면 지역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편이었는데, 대개 면 부과금의 일종인 호별할 부과 방식과 동일했다. 같은 문서에 의하면 낙동강 사방사업 관련 부역은 부담이 높은 편이어서 생각보다 납부 성적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 8,835,000엔이었는데, 그 중 국고보조가 5,151,000엔이었고, 도비부담 1,917,000엔, 면의 부담은 1,767,000엔이었다. 사업 기간은 1935년부터 10개년으로 계획되었다. 사업 실시를 위해 지역 주민에 전가된 경비는 도제(道制) 46조의 규정에 따른 부역부과에 따라 총사업비의 2할 가량에 달했다. 도비는 기채에 의하여 지출하는 편이었고, 그 상환 재원은 일반도비, 임산수입, 지세부가세, 호세 및 가옥세의 제한 외 부과 등이었다.

또 《조림관계서류》(CJA0011490)에는 <사방사업실시에 관한 감사장의 건>(전북 정읍군 칠보면 송○○ 외 114명이 제출한 것)이 실려 흥미를 끈다. 이에 의하면 칠보면 황폐림 임야는 284정보로서 그 때문에 매년 한수해(旱水害)가 심했으며, 126정보의 임야에 사방사업을 기공하여“여름 호우의 시에 사소한 피해도 없고 연례 기아에 빠졌던 궁민들도 본 공사에 출역하기 때문에 안심하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에“사방사업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감사장을 제정하는 바 공람하시기 바란다”고적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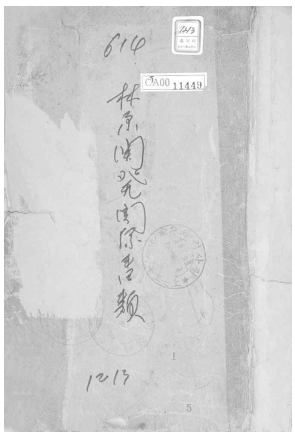
이 외에도 경북 문경군 영순면에서 문○○ 외 57명이 제출한 진정서가 있다. 이는 문경군 영순면에서 1931년 이래 ‘궁민구제사업에 의한 사방사업’을 실시한 바 사업 축소의 결과 주민들이 생활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으므로 사방사업을 계속 실시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 밖에도 <자력갱생휘보 송부의 건>, <복명서>(소화 9년도 사방공사 계획심사 – 충북 청주, 진천, 보은 각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방공사 계획심사를 위해 당국자가 출장을 다녀온 후 작성한 보고서) 등에 의하면 충청북도의 1934년 사방공사는 공사비 총액 16만 4,334엔(국비 24,080엔 시국국채 18,040엔 궁민구제비 6800엔 제2차궁민구제비 11만 5,414엔)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는데, 6개군 12면 15구역(내 신규 시업 3개면 3개구)이 사업 대상지였던 것으로 나온다. 이 문서에 이어 <소화 10년도 임금을 살포한 각종 공사에 대한 실적 및 지출예상액 및 임금조서>가 수록되어 주목을 끈다.

궁민구제 사방사업의 경우 아직까지 구체적인 연구 성과가 나오지 않는 분야이다. 이들 기록물들이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5

일제문서해제 (임정편)

관련 기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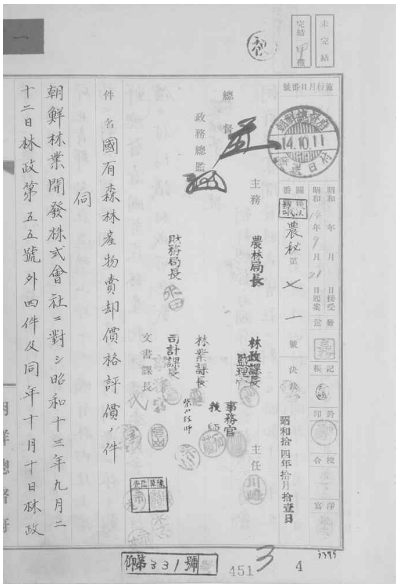
국유임야개발관계서류
(國有林野開發關係書類)

- 생산연도 1941년
- 생산기관 총독부 농림국
- 관리번호 CJA0011449
- M/F 1310091-5660
- 총페이지 20면

조선총독부는 민유림의 소유자를 조선임야조사사업을 거쳐 법인하고, 불요존국유림에 대해서는 대부, 양여 등의 방법으로 권리 관계를 정리한 다음 소유자와 대부자(차지권자)에게 조림의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 때 민유림 소유자들과 대부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삼림조합을 이용하여 조림을 강제하거나, 사방사업을 추진하여 조선인 노동력을 동원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총독부 임정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 '조림'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조선총독부는 요존 국유림은 산물을 적당히 이용하는 방식을 취하는 한편, 임상이 우수한 민유림은 이를 민간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나아가 기타 민유림과 대부림도 기회가 닥칠 때마다 산물을 벌채하여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특히 193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전쟁으로 목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조림'에서 '벌채·이용'으로 임정의 방침을 수용하였는데, 그 결과 1941년에도 '민유림' 1정보당 입목축적은 13.4㎥에 지나지 않던 것이 1946년에는 더욱 악화되어 8.8㎥로 떨어지게 되었다. 당시 일제는 스스로도 매년 적정 벌채량이 5,833,978㎥인데도 실제로는 8,583,466㎥가 벌채된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 기록물철과 관련이 있는 조선임업개발주식회사는 장래의 목재 수요에 대비해 미리 조림을 해두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조선총독부가 동양척식회사, 왕자제지(王子製紙), 미츠비시제철, 노구치(野口), 남조선철조회사, 조선화재해상보험, 조선신탁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1937년에 세운 회사이다.



<그림 22> ≪국유임야개발 관계서류≫(CJA0011449)에 수록된 <국유삼림산물 매각가격 평가의 건>

이 회사는 총독부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 일례로 조선총독부는 투자에 참여한 민간 기업가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국유림 50만 정보를 대부, 불하하는 한편 매년 국고에서 보조금을 지출하고, 제21영업연도까지 주주배당금이 불입주식 금액의 연 5푼에 미치지 않으면 그 차액을 조선총독부가 보전할 것 등을 약속하였다.

실제로 조선총독부는 조선임업개발회사가 만들어진 직후 경상북도 영주, 예천, 강원도 영월 등지의 국유림 2만 5천 정보를 곧바로 회사에 대부하여 주었고, 1938년에도 강원도 울진, 함경남도 홍원, 북청, 고원, 문천 등지의 국유림을 대규모로 조림대부하는 등 1939년까지 총 22만 정보를 넘겨주었다. 또 이들 임야에 대한 조림에 약 2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총 20년 동안 4,8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특혜에도 불구하고 조선임업개발회사는 조림보다는 벌목·판매 사업에 뛰어들었고, 그 결과 한 해 약 80,000여 원의 벌목 수입을 거두어들였다.

이 기록물철에는 조선임업개발주식회사의 임야 대부 신청과 관련된 문서, 대부기간 연기원 등의 문서가 수록되었는데, 주요 문서로는 <국유임야 대부기간 연기원에 관한 건>, <국유임산물 매각원의 건>(함경남도 단천군 일대 국유림에서 생산된 목재의 매각을 임업개발주식회사가 신청한 건), 임업개발주식회사 제출한 임산물 매각원에 따라 총독부 관계자가 출장하여 산물 가격을 조사한 후 작성한 <복명서>, <조선임업개발주식회사 대부임야에 관한 건> 등이 있다.

수록된 문서의 대부분은 임업개발주식회사의 대부 및 산림산물 매각원과 관련된 것이지만 조선수전주식회사가 제출한 대부원, 경성부에서 작성한 <소화 16년도(1941) 관행 제탄사업 계획에 관한 건> 등의 문서도 있다.

이 외에도 몇 건의 임업개발주식회사 관련 기록물철이 있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 <표 25>와 같다.

<표 25> 임업개발주식회사 관련 기록과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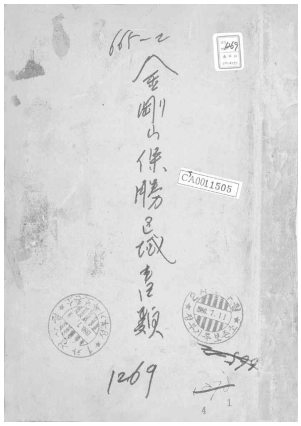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주요 내용
CJA0011500	임업개발주식회사서류	1939	<국유임야 대부원에 관한 건> 등의 문서이다.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이리에 소재한 국유림을 조선임업개발주식회사가 대부받는 것과 관련된 절차에 따라 생산된 문서들이 수록되었고, 이외에도 <국유임야임산물매각원허가의 건>라는 제목의 문서도 있는데, 충북 단양군 영춘면 소재 태화산 국유림 내에서 생산된 산물을 신탄재로 이용하기 위해 조선임업개발주식회사가 매각원을 제출한 바, 이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CJA0011446	조선총독부국유임산물평가위원회서류	1939	1938년에 작성된 <국유삼림산물매각 가격 평가의 건> 외 4건의 문서가 있다. 조선임업개발주식회사에 대한 등으로 대부허가된 충북 단양군 함남 덕원군, 고원군, 영흥군, 홍원군, 북청군 소재 도락산 외 14개소 국유림 내 '지상 산림 산물'에 대한 가격 조사와 관련된 내용이다. 조선총독부는 '국유삼림산물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가격을 평가한 후 그에 따라 대부지 내에 식생하는 나무를 임업개발회사에 매각하였다. 이 문서에는 당시에 국유삼림산물평가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부림의 임상 상황과 해당 지구 내 원목의 매각 가격표가 간결히 제시되었다. 한편 기록에는 '조선총독부국유삼림산물평가위원회보고서'가 부속되어 있는데 이에는 위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충북 단양군, 함남 덕원군·고원군·영흥군·홍원군·북청군 소재 국유림 내 지상 삼림산물의 불하 가격이 제시되었다. 임업개발주식회사는 이 가격에 따라 나무를 매입한 후 가공 판매할 예정인 것으로 되어 있다.
CJA0011449	국유임야개발관계서류	1941	조선임업개발주식회사의 임야대부 신청 관련 문서, 대부기간 연기원 등의 문서가 수록되었다.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주요 내용
CJA0011559	회사(임업개발주식회사) 관계	1940	<국유임야 대부원에 관한 건> 등의 문서이다. 강원도 통천군 임남면 능월리 소재 국유 임야를 이해준이라는 조선인이 광업 용지로 대부 신청하였으나 이 지역이 조선임업개발주식회사 대부 예정지로서 타인에게는 대부가 불가하다는 통지 내용이 담겨 있다.
CJA0011565	임업개발회사서류	1941	1941년 1월에 작성된 <국유임야 대부원에 관한 건> 등의 문서이다. 이에는 원래 조선임업개발주식회사가 대부를 신청할 예정이던 곳을 일본특수요업주식회사, 미츠비시광업주식회사 등에게 대부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결정서와 대부계약서 등이 수록되었다.

16

일제문서해제 (임정편)

보승(保勝) 관련 기록물



금강산보승구역서류
(金剛山保勝區域書類)

- 생산연도 1940~1942년
- 생산기관 총독부 농림국
- 관리번호 CJA0011505
- M/F 1310091-5696
- 총페이지 575면

금강산보승사업은 1930년 1월에 개최된 '금강산 보승에 관한 타합회'의 결정에 따라 내·외금강을 연락하는 전철 부설 및 장안사 부근 소도시 조성 계획, 금강산천연기념물조사, 숙박휴양시설조사 등을 추진하기로 한 일련의 정책을 지칭한다. 조선총독부는 금강산 일대의 풍치 보존, 금강산 내에 존재하는 광물 자원의 개발, 경승지 소개 선전 사업의 시행 등을 통해 금강산 공원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자 하였는데, 본 기록물철에는 그러한 사업의 추진 상황과 관련된 문서들이다.

이 기록물에는 <광업용지로 대부 중인 국유임야 사용 상황의 건>, <국유임야대부지 반환에 관한 건>(강원도 고성군 외금강면 온정리 일대 임야를 대부받은 금강특종광산주식회사가 도벌을 한 상황이 발견됨에 따라 이를 반환하도록 한 조치와 관련된 문서), <내금강 간이숙박소에 관한 건>, <국유임야 사용 승인의 건>(강원도 회양군 내금강면 신풍리 일대 임야에 대한 재단법인 금강산협회의 사용권 인정), <금강산 국유임야의 일부 대부원 허가의 건>(재단법인 금강산 협회가 회양군 내금강면 신풍리 산22번지에 운영하는 휴게소 부지의 사용을 허가하는 건), <국유임야 대부원>(강원도 회양군 내금강면 신풍리 일대 임야에 대한 금강특종광산주식회사의 대부원 처리 건) 등이다.

이들 문서는 여타 자료에 등장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가치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아직 이 주제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된 바 없으나 향후 이 기록물 분석이 본격화될 경우 금강산 일대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사업 일반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이외에 금강산 보승사업과 관련된 기록물을 소개하면 <표 2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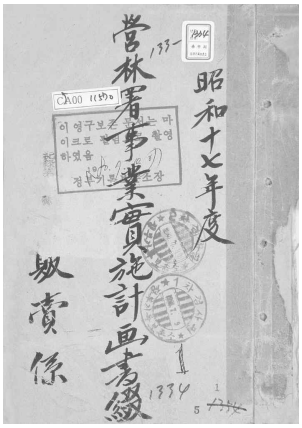
<표 26> 금강산 보승사업 관련 기록과 주요 내용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주요 내용
CJA0011505	금강산보승구역 서류	1940~1942	강원도 고성군 외금강면 온정리 일대 임야를 대부받은 금강특종관산주식회사가 도벌한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이를 반환하도록 한 문서로, 강원도 회양군 내근강면 신풍리 일대 임야에 대한 재단법인 금강산협회의 사용권 인정 관련 문서, 금강특종광산주식회사의 대부원 처리 관련 문서 등이 수록되었다.
CJA0011536	영림창 관내도면 및 기타관계서류	1930	실제로는 금강산보승협의회 관련 문서이다. 금강산 보승에 관한 협의회 개황, 제2회 금강산 보승에 관한 협의회 개황, 금강산 보승에 관한 임시협의회 개황 등의 자료이다. 1930년 1월에 개최된 '금강산 보승에 관한 협의회'는 내, 외금강을 연락하는 전철회사 부설 문제, 장안사 지구 개발 계획, 금강산 내 숙박휴양시설 조성 문제, 명승지 경영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사항 외에도 금강산 개발을 위해 금강산 내 사유림(寺有林)을 국유로 편입하는 문제, 경승지구 내에 탐승지를 설치하고 휴게소를 건설하는 문제, 광석 채굴 등에 관한 출원에 대한 처리 방침 등이 추가로 논의되었다.
CJA0010472	금강산보승에 관한 협의회 서류	1931	3차 금강산보승사업 업무협의회 논의 내용이다. 이 회의에서는 해금강과 삼일포를 공원구역에 넣을 것인지의 여부, 사유림을 국가에 위탁하여 경영하도록 할 것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이 외에도 금강산 내 '주요시설개소별 일람표'가 있으며, 장안사 유료박물관, 정양사 휴게소, 만폭동 매점, 백운대 전망소 등의 문제가 논의되었다. 문서의 말미에 국립공원법안이 전재되었다.

17

일제문서해제 (임정편)

영림창·영림서 관련 기록물



영림서사업실시계획서철 (營林署事業實施計劃書綴)

- 생산연도 1942년
- 생산기관 총독부 농림국
- 관리번호 CJA0011570
- M/F 1310091-5751
- 총페이지 657면

1942년도 요존 국유림을 관리하기 위해 각지에 설립되었던 영림서의 사업 실시 계획, 관행 작벌 및 제재사업 실시 계획, 삼림토목사업 실시 계획서가 담긴 기록물철이다. 일제가 국유림을 관리하기 위해 별도 기관을 둔 것은 1907년 5월의 일로서, 당시에 통감부는 압록강과 두만강의 삼림 자원을 독점하기 위해 이 지역에 영림창을 설치한 바 있다.

통감부 영림창은 이듬해 압록강채목공사를 설립하여 압록강의 표류목 사업, 제재사업 등에 진출하였는데, 조선총독부 관제 공포 이후에도 조선총독부 영림창으로 이어졌다. 이후 일제는 식산국 산림과와 영림창으로 이원화되었던 임정 기구를 1926년에 통일하여 산림부를 설치하고, 영림창이 관리하던 국유 임야의 관리를 위해 지방 주요 관리처 36곳을 정하여 영림서를 두었다.

영림창은 원래 압록강 유역에서 사업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압록강 연안 벌채와 함께 떠내려오는 표류목 관련 사업을 함께 개시하였다. 표류목은 압록강 상류의 양안에서 벌채한 나무를 강에 띄워 운반한 것으로서 러시아가 이미 1902년 용안포에 제재 공장을 세워 표류목 수집과 가공에 뛰어들었다. 일본은 통감부 영림창 설치와 함께 이 사업을 계승하였는데 마침 1908년에 압록강의 중국측 대안인 안동현에 중국이 채목공사(採木公司)를 설립하고 표류목 사업을 벌였다. 압록강 대안에서 채목공사와 통감부영림창이 표류목 확보를 두고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측간에 분쟁이 심화되다가 1909년 「표류목정리규칙」을 양측이 합의하여 이에 따라 처리하게 되었다.

한편 영림창은 관내 목재의 이용을 위해 1913년부터 간이(簡易)시업안을 편성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대해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기 때문에 1918년 2월에 관업 제274호로 「가시업안(假施業案) 편성규정」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영림창 내 삼림에서 영림창이 수행할 시업으로 개벌 작업, 전갱 작업(주벌목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일정한 갱신 기간 내에 한번 또는 여러 번 나누어 벌채하여 같은 수령 혹은 대체로 비슷한 수령에 가까운 삼림을 조성하는 작업), 택벌 작업(일정한 갱신기를 가지지 않고 해마다 벌채를 하여 수령이 각기 다른 나무를 같은 삼림 내에서 자라도록 유도하는 작업), 왜림 작업(矮林作業, 맹아를 보육하여 새로운 숲을 만드는 작업) 등으로 규정하였다.

「가시업안」에 따른 벌목 작업은 매년 76,000정보에 대해 시행하는 것이었는데, 사업 면적이 영림창 직원 수에 비해 너무 넓어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1937년부터 기수를 증원하고 시업 면적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벌목을 계획하였다. 나아가 1939년 8월에 훈령 제48호로 '조선국유림 시업안 규정'을 발표하여 사업의 범위를 재규정하였다.

일제는 이상의 시업안에 근거하여 1907년부터 이미 영림창 산하에 군용목재창을 설립할 계획으로 압록강, 두만강 유역 임황 조사를 시행하고 유벌(流筏) 계획을 수립하였다. 당해 연도에 일제가 계획한 사업량은 벌목수 140,000척체, 유벌수 60,000척체 등이었다. 이후 작벌량은 매년 변동하여 1939년도에는 총계 1,280,334척체가 벌목되었다. 이 기록물은 1942년에 작성한 시업안이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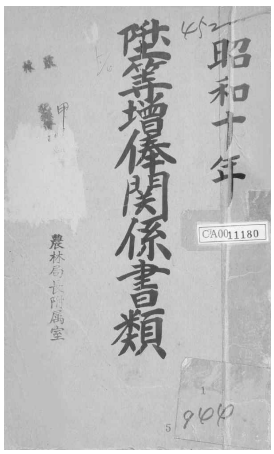
이외에도 《영림서 관계서류》(CJA0011573), 《국유임야 대부허가 서류》(CJA0010654)에 영림창과 영림서의 시업계획안이 수록되어 있는데 《영림서 관계서류》에는 <소화 13년도(1938) 관행작벌 및 제재사업 실시 계획서 사정 요강>, <소화 13년도 벌목 운재 사업계획사정서>, <소화 13년도 유벌사업 실시계획 사정서>, <소화 13년도 삼림토목 사업 실시계획> 등의 문서가 있다. 《국유임야 대부허가 서류》에는 <영림창 영내 임산물 원목 불하원의 건>(왕자제지가 제출한 문서), <영림창 제재공장 폐지에 대한 진정의 건>, <동경(東京)에 대한 영림창재 재급의 건>, <폭풍에 따른 피해 보고의 건>, <마적 습래의 건> 등이 있다.

18

일제문서해제 (임정편)

임면 및 승등, 예규철, 잡건 관련 기록물

1) 관련 기록물



소화10년승등증봉관계서류
(昭和十年陞等增俸關係書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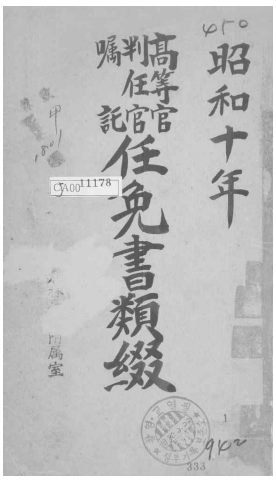
- 생산연도 1935년
- 생산기관 총독부 농림국
- 관리번호 CJA0011180
- M/F 1310091-5459
- 총페이지 682면

농림국 소속 직원의 승진과 증봉과 관련된 문서를 모아놓은 기록물철인데, 임정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농림국 전체 직원의 승진, 증봉 건이 기재되어 있다.

당해 연도에 승진 혹은 증봉 대상이 되는 직원들의 이름과 관명, 경력 등이 고등관, 판임관, 촉탁 등의 순서로 나열되었다. 각 건의 첫 부분에 고등관 승등내신서, 판임관 증봉내신서 등의 문서가 있으며, 뒤로 고등관 정기승등의 건, 고등관 증봉의 건, 판임관 증봉의 건, 촉탁 증급의 건, 영림서 직원 증봉의 건, 용인 정기 증급의 건 등의 문서가 이어진다.

이외에 《승등증봉관계서류》(CJA0011036, CJA0011089, CJA0011293, CJA0011383)라는 제목의 기록물철이 몇 권 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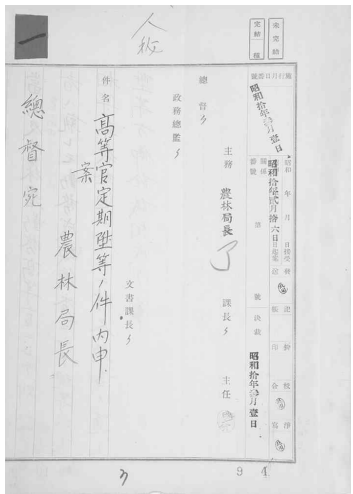
2) 임면 관련 기록물



고등관판임관촉탁임면서류철 (高等官判任官囑託任免書類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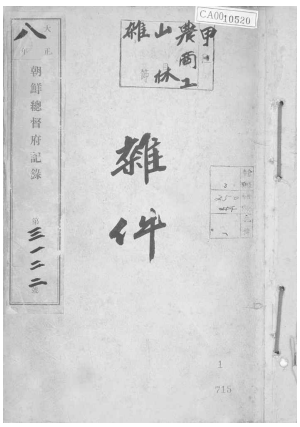
- 생산연도 1935년
- 생산기관 총독부 농림국
- 관리번호 CJA0011178
- M/F 1310091-5459
- 총페이지 682면

임명 혹은 퇴직의 대상이 되는 관리들의 이력서와 사직서 혹은 임명장이 각 건 별로 수록되었다. 퇴직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등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다. 농림국 직원 개개인의 이력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자료이다. 이 외에도≪영림서직원임면서류≫(CJA0011179),≪소화 8년(1933년) 고등관판임관촉탁임면서류≫(CJA0011087),≪소화9년 고등관판임관촉탁임면서류철(1934년)≫(CJA0011137),≪소화9년 영림서직원임면서류≫(CJA0011138)에 이와 동 일한 성격의 문서들이 묶여 있다.



<그림 23> ≪고등관판임관촉탁임면서류철≫(CJA0011180)에 수록된 <고등관 정기승용의 건>

3) 및 잡건 관련 기록물



잡 건
(雜 件)

- 생산연도 1907~1937년
- 생산기관 총독부 농림국
- 관리번호 CJA0010520
- M/F 1310091-4546
- 총페이지 331면

1907년부터 1937년 사이에 만들어진 임정 관련 규정과 국유림 경계조사 보고와 같은 여러 건의 다양한 문서들이 수록된 기록물철이다. 여기에는 조선총독부 당국이 만들어 공포한 규정뿐만 아니라 대부 등과 관련된 문서도 일부 수록되었다. 이 문서들을 나열하면 <표 27>과 같다.

<표 27> 《잡건철》 의 주요 기록과 내용

문서 제목	주요 내용
서면사업구 시업안 조사서의 건	1919년 11월에 식산국장이 양양군 산림과출장소장에게 발송한 문서로서, 강원도 양양군 서면 임업사업구 시업안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구 설명서와 사업시안, 기본도, 임야조사부, 시업기안을 송부 보고하라는 명령을 담았다.
함경남도 신흥군 은전봉(銀前峯)사업구 시업안의건	1919년 12월에 식산국장이 신흥군 은전봉 사업구의 시업안을 작성하기 위해 함경남도 지사에게 보낸 문서이다. 함남 함흥군 및 신흥군에 출장을 다녀온 총독부 기수가 작성한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도록 발송하니 향후에는 이에 기반하여 사업안을 작성하라는 지령이 실려 있다. 문서에는 해당 지역 임야조사부, 사업기안, 시업안 설명서, 기본도, 시업안도 함께 발송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첨부되지 않았다.

문서 제목	주요 내용
국유림 보호명령에 관한 건	1919년 9월에 충북 단양군 영춘면 의풍리 주민에게 내려진 국유림보호명령과 관련된 문서이다. 이에 의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원래부터 해당 산에 입산하여 삼림산물을 채취하는 관습이 있기 때문에 이를 구제하기 위해 보호명령을 발한다고 되어 있다.
국유임야 처분조사의 건 (탄원서)	전남 진도군 의신면장과 주민 일동이 작성하여 조선총독에게 제출한 임야 소유권 사정 관련 탄원서이다.
마시산(馬嘶山) 국유림 산물 매각예정액가표	전남 진도군 지산면 마시산 국유림의 목재 재적과 단가, 재적조서(표준지 목재의 직경 전장 재적 등이 적혀 있음) 등이며, 이어 보식원장 박영효가 해당 지역에서 대부받은 국유림의 현황표가 실려 있다.
원해군용지 내의 토지 처분의 건	1919년 8월에 작성된 문서로서 경남 통영군 장북면 일대에서 조선수산조합과 통영군 학교조합, 기타 조선인들이 기존에 대부받은 임야를 반환하는 내용이다. '승낙서'에는"이미 대부 허가를 받은 곳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필요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만일 관에서 필요하다면 이를 기꺼이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해당 임야가 해군기지 부지에 편입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임야조사에 관한 건	전남도장관이 농상공부장관에게 보낸 문서로서 임야조사사업의 진행상황표가 수록되었다.
국유임야 관리환의 건	일본 육군대신이 1916년에 조선총독에게 발송한 문서이다. 경기도 고양군 한지면 외 남산 국유임야 2정보 가량의 임야(현 이태원 일대) 육군 용산묘지의 면적을 최근 실사한 바, 해당 구역 내에 경성부 공동묘지의 임야가 일부 포함된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를 돌려주되 해당 면적 만큼 육군묘지 부지를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이다.
압록강 표류목에 관한 건 보고	체신국 해사과에서 조회한 내용에 대한 회답이다. 압록강 표류목의 회수, 저장 보관료 현황을 조사해달라는 요청에 응해, 비용을 산출하여 보고한 것이다.
국유임야 구분조사도 송부의 건 조회	1916년 강원도장관이 농상공부장관에게 발송한 문서이다. 강원도 화천군 을종요존림 구분조사도에 하남면 원천리라고 쓰여진 글자가 하남면 논미리의 오기가 아닌지 물어보는 내용이다.
국유임야 기경에 관한 건	1917년에 식산국장이 경기도에 발송한 문서이다. 경기도 국유임야 내 기경지가 토지조사부 상에 전답으로 조사되었는지의 여부와 임야 내에 화전이 행해지는 것이 있다면 현황과 처리 방침을 보고하라는 내

문서 제목	주요 내용
	용이다.
국유산야 대부원 허가의 건	경기도 개성군 중서면 전포동 전포리 일대 임야에 대해 나가노 스스무(長野普)라는 일본인이 대부 신청한 건에 관련된 문서이다. 대부 허가를 위해 행정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땅이 임야가 아닌 전답으로 사정된 것이 확인된 바, 해당 토지가 임야에서 전답으로 지목이 바뀐 이유를 묻는 내용이다. 답변으로 경기도장관이 식산국장에게 발송한 문서가 부속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해당 토지에 원래 화전이 있었고, 측량기사가 임의로 전답으로 사정한 것이라고 한다.
아베마기박피림에 관한 건	경상북도장관이 농상공부장관에게 보낸 문서이다. 경상북도 영천군 금호면 봉죽동의 경상북도유림 내 '아베마기'(굴참나무) 박피 시업구에서 작업한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이다. 굴참나무는 나이가 15년 가량 되면 코르크 껍질이 약 1㎝ 정도로 두꺼워지는데, 이때부터 코르크 껍질을 벗겨내 가공하는 것이 보통이다.(껍질을 벗겨내고 나서 약 8~9년이 지나면 다시 두꺼운 코르크 껍질이 생기는데, 나무 나이가 약 40년 가량 될 때까지 벗겨낼 수 있음) 본 문서는 굴참나무 껍질을 벗겨 코르크마개를 만든 후 결과를 보고한 것이다.
국유임야 차지권 상속계	평남 강서군 강서면 학천리에 거주하는 백○○이라는 조선인이 제출한 차지권 상속계로서 그 부친이 사망한 후 부친이 가지던 대부임야를 상속받고자 한다는 내용이다.
영림창 극인 규정에 관한 건	1917년 제정된 「영림창 극인 규정」의 사용에 관한 지령이 담긴 문서이다. '극인'은 표류목이나 산림산물의 등급 및 소유 주체를 나타내기 위해 찍는 것이다.
국유임야 양여원의 건	함북 길주군 덕산면 대동, 추동, 이목동 일대 임야를 덕산면장에게 모범림으로 양여한다는 내용이다.
용산군용지로써 인도 국유지에 관한 건	1916년 2월 토목국장이 농상공부장관에게 보낸 문서로서 고양군 한지면 여율리 일대가 전부 군용지로 수용되었으므로 해당 지역 내의 국유미간지 및 임야의 대부지를 모두 반환해달라는 내용이다.
국유임야 차수자 거주 변경의 건 보고	평안북도 선천군 신부면 일대 임야의 대부자가 주소를 변경함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한 문서이다.

문서 제목	주요 내용
국유임야 구분조사에 관한 건	1913년 9월 구분조사를 위해 선천군 일대를 조사한 총독부기사 이마무라 마사시치(今村正七)가 농상공부장관에게 올린 복명서이다.
국유림 경계에 관한 건	1913년에 경성부 삼각산의 경계도를 작성한 후 보고하는 내용이다.
경성 성내 북부 국유림 경계 사정의 건	1912년에 경성 북부 인왕산, 백악산의 국유림 경계를 조사하고 결과를 보고한 문서이다.
경성부 성외 국유림 경계 조사의 건	1913년에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성북동, 안암동 일대 국유림 경계 조사를 행하고 결과를 보고한 내용이다.
국유림 경계에 관한 건	1913년에 작성된 경성부 백련산 국유림 경계조사 결과보고서이다. 그러나 지적도 혹은 경계구분도가 첨부되지 않았다.
국유림 경계에 관한 건	1913년에 삼각산 외 7개 국유림 경계조사를 마친 후 보고한 내용이다.
능원묘에 관한 건	1911년에 회릉과 영릉의 부속 임야 경계조사를 한 후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서, 당시 행정구역에 의하면 경기도 시흥군 남면 아방리 소재 능원묘 인근 임야에 관해 이루어진 조사와 관련된 것이다. 회릉과 영릉의 경계실측도가 첨부되었다.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예규철 및 기타 잡건 관련 문서는 이 외에도 몇 건이 더 있는데, 제목과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표 28>과 같다.

<표 28> 예규 및 기타 잡건 관리 기록과 주요 내용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주요 내용
CJA0011177	잡건철	1934~1935	<국유임야의 지번별 면적 조사에 관한 건>, <비아산(比雅山) 국유임야 일부 지적 오류 정정에 관한 건>, <불복신립사건 재결통지에 관한 건>, <혜산선 철도 급수 설비 용지에 관한 건>, <허천강수력발전 계획에 관한 건> 등이다.
CJA0011561	잡건서류철	1940	<소화 15년도(1940) 연중행사의 건>, <가격등 통제령 시행규칙>, <만주국정부의 소맥 매입가격 공포에 관한 건>, <조선과실협회고문방명록>, <신문잡지관보 예약구입에 관한 건>, <신문잡지관보 예약구입에 관한 건>, <2월 1일 애국일(흥아봉공일) 요배식 실시에 관한 건>, <조선신궁 기원절제 집행의 건>, <조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주요 내용
			선인의 성씨제도 창설에 관한 건>, <혼춘지방으로 여행하는 관공리에 관한 건>, <내지도항자의 종두 실시에 관한 건>, <농림국장출장의 건> 등이 수록되었다.
CJA0011569	잡서철 1호	1941	<7월 애국일의 요배식 실시 방법의 건>, <육군시관병식 안내에 관한 건>, <청년훈련소 졸업식에 관한 건> 등이다.
CJA0011571	예규철	1940	<가격등 통제령 제12조의 해석에 관한 건>, <국가총동원법 등의 시행의 통할에 관한 각의 양해 사항의 건>, <가격등 통제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입안 요항 송부의 건>, <조선공업조합령 및 조선상업조합령에 의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관한 건>, <폭리행위 등 단속규칙 제1조 제2항에 규정한 매석 및 동조항 제3항에 규정한 부담부 판매에 관한 건> 등이 수록되었다.
CJA0010437	잡	1917	<토지조사령에 의한 불복신립의 건(경기도일대 불복신청한 개소를 알리는 조회서>, <대부지 반환의 건(경기도 개성군 북면 가토미리일대> <국유림 보호명령의 건(경북 문경군 동로면 일대에 내려진 국유림 보호명령이 담겨져 있음)> 등이 수록되었다.
CJA0010438	예규철	1911~1915	<경성부 내에서의 임야대부 허가 처분에 관한 건>, <토지매매의 경우 입회권에 관한 건>, <영림창 소관 삼림산야에 관한 건>, <분묘 보존에 관한 건>, <삼림산야소유권 증명에 관한 건>, <국유보안림에 관한 건>, <학교림 설영에 관한 건>, <국유임야대부원 기재 방법에 관한 건>, <산림감수의 진퇴에 관한 건> 등이 수록되었다.
CJA0010485		1918	<국유림대부료 체납금 회수의 건>, <대규모 조림대부의 처리방침에 관한 건>, <공동묘지에 관한 건>, <임야상황 보고의 건>, <종묘하부에 관한 건>, <갑종요존예정임야 처분에 관한 건> 등이 수록되었다.
CJA0010519	국유임야에 관한 잡건 철	1919	<임산물 양도원 허가의 건>, <국유림대부 반환 명령에 관한 건> 등이 수록되었다.
CJA0010554	예규철	1920	<입목대금 보관에 관한 건>, <조선임산철도주식회사에 입목 불하의 건> 등이 수록되었다.
CJA0010555		1920	영림창이 관내 삼림에서 임도공사를 할 때 필요한 토석을 국유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주요 내용
			삼림에서 채취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문서들로 <국유토석 채취에 관한 건>, <대부임야 내 고적 보존에 관한 건> 등이 수록되었다.
CJA0010564	국유대부허가서류	1921	<요존예정임야 해제 및 국유림을 도로부지로 조체하는 건>, <국유임야대부지 반환 허가의 건>, <국유임야 공매 처분에 관한 건>, <국유임야 매각 허가의 건> 등 여러가지 종류이다.
CJA0010596	국유임야에 관한 잡건철	1922	<민사소송 제기의 건>, <치산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건>, <국유림대부기간 연장 허가의 건>, <동양척식회사가 작성한 화전에 관한 건> 등이다.
CJA0010598	국유임야 대부허가서류	1922	<국유임야 대부에 관한 건>, <국유임야 대부원 허가의 건>, 수리조합 구역에 개재한 국유임야 무상양여 방법 등이다.
CJA0010614	예규기타서류	1923	<국유임야 대부원허가의 건>, <국유임야 보관환의 건>, <조림사업 성공인정 개정에 관한 건>, <지방모범림 예정지 내 산물 처분의 건> 등이 수록되었다.
CJA0010615		1923	<조림사업성적 계급 및 조림성적대장 개정에 관한 건>, <임업시험의 용도에 쓰기 위한 국유임야 사용의 건>, <국유임야 대부지반환원 및 대부원허가의 건>, <국유임야 양여원에 관한 건>, <보안림 편입에 관한 건> 등 여러가지의 문서가 섞여 있다.
CJA0010616	예규철	1921	<목탄가격보고에 관한 건>, <국유임산물 처분에 관한 건>, <국유임야산물 매각원 허가>, <사사(社寺) 경내지에 쓸 국유임야의 처분에 관한 건> 등의 문서이다.
CJA0010657		1924	<대부임야의 사업 독려에 관한 건>, <지방비 모범림에 관한 건>, <연고림 벌채 출원 취급 방법에 관한 건>,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연고자를 가진 국유임야의 산물 채취에 관한 건>, <조림성공 인정표준에 관한 건> 등의 문서이다.
CJA0010676		1926	<벌목단속 협약 위반에 관한 건(1918년 2월 15일에 동양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주요 내용
			합동광업회사와 총독부가 체결한 계약조항 제2항, 흉고직경 3촌 미만의 수목은 치수로서 전부 잔존하도록 할것을 위반한 건에 대한 손해 배상 관련 문서)>, <압록강주식회사에 관한 건>, <관제개정 설명자료> 등의 문서이다.
CJA0010677	통계철	1922	<목재생산 상황표, 영림창 사업에 관한 건>, <관내 영업 상황의 건>, <임목 벌표의 건>, <통계자료에 관한 건>, <통계조사 자료의 건>, <대정10년 임산물의 건>, <실업자조사의 건>, <직공임은 조사의 건>, <목재생산 상황에 관한 건>, <목재조사의 건> 등 영림창 업무와 관련된 내용의 문서이다.
CJA0010678	예규철	1916~1917	<영림창 용인 규정 중 개정의 건>, <영림창보고례 중 개정의 건>, <목재 및 부산물 매각원 양식 변경의 건>, <영림창보고례 중 개정의 건>, <휴가를 주는 경우의 취급 내규>, <영림창 고용인 근무시간에 관한 건> 등이다.
CJA0011037	행정정리관계 서류(2)	1932	<퇴직특별상여금 지급의 건>, <퇴직특별 사금공채 지급 청구에 관한 건> 등이다.
CJA0011055	잡건철	1931~1933	<독산이용시험에 관한 건(독산이용시험이란 산업용으로 활용가치가 없어 내버려진 민둥산을 다시 산업용 목재의 공급지로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 조사 작업으로서, 민둥산 내 고목의 뿌리를 공업용으로 사용할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기획된 것이었다)>, <국비 사방공사 실행 보고에 관한 건>, 사방사업 실행 감독에 관한 건> 등이다.
CJA0011568	잡서류철	1941	<접수전보(수해피해상황보고)>, <만주개척자료 송부에 관한 건>, <추작 비료 구입 알선에 관한 건>, <도지사회의 부임을 알리는 통지서> 등이 수록되었다.
CJA0010674	국유임야에 관한 잡건 철	1925	조선임야조사사업 종료 후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들에게 포상을 지급한 사실들이 기록되었다.
CJA0010675	영림창관계 잡서류철	1925	수록된 문서는 <요존예정임야조사에 관한 건>, <국유림조사 상대 부지의 처리에 관한 건>, <국유림 지번 및 면적 정정에 관한건>, <임야 지번에 관한 건>, <화전민 경작지 이전지에 관한 건> 등과 같이 구분조사에 관한 문서는 적고, 영림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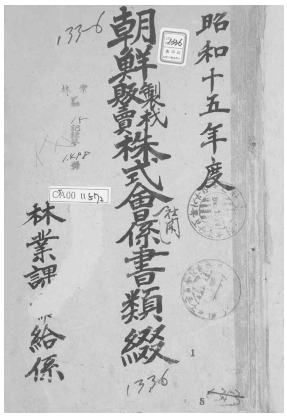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주요 내용
			사무에 관한 서류가 다수를 차지한다.
CJA0010698	국유림보호명령 서류	1921	<오자 정정에 관한건>, <삼림화재 및 도벌예방 보조기관 설치의 건> 등이 수록되었다.
CJA0011034	예규철	1932	<국유임야 공동 차수인 변경이 생긴 경우의 처리 방법에 관한 건>, <국유임야 대부료 징수에 관한 건>, <조림용임야 대부료 사정에 관한 건>, <광업용 국유 임야의 대부 처분에 관한 건>, <기간 만료된 국유임야 대부지에 관한 건>, <국유임야 내 화전민 가옥의 처리에 관한 건> 등이다.
CJA0011298	국유임야조사 기타서류	1937	<국유임야 매각원의 건>, <국유임야 도로부지 소속 전환에 관한 건>, <개측임야도 작성에 관한 건>, <임야에 관한 인쇄물 송부의 건> 등이다.
CJA0010972	국유림 조사에 관한 서류	1931	<행정 정리 실시에 관한 건>, <봉급 예산 경리에 관한 건>, <정리 정원 배치에 관한 건>, <판임관 직원의 승급표준에 관한 건>, <행정정리 퇴직자에 관한 건>, <촉탁원 이하의 급료 기본액에 관한 건> 등이다.
CJA0010597	광무11년 이후 예규철(구분조사)	1907~ 1917	<국유미간지이용법>, <경사지의 취급에 관한 건>, <지적지의 취급에 관한 건>, <향교 부속림의 지적계에 관한 건>, <영년금양의 실부 인정에 관한 건>, <요존예정임야 선정 표준에 관한 건>, <지적 무계의 삼림산야에 관한 건>, <삼림령 실시에 관한 질의의 건>, <삼림산야의 소유권 사정에 관한 건>, <삼림산야 및 미간지 국유사유 구분표준>, <삼림산야 및 미간지 국유사유구분표준에 관한 건>, <영림창 소관 삼림산야에 관한 건>, <국유삼림산야의 분묘 구역에 관한 건>, <삼림산야 및 미간지소유권 증명에 관한 건>, <묘지화장장매장 및 화장단속규칙 시행 준비에 관한 건>, <국유보안림 및 요존예정임야에 관한 건>, <영년금양림의 인정에 관한 건>, <대정원년 조선총독부령 제10호 제1조 제5조의 해석에 관한 건>,

관리번호	기록물철의 제목	생산연도	주요 내용
			<묘지의 용도에 쓰일 국유임야의 처분위임의 건>, <삼림산야 지적계출 유무 취조에 관한 건>, <일본인 이민 단체가 사용할 국유임야의 양여에 관한 건> 등이 수록되었다.
CJA0011558	국유임야 조사서류	1940	<국유임야 경계측량의 방법의 건>, <요존임야 해제 방법에 관한 건>, <국유 임산물 양여의 건> 등이 수록되었다.
CJA0011564		1939~1941	<국유임야 소속환의 건>, <국유임야 내 도로공사 기공에 관한 건>, <국유임야 처분조사 실시의 건>, <조선산악회원 백두산 등반에 관한 건> 등이 수록되었다.
CJA0010848	보관조차반환 기타서류	1929	<보안림 소유자 및 점유자에 대한 조림명령, 보안림 해제의 건>, <보안림 소유자 이동보고의 건> 등이 수록되었다.
CJA0010911	국유림조사관계철	1929~1930	<장산곶 국유임야 불하 대금에 관한 건>, <지방비 경영 모범임야 예정지에 관한 건> 등 여러 가지 성격의 문서이다.
CJA0011501	국유임야조사	1940	<미처분 요존임야 조사에 관한 건>, <모범림일부 양도원 허가의 건>, <귀족회 모범림에 관한 건>, <공동묘지로 양여된 임야의 용도변경원 허가의 건> 등이 수록되었다.
CJA0011484	관리관계서류	1935~1943	<산림보호구 및 국유림보호조합에 대한 사무감사 실시의 건>, <애림 및 녹화운동에 관한 건>, <본부 내 행정기구 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국유임야 관리처분 관계 사항의 건>, <영림서를 도에 이관하는 건에 따른 사무인계에 관한 건>, <산림보호구 설치에 관한 건> 등이 수록되었다.

19

일제문서해제 (임정편)

기 타



15년도조선제재판매주식회사관계서류철

(　　)

- 생산연도　1940년
- 생산기관　총독부 농림국
- 관리번호　CJA0011572
- M/F　1310091-5753
- 총페이지　576면

영림서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취급하던 미츠이(三井)물산 경성 지점과 공영(共營)목재주식회사, 스기하라(杉原)합자회사가 공동 투자하여 1939년 8월에 설립한 조선제재판매주식회사에 관한 서류들이 묶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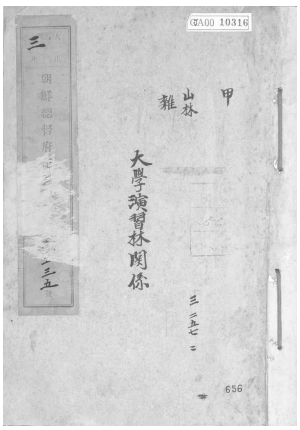
조선제재판매주식회사 설립에 관여한 미츠이 물산과 공영 목재회사는 신의주영림서가 생산하는 목재를 거의 전량 취급하던 회사로서 1938년 조선총독부가 목재 판매 통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자 공동으로 신의주목재판주식회사를 설립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듬해에 총독부가 신의주영림서 생산 목재에 대한 공정가격(公定價格) 제도를 실시하고 지방 각지에 산재한 목재상들을 하나의 통제회사 밑으로 묶어둔 후 목재 공급을 인위적으로 조절한다는 방침을 내놓자 이에 응하여 신의주목재판매주식회사를 해산한 다음 조선제재판매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미츠이 물산 경성 지점 내에 본사를 두는 등 사실상 미츠이 물산이 경영을 책임지는 형편이었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영림서 관할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제재의 공급을 통제하는 한편으로 민간인 소유 임야에서의 제재 생산에도 관여하여 목재생산 통제체제를 구축하였다. 특히 1940년 물자동원계획위원회가 '벌채증재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민유림 소유자들에게 벌채량을 지정하면서 일종의 원목생산 책임제가 실시되었는데, 이후 민유림에서 생산된 원목은 모두 원목생산출자조합을 거쳐 가공, 판매되었다.

조선제재판매주식회사는 원목생산출자조합과는 별도로 영림서에서 생산되는 제재만을 취급하던 회사로서, 영림서로부터 제재를 불하받은 후 이를 지방 각지의 소매업자

에게 공급하였다. 각지의 소매상들은 이 회사로부터 공정가격에 따라 물품을 공급받았다.

이 기록물철의 문서는 <소화 15년도(1940) 적송 제재 매각의 건>, <지정도매인의 계약 이행 감독에 관한 건>, <조선제재판매주식회사 제재 대구 취인 계약에 관한 건>, <청사용 신축공사용재에 관한 건>, <조선제재판매주식회사의 각 지방 판매점에 대한 배급계획>, <강릉영림서 생산 적송제재품 가격에 관한 건>, <부영주택용재 알선의 건>, <경성영림서 합숙소 및 판임관 숙소용재 공출에 관한 건> 등으로, 대개 지방 소매상들이 조선제재판매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는 물품 가격과 수량과 관련된 것이거나 관에서 필요로 하는 용재들을 조선제재판매주식회사에 요청하는 내용의 관련된 것들이다.



대학연습림관계
(大學演習林關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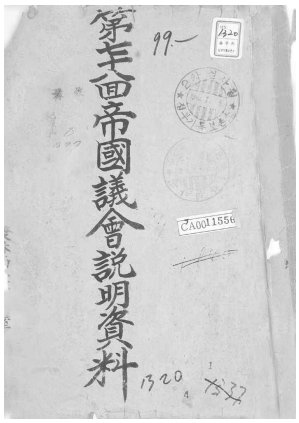
- 생산연도 1911~1914년
- 생산기관 총독부 농상공부
- 관리번호 CJA0010316
- M/F 1310091-4453
- 총페이지 173면

도후쿠(東北)·규슈(九州)·교토(京都)·도쿄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에 '대학 연습림'이라는 명분으로 대부한 임야와 관련된 문서들이 수록되어 있다. <대학연습림경영에 관한 건>, <농과대학연습림수령서>, <대학연습림양도의 건>, <대학연습림용지대부의 건>, <대학연습림 예정지 실지 답사의 건> 등의 문서이다.

<대학연습림경영에 관한 건>은 1913년 3월에 농상공부장관이 도후쿠제국대학 총장에게 발송한 것으로"동 대학에 연습림을 대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그 시설 경영 착수 계획을 알려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문서에 이어 도후쿠제국대학 총

장 호죠 도키가타(北條時敬)의 답신이 수록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도후쿠제국대학이 대부받은 곳은 무주군 장수군 소재 국유림 면적 25,800정보로서 대부 기간은 80년이었다. 다음에 수록된 <대학연습림 인도의 건>은 1913년 9월에 작성된 것으로 도후쿠대학에 위의 임야를 대부한다는 내용의 정식 통지서이다.

이어지는 <지리산 부근 대학연습림 경영에 관한 건>은 1914년 6월에 작성된 것으로서 규슈제국대학에 지리산 일대 임야를 대부하기로 결정한 내용을 담았다. 또 <대학연습림 경영에 관한 건>에는 도쿄제국대학과 교토제국대학에 연습림으로 양여할 땅을 물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강원도 등지에 조사원을 파견한다는 내용이다.



제78회제국의회설명자료 (第78會帝國議會說明資料)

- 생산연도 1941년
- 생산기관 총독부 농림국
- 관리번호 CJA0011556
- M/F 1310091-5740
- 총페이지 822면

1941년 12월에 조선총독부 농림국장이 '제78회 제국의회에 제출할 자료를 송부하라'는 일본 척식성 식산국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제국의회 설명자료와 이를 척식성에 송부하면서 첨부하여 보낸 공문들이다. 조선농지개발영단을 설립한 이유 및 회사 운영의 주요 요강, 농지개발영단 사업계획, 소화 15년(1940) 잡종재산으로 편입된 국유임야 매불(賣拂)양여조서, 소화 15년도(1940) 식량수확고 보고 등의 자료이다. 임정 관련 내용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농지 개발과 관련된 설명 내용 가운데 임야를 개간하여 전답으로 만드는 건 등에 관하여 언급된 점이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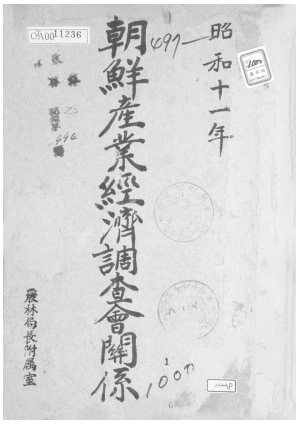
'조선농지개발영단 설립 이유'라는 이름의 문서에 의하면 토지개량사업을 확충하여 소화 17년(1942) 이후 10개년 동안 532,000정보에 대해 관개개선 등을 실시할 계획

이며, 이와 관련하여 수리조합 이외의 토지개량시행자로서 농지개발영단을 설립한다고 되어 있다.

그 외에도 <채소증산계획>, <소화 17년도(1942) 경작자 이주계획>, <식량증산대책> 등이 있다. 이 중 <식량증산대책>에는 임야를 식량생산지로 삼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주목된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전쟁의 장기화와 가뭄에 따른 식량 생산력의 저하에 대비하여 임야를 적극 이용하기로 하고, 1937년에 '민유림이용 구분조사'를 거쳐 녹비공급지, 식량공급지, 조림지 등으로 임야 구분을 세분화하였다. 당시 당국은"지목을 삼림에서 전답으로 변경할 곳을 추려내겠다"며, 목적 달성을 위해 1940년까지 전체 '민유림' 가운데 3,965,923정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그 가운데 보안림 편입지 4%, 개간 금지 지역 1%, 영림방법 지정지 30%, 보존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 2%, 기타 지역 63%를 골라내었다.

일제는 이 가운데 '보존이 필요하지 않은 곳'으로 분류된 96,000여 정보에 대하여 1942년 무렵부터 개간을 적극 장려하기 시작했다.

일제는 이들 지역을 '전답'으로 지목을 변경한 곳을 직접 매수하고 이를 조선인 화전경작 경험자들에게 '자작농 창설 개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매도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해당 임야의 경영 방식은 대개 화전 농법을 채용한 것이었고, 이를 매수한 농민도 도유림이나 일부 사유림에 산재하던 화전민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의 땅에서 생산된 식량은 그리 많지 않았다. 경기도의 경우 양평, 가평, 포천 등지에서 집중적으로 이러한 농경지를 조성하고 이에서 매년 2만석 이상의 조, 콩, 감자 등을 증산할 계획을 세운 바 있는데 1940년 현재 경기도의 '보존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이 약 14,000정보에 이르렀고, 조선 전체로는 96,000여 정보였음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약 14만석의 조 및 콩을 증산한다는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정도 수량의 생산량은 1940년 당시 조와 콩을 합쳐 약 8,500,000석(石)을 수확하였던 것에 비할 때 미미한 량에 불과했다.



조선산업경제조사회관계 (朝鮮産業經濟調査會關係)

- 생산연도 1936년
- 생산기관 총독부 농림국
- 관리번호 CJA0011236
- M/F 1310091-5502
- 총페이지 709면

조선의 산업경제정책을 기존의 식량공급에서 일본에 필요한 지하자원과 동력, 노동력을 공급하는 공업지대로 전환하는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1936년 소집된 조선산업경제조사위원회를 열 당시에 행사를 주관하였던 농림국에서 회의 진행 사항과 관련된 실무 추진 과정에서 생산한 문서와 회의록을 수록한 것이다. 이 기록물철에 담겨 있는 주요 문서로는 <조선산업경제조사회 위원 숙소 명부>, <산업경제조사회 위원 질문 사항>, <조선산업경제조사회에 관한 타합의 건>(산업경제조사위원회 개최 이전 실무 준비를 위해 모인 협의회 개최와 관련된 문서) 등이다.

농림국에서 생산한 《조선산업경제조사회 관계》는 이 외에 《조선산업경제조사회 관계서류》(CJA0011237)와 《조선산업경제조사회 관계서류》(CJA0011238)의 2권이 더 있다.

이와 같이 조선총독부 농림국에서 생산한 기록물철에는 '임정' 관련 문서들과 섞여서 함께 편철되었거나 아예 '임정' 관련 문서와는 거리가 먼 것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한다.